

발간등록번호

11-1520000-000121-10

2006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의 통계자료중 전년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연도에서 정정된 것임
2. 본 보고서의 일부 통계는 사사오입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목 차

제 I 편 2005년도 수산업 동향	17
제1장 세계 수산업 동향	19
제2장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23
제 II 편 2005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71
제1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73
제2장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90
제3장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96
제4장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114
제5장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128
제6장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152
제7장 어업인 지원 강화	178
제8장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195
제 III 편 2006년도 수산시책 추진계획	201
제1장 기본 방향	203
제2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210
제3장 어장환경 개선과 양식어업 육성	221
제4장 살기 좋고 활력 있는 어촌조성	223
제5장 안전하고 품질좋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228
제6장 수산기술개발 및 성장동력의 확보	239
제7장 국제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257
제8장 WTO/DDA, FTA 협상 대응	272
제 IV 편 수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279
제1장 수산업 중장기 비전	281
제2장 WTO/DDA, FTA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강화	283
제3장 수산정책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295
제 V 편 제도와 체제의 정비·개선	299
제1장 제도의 정비	301
제2장 해양수산부 조직개편 및 정비	314

세부 목차

제 I 편	2005년도 수산업 동향	17
제1장	세계 수산업 동향	19
제1절	수산물 생산	19
제2절	수산물 교역	21
제2장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23
제1절	어업 구조	23
1.	어가인구	23
2.	어업 총생산	25
3.	어선등록 현황	27
4.	이용어장	29
5.	어업경영체	34
제2절	어가 경제	39
1.	어가소득	39
2.	어가 가계지출	41
3.	어가자산	42
4.	어가부채	43
제3절	수산물 생산	44
1.	생산동향	44
2.	연근해어업	44
3.	양식어업	50
4.	내수면어업	53
5.	원양어업	54
제4절	수산물 수출·입	56
1.	수 출	56
2.	수 입	60

제5절 수산물 수급 및 가격	63
1. 수 급	63
2. 소 비	64
3. 가 격	65
제6절 어업 및 어장환경	66
1. 어 황	66
2. 자원동향	67
3. 연안어장 환경변화	69
제Ⅱ편 2005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71
제1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73
제1절 자율관리어업	73
제2절 수산자원 조성	75
1. 인공어초시설	75
2. 종묘방류	76
3. 바다목장 조성	80
4. 총허용어획량제도	81
5. 수산자원관리수면	82
제3절 양식어업 육성	83
1. 양식어장 개발	83
2. 환경친화형 양식기반 시설 확충	84
제4절 내수면어업 개발	85
제5절 어장정화	86
제6절 적조대책	87
제7절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89
제2장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90
제1절 어업구조조정 및 재편	90
제2절 어업질서확립	91

4 2006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1. 연근해어업 여건변화와 신 어업질서 확립 91
2. 안전조업 지도 92
3.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94
제3절 WTO/DDA, FTA 협상대응 국내대책 95

제3장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96

제1절 수산물 가격안정 96
1. 정부 비축사업 96
2. 민간 가격안정사업 97
3.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97
제2절 유통구조 개선 98
1. 유통시설 확충 98
2. 유통기능 강화 98
제3절 수산물 검사 103
1. 수산물검사 강화 103
2. 검사기능 강화 106
제4절 수산물 수출·입 대책 107
1. 수입 개방대책 107
2. 수출 촉진대책 108
제5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110
1. 가공제품 생산 110
2. 가공산업 지원 111
3.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112

제4장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114

제1절 어촌개발 114
1. 어촌종합개발 114
2. 어촌관광 활성화 117
제2절 어항시설 확충 122
1. 어항개발의 개요 122

2. 어항개발현황 122

제3절 어선건조 및 장비·설비 현대화 125

1. 연안어선 대체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 125

2.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개량 지원 126

제5장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128

제1절 국제 어업협력 강화 128

1.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128

2.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136

3. 남북수산협력 추진 141

제2절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 144

1. 기존 어장의 확보 144

2.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148

3. 해외 신어장 개발 149

4.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151

제6장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152

제1절 어업인력 육성 152

제2절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153

제3절 해양수산교육 154

1. 해양수산교육 154

2. 해기사 양성 및 어업기술 훈련 154

제4절 해양환경 연구 156

1. 해양변동 연구 156

2. 해양환경 오염 연구 157

3. 적조대책 연구 158

4. 해파리 대량발생 연구 160

제5절 어업자원 조사연구 161

1.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연구 161

2. 원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161

제6절 수산공학기술 개발	163
1.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163
2.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163
3.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164
4.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164
제7절 양식기술 개발 연구	166
1.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166
2.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167
3.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167
4.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169
5.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170
6.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170
제8절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171
1.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171
2.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171
제9절 수산기술 지도·보급	173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173
2. 선진어업경영기반 구축	174
3. 수산기술보급 관리기반 조성	174
제10절 수산특정연구개발	175
제7장 어업인 지원 강화	178
제1절 수산자금 공급 확대	178
1. 영어자금	178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사업 운용	179
3. 수협 자체자금	180
제2절 어업인 부담 경감	182
1.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182
2. 각종 이차보전	183
3.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185

4.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185
제3절 수산 관련 세제 개선	186
1. 수산세제 지원 연장	186
2. 수산세제 지원대상 확대	186
제4절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	188
제5절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191
제6절 해양수산재해 및 복구 지원	193
제8장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195
제1절 일선수협 구조조정	195
1.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195
2. 부실수협 구조조정	195
3.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196
4. 부실책임조사 실시	197
제2절 신용사업의 『OK ACE 0506 운동』 전개	198
제3절 수협 혁신방안 수립 추진	199
제Ⅲ편 2006년도 수산시책 추진계획	201
제1장 기 본 방 향	203
제1절 수산업의 여건변화	203
제2절 중점 추진시책	205
제3절 예산 및 자금지원	208
제2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210
제1절 수산자원회복 계획	210
제2절 연근해 자원조성	212
1. 인공어초 시설	212
2. 종묘방류 및 종묘배양장 기능 조정	213
3. 바다목장 조성	214
4. 총허용어획량제도	214

제3절 자율관리어업 216
 제4절 내수면어업 개발 218
 제5절 연근해어선 감척 219
 제6절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 추방 220

제3장 어장환경 개선과 양식어업 육성 221

제1절 어장환경개선 221
 제2절 양식어업의 재편 및 지원 222

제4장 살기 좋고 활력 있는 어촌조성 223

제1절 어촌·어항 기초조사 223
 제2절 어촌관광 활성화 추진 224
 1. 어촌종합개발 224
 2.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및 붐 조성 225
 제3절 어항시설 확충 227
 1. 국가어항 227
 2.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227

제5장 안전하고 품질좋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228

제1절 수산물 유통개선 228
 제2절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230
 1. 가격안정사업 230
 2.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231
 제3절 안전한 수산물 공급 232
 1. 수산물검사 강화 232
 2. 검사기능 강화 234
 제4절 수산물 수출·입 대책 235
 1. 수출 활성화 235
 2. 수입 관리 236
 제5절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237

제6장 수산기술개발 및 성장동력의 확보	239
제1절 어업인력 육성 등	239
1. 어업인후계자 육성	239
2. 해기사 양성 및 수산기술 훈련	240
제2절 수산기술의 보급	241
1. 수산기술 보급 및 선진어업 경영체계 구축 지원	241
2. 선진어업경영 체제구축	242
제3절 수산기술의 개발	243
1. 해양 및 어장환경조사	243
2. 어업자원 조사 연구	244
3. 수산공학기술 개발	245
4. 양식기술개발 연구	247
5.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249
6. 어선건조 및 장비·설비 현대화	251
제4절 수산특정연구개발	253
제5절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254
1. 일선수협을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254
2. 신용사업의 「OK ACE 0506」 2차년도 운동 전개	255
3. 수협 혁신방안 추진	256
제7장 국제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257
제1절 국제수산기구 및 양국간 협력 강화	257
1. 국제수산기구 협력	257
2.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	260
3. 남북수산협력	266
제2절 원양어업 육성	267
1.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267
2. 원양업체 경영 지원	269
3.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270
4. 해외 신어장 개발	270

제8장	WTO/DDA, FTA 협상 대응	272
제1절	WTO/DDA, FTA 협상 추진	272
1.	WTO/DD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272
2.	FTA 추진전망 및 대응방안	276
제Ⅳ편	수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279
제1장	수산업 중장기 비전	281
제2장	WTO/DDA,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강화	283
제1절	WTO/DDA,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283
1.	추진방향	283
2.	세부추진계획	283
3.	법령 제·개정 등	286
4.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중 지원대책 관련 투융자계획 수정	286
5.	의견수렴 및 홍보체계 정비	287
제2절	수산자금 공급 확대	288
1.	영어자금	288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 지원	289
제3절	어업인 부담경감 추진 및 수산관련 세제 개선	290
1.	각종 이차보전	290
2.	어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추진	290
3.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291
4.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291
5.	수산 관련 세제 개선	291
제4절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	292
제5절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및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293
1.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293
2.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294

제3장 수산정책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295

제1절 검토 배경 295

제2절 추진 경위 296

제3절 향후 추진계획 297

제 V 편 제도와 체제의 정비·개선 299

제1장 제도의 정비 301

제1절 행정규제 개선 301

제2절 수산통계 조사 활용 303

제3절 수산관계 법령 제·개정 304

 1. 어촌·어항법 제정 304

 2. 개정법률 305

 3. 시행령 및 시행규칙 308

 4. 2006년도 입법계획 32

제2장 해양수산부 조직개편 및 정비 314

제1절 배경 314

제2절 주요내용 315

[통계로 본 수산업 동향] 318

표 목 차

〈표 1〉 세계 수산물 생산추이	20
〈표 2〉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21
〈표 3〉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22
〈표 4〉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23
〈표 5〉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24
〈표 6〉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25
〈표 7〉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25
〈표 8〉 어업생산 현황	26
〈표 9〉 어업총생산(부가가치) 현황	26
〈표 10〉 어선등록 현황	27
〈표 11〉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28
〈표 12〉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29
〈표 13〉 품목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2
〈표 14〉 종류별·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32
〈표 15〉 2005년도 내수면 양식장 현황	33
〈표 16〉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34
〈표 17〉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35
〈표 18〉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36
〈표 19〉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7
〈표 20〉 2005년도 내수면어업 경영체 추이	37
〈표 21〉 원양업체 경영규모 추이	38
〈표 22〉 어가소득	39
〈표 23〉 어업소득	40
〈표 24〉 어업외 소득	40
〈표 25〉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40

〈표 26〉	가계지출	4
〈표 27〉	소비지출	4
〈표 28〉	비소비지출	4
〈표 29〉	어가자산	4
〈표 30〉	어가부채	4
〈표 31〉	어업생산 현황	4
〈표 32〉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5
〈표 33〉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5
〈표 34〉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5
〈표 35〉	원양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5
〈표 36〉	수산물 수출현황	5
〈표 37〉	품목별 수출현황	5
〈표 38〉	국가별 수출현황	5
〈표 39〉	주요 어종별 수출현황	5
〈표 40〉	수산물 수입현황	6
〈표 41〉	품목별 수입현황	6
〈표 42〉	국가별 수입현황	6
〈표 43〉	수산물 수급동향	6
〈표 44〉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6
〈표 45〉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6
〈표 46〉	소비자 물가동향	6
〈표 47〉	2005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원현황	4
〈표 48〉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실적	75
〈표 49〉	국·도립 수산종묘생산시설 종묘생산 방류 현황	76
〈표 50〉	2005년도 시·도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현황	77
〈표 51〉	민간종묘 매입·방류 실적	79
〈표 52〉	바다목장 조성계획	8
〈표 53〉	2005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현황	8

〈표 54〉 연어방류 및 채포 실적	8
〈표 55〉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시기와 특징	8
〈표 56〉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현황	9
〈표 57〉 불법어업 단속실적	9
〈표 58〉 어업인 보급지원 및 조난어선 구조 실적	9
〈표 59〉 어선원 교육 및 안전점검 실적	9
〈표 60〉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실적	9
〈표 61〉 2005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9
〈표 62〉 2005년도 수산물유통보급시설 지원현황	9
〈표 63〉 수산물 규격출하촉진 지원대상품목과 거래규격	100
〈표 64〉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물량	101
〈표 65〉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금액	102
〈표 66〉 수산물 수출입 검사실적	105
〈표 67〉 수산가공품 생산 추이	110
〈표 68〉 가공업체 지원실적	111
〈표 69〉 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112
〈표 70〉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113
〈표 71〉 수산 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113
〈표 72〉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115
〈표 73〉 시·도별 어촌관광 지원 실적	116
〈표 74〉 어촌관광 모델개발사업(시범사업)	118
〈표 75〉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조성현황	119
〈표 76〉 연도별 어촌체험마을 투입현황	119
〈표 77〉 연도별 어촌관광홍보 예산 현황	120
〈표 78〉 어항지정 현황	122
〈표 79〉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123
〈표 80〉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현황	124
〈표 81〉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지정현황	124

〈표 82〉	2005년도 친환경 어선건조 실적	17
〈표 83〉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현황	129
〈표 84〉	양국간 수산협력약정 체결현황	130
〈표 85〉	2005년도 한·일 양국간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131
〈표 86〉	2005년도 한·중 양국간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132
〈표 87〉	명태생산 추이	133
〈표 88〉	연도별 한·러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135
〈표 89〉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	138
〈표 90〉	선박자동위치감시시스템(VMS) 설치 실적	140
〈표 91〉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153
〈표 92〉	연도별 어선원 교육실적	155
〈표 93〉	수산특정연구개발 추진실적	176
〈표 94〉	수산특정연구개발 주요성과	176
〈표 95〉	영어자금 공급 실적	179
〈표 9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사업 규모	180
〈표 97〉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	180
〈표 98〉	수협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181
〈표 99〉	2005년도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	18
〈표 100〉	2005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실적	19
〈표 101〉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191
〈표 102〉	2005년도 해양수산시설 피해 및 복구상황(시기별)	194
〈표 103〉	2005년도 해양수산시설 피해 및 복구상황(내용별)	194
〈표 104〉	200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208
〈표 105〉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212
〈표 106〉	2006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215
〈표 107〉	2006년도 시·도별 연안어선 감척계획	219
〈표 108〉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224
〈표 109〉	2006년도 정부비축사업계획	228
〈표 110〉	제품별 가공공장 현황	238

〈표 111〉	가공공장 및 가공품 생산량	28
〈표 112〉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및 계획	29
〈표 113〉	2006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 사업계획	2
〈표 114〉	2006년도 과제수 및 예산현황	3
〈표 115〉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현황	21
〈표 116〉	2006년 한·일 양국 EEZ 입어동향	262
〈표 117〉	2006년 한·중 양국 EEZ 입어동향	264
〈표 118〉	2006년 러시아 EEZ 조업 계획	5
〈표 119〉	수산의 G5 전략목표	22
〈표 120〉	수산분야 OCEAN G5 로드맵	22
〈표 121〉	수산업·어촌투융자계획	286
〈표 122〉	영어자금 공급계획	28
〈표 123〉	어선규모별 보험료 지원율	23
〈표 124〉	2006년도 수산분야 입법계획	3
[통계로 본 수산업 동향]	318

제 I 편
2005년도 수산업 동향

제 1 장

세계 수산업 동향

제1절 수산물 생산¹⁾

2004년 FAO 수산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수산식물 제외)은 140,475천 톤으로, 2003년도의 132,524천 톤보다 7,951천 톤(5.9%)이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양식생산(aquaculture production) 뿐만 아니라, 해면 및 내수면 생산(capture production)도 증가하여 전년 보다 4.1% 증가한 47,507 천 톤을 생산, 전년에 이어 수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고, 페루(Peru)는 전년 보다 57.8% 증가한 9,635천 톤을 생산하여 2위, 인도(India)는 전년 보다 184천 톤이 증가한 6,088천 톤을 생산하여 3위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인도네시아, 칠레, 미국, 일본, 태국, 노르웨이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생산량은 전년의 2,035천 톤보다 54천 톤(2.6%)이 감소한 1,981천 톤을 생산,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의 1.4%를 차지하여 세계 15위에 머물렀다.

세계의 양식생산량은 45,468천 톤으로 세계 수산물생산의 32.4%를 차지하였고, 이중 중국이 30,615천 톤을 생산하여 세계 양식생산량의 67.3%를 점하고 있다. 연간 4백만 톤 이상 생산되는 양식어종은 참굴(Crassostrea gigas)로서, 2004년 생산량은 4,429천 톤으로 세계 양식 생산량의 9.7%를 차지했다.

1)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표 1〉

세계 수산물 생산추이

(단위 : 천톤, %)

구분		'01	'02	'03	'04	'04/'03
순위	합 계	130,207	132,989	132,524	140,475	105.9
1	중국	42,579	44,320	45,648	47,507	104.1
2	페루	7,995	8,775	6,103	9,635	157.8
3	인도	5,965	5,963	5,904	6,088	103.1
4	인도네시아	5,068	5,271	5,672	5,856	103.2
5	칠레	4,363	4,817	4,185	5,610	134.1
6	미국	5,405	5,419	5,483	5,566	101.6
7	일본	5,521	5,435	5,456	5,178	94.9
8	태국	3,606	3,334	3,590	4,018	111.9
9	노르웨이	3,199	3,297	3,132	3,160	100.1
10	베트남	2,010	2,027	2,604	3,078	118.2
11	러시아	3,718	3,566	3,390	3,051	90.0
12	필리핀	2,380	2,474	2,629	2,724	103.6
13	방글라데시	1,687	1,890	1,998	2,102	105.2
14	미얀마	1,288	1,434	1,606	1,987	123.7
15	대한민국	2,282	1,966	2,035	1,981	97.4
	기타	38,121	38,352	39,296	32,935	83.8
비율	한국/세계	1.83%	1.48%	1.53%	1.41%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Summary tables-2004

주 : 수산식물 제외

제2절 수산물 교역²⁾

2004년 세계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보다 12.3% 증가한 71,508백만\$ 이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전년에 비하여 26.6% 증가한 6,637백만\$로 1위, 노르웨이가 4,132백만\$로 2위, 태국이 4,034백만\$로 3위이며, 우리나라는 전년도 1,003백만\$ 보다 13.6%가 증가한 1,139백만\$로서 20위에 머물렀다.

〈표 2〉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단위 : 백만\$, %)

구분	'02	'03	'04	'04 / '03
합 계	58,356	63,686	71,508	112.3
1 중국	4,485	5,243	6,637	126.6
2 노르웨이	3,569	3,624	4,132	114.0
2 태국	3,676	3,906	4,034	103.3
4 미국	3,260	3,399	3,851	113.3
5 덴마크	2,872	3,213	3,566	111.0
6 캐나다	3,044	3,300	3,487	105.7
7 스페인	1,889	2,224	2,565	115.3
8 칠레	1,869	2,134	2,484	116.4
9 네덜란드	1,803	2,183	2,452	112.3
10 베트남	2,030	2,202	2,403	109.1
11 영국	1,353	1,670	1,812	108.5
12 대만	1,612	1,299	1,801	138.6
13 아이슬란드	1,429	1,508	1,770	117.4
14 인도네시아	1,491	1,551	1,654	106.6
15 프랑스	1,089	1,326	1,526	115.1
16 러시아	1,421	1,483	1,525	102.8
17 독일	1,157	1,277	1,415	110.8
18 페루	1,067	1,031	1,387	134.5
19 인도	1,421	1,307	1,365	104.4
20 대한민국	1,046	1,003	1,139	113.6
기타	19,261	21,141	23,255	110.0

자료 : FAO, Yearbook of statistics, 2004

주 : 고래, 물개, 기타 수산 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어망 제외

2)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한편, 세계의 수산물 수입액은 75,293백만\$로서 전년에 비하여 11.8%가 증가하였다. 나라별로는 일본이 전년 대비 17.52% 증가한 14,560백만\$로 1위, 미국이 11,967백만\$로 2위, 스페인이 5,222백만\$로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의 1,935백만\$에서 2004년에는 2,233백만\$로 15.4% 증가하여 세계 10위를 차지하였다.

〈표 3〉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단위 : 백만\$, %)

구 분		'02	'03	'04	'04 / '03
순위	합 계	61,606	67,343	75,293	111.8
1	일 본	13,646	12,396	14,560	117.5
2	미 국	10,065	11,655	11,967	102.7
3	스 페 인	3,853	4,904	5,222	106.5
4	프 랑 스	3,207	3,771	4,176	110.7
5	이 탈 리 아	2,906	3,559	3,904	109.7
6	중 국	2,198	2,389	3,126	130.8
7	영 국	2,328	2,508	2,812	112.1
8	독 일	2,420	2,635	2,805	106.5
9	덴 마 크	1,806	2,084	2,286	109.7
10	대 한 민 국	1,861	1,935	2,233	115.4
11	홍 콩	1,766	1,752	1,908	108.9
12	네 델 란 드	1,333	1,701	1,837	108.0
	기 타	14,217	16,054	18,457	15.0

자료 : FAO, Yearbook of statistics, 2004

주 : 고래, 물개, 기타 수산 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어망 제외

제 2 장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제1절 어업 구조

1. 어가인구³⁾

2005년 말 현재 전국의 어가는 80,016호로 2004년도의 72,513호 보다 7,503호(10.33%)가 증가하였으며, 어가인구는 221,267명으로 2004년도의 209,855명 보다 11,412명(5.4.1%)이 증가하였다.

어가 및 어가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5년도에 와서 증가한 것은 2005년도 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로써 매년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 조사」와의 표본선정 등 오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단위 : 호, 명,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어 가 호 수	77,717	73,124	72,760	72,513	80,016	110.3
어 가 인 구	234,434	215,174	212,104	209,855	221,267	105.4
·여 성 인 구 (구 성 비)	117,409 (50.1)	107,486 (50.0)	105,720 (50.0)	104,493 (49.8)	110,540 (49.9)	105.8 -
호당평균어가인구	3.02	2.94	2.92	2.89	2.77	95.8

자료 : 통계청, 2005 농림어업총조사(p)

3)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한편, 전체 가구 80,016호 중에서 가구 전체 수입이 어업수입 뿐인 전업가구는 25,294호로, 2004년도의 23,580호 보다 7.3% 증가하였고, 가구원이 어업과 어업 이외의 일을 함께 하는 겸업어가는 54,722호로, 2004년도의 48,933호 보다 11.8% 증가하였다.

〈표 5〉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구 분		'01	'02	'03	'04	'04/'03
종 사 자		136,869	127,694	125,023	122,384	97.9
성 별	남 자	70,851 (51.8)	69,666 (54.6)	67,870 (54.3)	66,380 (54.2)	97.8 -
	여 자	66,018 (48.2)	58,027 (45.4)	57,153 (45.7)	56,004 (45.8)	98.0 -
연 령 별	30세 미만	4,149 (3.0)	3,817 (3.0)	3,854 (3.1)	3,313 (2.7)	86.0 -
	30 ~ 39세	14,914 (10.9)	13,067 (10.2)	11,600 (9.3)	10,490 (8.6)	90.4 -
	40 ~ 49세	35,280 (25.8)	35,401 (27.7)	33,974 (27.2)	32,097 (26.2)	94.5 -
	50 ~ 59세	40,190 (29.4)	37,994 (29.8)	36,916 (29.5)	37,171 (30.4)	100.7 -
	60세 이상	42,336 (30.9)	37,414 (29.3)	38,680 (30.9)	39,312 (32.1)	101.6 -

자료 : 통계청, 2005 농림어업총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주 : 어업종사자 및 성별·연령별 인구는 통계청이 2006년 11월에 발표예정으로 있어 2004년도 통계사용

〈표 6〉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77,717	73,124	72,760	72,513	80,016	110.3
전 업	19,926 (25.6)	28,267 (38.7)	25,423 (34.9)	23,580 (32.5)	25,294 (31.6)	107.3 -
겸 업	57,792 (74.4)	44,858 (61.3)	47,337 (65.1)	48,933 (67.5)	54,722 (68.4)	111.8 -

자료 : 통계청, 2005 농림어업총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표 7〉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총어업가구	77,717	73,124	72,760	72,513	80,016	110.3
·어선사용가구	34,083 (43.9)	37,106 (50.7)	37,342 (51.3)	37,748 (52.1)	36,964 (46.2)	97.9 -
·어선비사용가구	18,290 (23.5)	14,517 (19.9)	13,604 (18.7)	14,069 (19.4)	18,636 (23.3)	132.4 -
·양식어업가구	25,344 (32.6)	21,502 (29.4)	21,814 (30.0)	20,696 (28.5)	24,416 (30.5)	117.9 -

자료 : 통계청, 2005 농림어업총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2. 어업 총생산⁴⁾

2005년도 어업 총생산량은 2,714천 톤으로 전년 2,519천톤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어업 총생산액도 6.78% 증가한 5조 493억원으로 나타났다. 어업별 생산량 및 생산액은 <표 8>과 같다.

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한편, 2005년도 어업생산액 5조 493억원 중 중간 투입재를 제외한 부가가치는 1조 9,612억원으로 이는 국내 총생산(GDP) 721조 4,910억원의 0.27%, 국내총부가가치(GVA) 642조 6,230억원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어업생산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04		'05		증 감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합 계	2,519	47,313	2,714	50,493	195	3,180
연 근 해	1,077	26,097	1,097	27,060	20	963
양 식	918	12,171	1,041	13,484	123	1,313
내 수 면	25	1,672	24	1,757	-1	85
원 양	499	7,373	552	8,192	60	819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표 9〉 어업총생산(부가가치) 현황

(단위 : 10억원, %)

구 분	'04		'05p		증 감 륜	
	경상	'00불변	경상	'00불변	경상	'00불변
국내총생산(GDP)	779,381	693,996	806,622	721,491	3.5	3.5
국내총부가가치(GVA)	694,318	617,752	718,032	642,623	3.5	4.0
○ 농 립 어 업	26,246	25,258	24,036	25,223	△8.4	△0.14
- 어 업	1,811	1,954	1,730	1,962	△4.5	0.4
· GDP 구성비	0.23	0.28	0.21	0.27		
· GVA 구성비	0.26	0.31	0.24	0.30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3. 어선등록 현황⁵⁾

2005년 말 어선등록 현황은 90,735척에 700,810톤으로 2004년 말에 비하여 척수는 873척(1.0%)이 감소하였고, 톤수도 24,170톤(3.3%)이 감소하였다.

전체 어선 중 동력어선은 87,554척으로 96.5%, 톤수는 697,956톤으로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별 어선척수는 연근해어선이 71.2%, 양식어선이 20.1%, 내수면어선이 4.6%, 원양어선이 0.5%, 기타가 3.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10〉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3	'04	'05	'05 / '04
합 계	척 수	93,257	91,608	90,735	99.0
	·동 력	88,521	87,203	87,554	100.4
	·무동력	4,736	4,405	3,181	72.2
	톤 수	754,439	724,980	700,810	96.7
	·동 력	750,763	721,398	697,956	96.8
	·무동력	3,676	3,582	2,854	79.7
연 근 해	척 수	66,698	66,063	64,579	97.8
	톤 수	345,066	330,203	322,811	97.8
양 식	척 수	19,228	18,792	18,244	97.1
	톤 수	28,034	27,296	27,131	99.4
내 수 면	척 수	4,510	3,991	4,164	104.3
	톤 수	3,941	3,102	3,518	113.4
원 양	척 수	517	491	493	100.4
	톤 수	273,086	261,237	257,614	98.6
기 타	척 수	2,304	2,271	3,255	143.3
	톤 수	104,312	103,142	89,736	87.0

자료 :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5) 안전정책담당관실

선질별로는 목선이 전체 어선척수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톤수에 있어서는 전체 어선톤수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합성수지선(FRP선)은 전년보다 척수와 톤수가 각각 2.7%, 3.7%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 미만 어선은 전체 척수의 86.2%로서 전체 톤수의 18.8%를 차지하고 있고, 5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11.7%,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50톤 이상의 대형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2.1%, 6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3	'04	'05	'05/'04
합 계	척 수	93,257	91,608	90,735	99.0
	톤 수	754,439	724,980	700,810	96.7
목 선	척 수	27,922	24,817	22,281	89.8
	톤 수	67,759	56,990	49,697	87.2
강 선	척 수	2,919	2,678	2,623	97.9
	톤 수	494,671	469,570	445,359	94.8
합성수지선 (FRP선)	척 수	62,416	64,113	65,831	102.7
	톤 수	192,009	198,420	205,754	103.7

자료 :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표 12〉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3		'04		'05		'05/ '04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합 계	93,257	754,439	91,608	724,980	90,735	700,810	99.8	96.7
1톤 미만	33,091	21,172	31,974	20,645	30,962	20,069	96.8	97.2
1 ~ 5톤 미만	47,067	111,006	46,920	110,529	47,253	111,343	100.7	100.7
5 ~ 50톤 미만	10,947	130,021	10,701	124,974	10,607	123,424	99.1	98.8
50 ~ 100톤 미만	1,168	86,727	1,084	80,414	1,024	75,783	94.5	94.2
100 ~ 200톤 미만	407	59,300	369	53,877	346	50,640	93.8	94.0
200톤 이상	577	346,213	560	334,541	543	319,551	97.0	95.5

자료 :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4. 이용어장

가. 연근해어장⁶⁾

수산업법상 우리나라 연근해어장의 해역범위는 동해·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해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수역을 제외한 수역은 해외어장으로서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1960년대에 제주도 인근 수역에서 ‘소코트라어장’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서해, 동중국해 및 동해의 ‘대화퇴어장’까지 조업어장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들 어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로 한·중·일 3국이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 이하 EEZ라 함)을 선포함

6)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1996년 5월 이후 17차에 걸쳐 어업협정 개정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11월 28일자로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다음 해인 1999년 1월 22일 협정을 발효시킴에 따라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으로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속한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정부와 협상한 결과, 2000년 8월 3일 『한·중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이어 상호 입어조건에 대한 교섭을 거쳐 2001년 6월 30일 동 협정을 정식 발효시키게 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우리 EEZ내 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2005년 6월 30일부터 양국의 과도수역이 EEZ로 편입되어 우리 어선의 조업어장이 확대되었다.

한편, 중·일간의 어업협정에 있어서도 1997년 11월 11일 서명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다가, 2000년 6월 1일 발효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주변수역은 완전히 EEZ 어업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장도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EEZ와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나. 원양어장⁷⁾

원양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시험조업 진출을 시발로 1970년대 중반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7)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서는 2차에 걸친 석유과동과 1977년부터 미국·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장은 급격히 축소됨은 물론,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로 원양어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88년 미국수역에서 북양트롤어선이 철수하고 1993년 북태평양에서 오징어유자망조업이 중지되었으며,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와 1995년 8월 『유엔 공해어족보존협정』의 채택으로 공해조업도 해역 단위별로 공해자원에 대한 규제강화 및 다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향후 공해수산자원 이용도 상당히 규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1999년 1월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99년 11월 30일부터 일본 북해도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어선의 전면 철수 등으로 원양어업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도 원양어업은 총 410척이 5대양 29개 연안국에 출어하여 명태, 오징어, 참치 등을 주로 어획하여, 횡감용 참치의 대 일본 수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 수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5년도 생산실적은 참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1%가 증가된 552천 톤을 생산하였다.

다. 양식어장

1) 해면양식⁸⁾

2005년 말 현재 해면 양식어장 면허면적은 약 125천ha이며, 육상수조식 및 축제식양식 등 허가어업이 2천ha가 개발되었다. 이중 어촌계(수협)가 전체 면허어장의 80%인 약 100천ha를 소유·경영하고 있다.

8)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표 13〉 품목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122,218	122,243	121,853	123,169	124,668	101
어 류	2,256 (1.8)	2,302 (1.9)	2,136 (1.8)	2,002 (1.6)	1,822 (1.5)	91
패 류	46,171 (37.8)	47,138 (38.6)	47,381 (38.9)	47,087 (38.2)	48,194 (38.7)	102.4
해 조 류	70,201 (57.5)	69,209 (56.6)	68,062 (55.8)	69,348 (56.3)	69,502 (55.7)	100.2
기 타 수산동물	3,590 (2.9)	3,594 (2.9)	4,274 (3.5)	4,732 (3.9)	5,150 (4.1)	108.8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주 : ()는 구성비임

〈표 14〉 종류별·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단위 : ha)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1,854	2,109	2,061	2,162	2,017	93.3
수조식양식 (어류·패류 등)	272 (14.7)	289 (13.7)	374 (18.1)	379 (17.5)	299 (14.8)	78.9
축제식양식 (어류·새우 등)	1,582 (85.3)	1,820 (86.3)	1,687 (81.9)	1,783 (82.5)	1,718 (85.2)	96.4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주 : ()는 구성비임

우리나라의 해면 양식어장 개발은 1960년대에 김, 미역 등 해조류 중심의 양식에서 1970년대에는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어업으로 발전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넙치, 방어, 돔 등 어류와 진주조개 등 고소득 어패류양식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양식되고 있는 품종은 넙치, 돔, 조피볼락, 굴, 피조개, 바지락, 김, 미역, 톳, 우렁챙이, 새우, 가리비, 전복, 해삼 등 약 50여 종이며, 매년 새로운 품종의 적극적인 개발로 양식품종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2) 내수면양식⁹⁾

우리나라 내수면 수면적은 5,660km²로서, 전 국토 99,538km²의 5.7%에 해당되며, 수면별로 보면 강·하천이 2,801km²(49%), 댐·호(湖)가 1,103km²(20%), 수로가 1,756km²(31%)로 구성되어 있다.

내수면양식장은 2,809개소(2,239ha)가 개발되었으며 뱀장어·미꾸라지·송어 등 25종을 생산하여 국민단백질 공급은 물론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유어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표 15〉 2005년도 내수면 양식장 현황

(단위 : ha)

구 분	합 계		뱀장어		미꾸라지		송어류		기 타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2,809	2,238.55	456	220.27	460	199.50	281	306.65	1,612	1,512.13
부 산	55	13.79	1	0.49	3	0.30	-	-	51	13.00
대 구	3	1.90	-	-	-	-	-	-	3	1.90
인 천	32	24.57	4	0.48	-	-	-	-	28	24.09
광 주	6	0.34	-	-	-	-	-	-	6	0.34
대 전	2	0.23	-	-	-	-	1	0.07	1	0.16
울 산	14	4.59	1	0.98	-	-	2	0.25	11	3.36
경 기	258	107.51	10	14.96	14	2.88	17	4.46	217	85.21
강 원	159	338.30	6	3.27	6	15.76	108	277.52	39	41.75
충 북	218	48.64	2	0.21	3	0.50	51	8.33	162	39.60
충 남	249	213.33	25	13.76	11	2.94	10	2.22	203	194.41
전 북	965	1,120.61	112	51.77	400	170.20	15	1.23	438	897.41
전 남	479	254.10	260	124.49	17	5.26	3	0.18	199	124.17
경 북	158	36.90	-	-	-	-	65	11.60	93	25.30
경 남	202	71.68	28	8.24	6	1.66	8	0.49	160	61.29
제 주	9	2.06	7	1.62	-	-	1	0.30	1	0.14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9)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5. 어업경영체

가. 연안어업¹⁰⁾

2005년말 현재 연안어업 경영체 수는 총 91,673개로서 2004년도의 92,686개보다 1,013개가 감소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허가어업 중 연안어선어업은 연안자망, 연안복합어업, 연안통발어업 등 전 업종이 감소하여 총 80,518개로 되었으며, 구획어업은 형망어업, 새우조망어업 등에 대한 허가가 전년에 비해 416개가 감소하여 7,876개로 되었다. 면허어업인 마을어업은 전년도 보다 279개가 증가하였다.

연안어업은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등 소규모 어업으로 겸업이 대부분이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정된 어장과 임해공단시설 및 도시의 확장 등에 따른 공장폐수와 도시하수 등의 유입 그리고 대형선박 또는 유조선 등 사고에 의한 유류피해와 서해안 중심의 대단위 매립·간척사업으로 어장축소 등 어장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어업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또한, WTO체제 출범과 수산물 수입이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연안어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표 16〉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96,910	97,224	94,561	92,686	91,673	98.9
연안유자망	26,154	25,909	25,473	25,034	24,825	99.2
연안복합어업	44,769	44,415	43,422	42,263	41,703	98.7
연 안 통 발	10,581	10,521	10,344	10,248	10,161	99.2
구 획 어 업	8,378	8,445	8,242	8,292	7,876	95.0
마 을 어 업	2,321	2,439	2,539	2,447	2,726	111.4
정 치 망 어 업	554	552	556	479	553	115.4
기 타 어 업	4,153	4,943	3,985	3,923	3,829	97.6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10)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나. 근해어업¹¹⁾

근해어업 경영체는 2005년도에 4,359개로서, 전년도 4,467개보다 2.4%가 감소(108개)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 측면에서 업종별로 허가정수가 설정되어 1992년 9월부터 새로운 허가의 전면 억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2003년 8월 근해어업의 전체 업종에 대한 허가정수 재조정 또는 신설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경영체를 보면, 근해트롤·기선선인망·근해통발·근해형망 등은 소폭 감소하였고, 대형기저·중형기저·근해선망·근해채낚기·근해안강망·잠수기·근해봉수망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7〉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 %)

구 분	'02	'03	'04	'05	'05/'04
합 계	4,904	4,637	4,467	4,359	97.6
대 형 기 저	109	98	96	93	96.9
중 형 기 저	99	101	97	100	103.1
근 해 트 롤	102	101	102	98	96.1
근 해 선 망	100	92	86	85	98.8
근해채낚기	1,075	1,011	1,003	1,002	99.9
기선선인망	101	100	97	84	86.6
근 해 자 망	1,045	968	946	922	97.5
근해안강망	358	318	272	271	99.6
잠 수 기	236	237	237	237	100.0
근 해 통 발	490	466	455	437	96.0
근 해 형 망	178	173	159	143	89.9
근 해 연 승	930	889	839	809	96.4
근해봉수망	81	83	78	78	100.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11)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다. 양식어업¹²⁾

2005년 말 양식어업 면허건수는 9,110건이며, 품종별로는 굴 1,215(13.3%), 김 994(10.4%), 새고막 876(9.6%), 피조개 862(9.5%), 바지락 631건, 어류 570건, 미역 499건, 우렁챙이·복합양식 기타 3,513건이다.

그리고, 허가어업인 해상종묘생산어업이 531건, 신고어업은 육상양식어업 1,983건(육상수조식양식 1,583건, 축제식양식 400건), 육상종묘생산어업 1,271건으로 허가어업의 경우 총 4,037건이다.

품종별 경영형태를 보면 어류 및 기타 수산물양식은 개인과 협업경영체가 주로 경영하고 있으며, 해조류양식은 어촌계의 경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김, 미역 등 해조류양식의 경우는 양식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자본 또한 적게 들기 때문에 어촌계 위주의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저소득 어업인들이 주로 경영하고 있는 반면, 어류와 전복·진주조개·우렁챙이·새우·가리비양식 등은 많은 자본과 양식기술이 요구되므로 개발능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8〉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소)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8,554	8,717	8,839	9,046	9,110	100.7
김	1,253	1,208	1,166	1,159	944	81.4
굴	1,164	1,201	1,170	1,211	1,215	100.3
피조개	902	856	851	852	862	101.2
새고막	908	901	901	895	876	97.9
바지락	585	601	640	607	631	103.9
미역	692	714	733	547	499	91.2
어류	662	653	612	596	570	95.6
우렁챙이	462	478	500	488	473	96.9
기타	1,926	2,105	2,266	2,691	3,040	113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12)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표 19〉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122,218	122,243	121,853	123,169	124,668	101.2
어촌계 및 수협	96,498	96,377	96,302	98,169	100,208	102.1
개인 및 협업	25,720	25,866	25,551	25,000	24,460	97.8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라. 내수면어업¹³⁾

2005년 말 내수면양식어업의 경영체 수는 2,809개소(2,239ha)로 전년보다 114개가 감소 하였는데, 이는 값싼 수입수산물의 수입증가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속적인 경영유지가 곤란한 소규모 양식업체가 감소하는 대신 환경친화적인 첨단양식시설을 갖춘 규모가 큰 양식업체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풀이 된다.

〈표 20〉 2005년도 내수면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2,597	2,897	3,124	2,923	2,809	96.1
잉 어	246	283	335	317	324	102.2
향 어	138	157	155	140	110	78.6
뱀 장 어	275	356	389	417	456	109.4
송 어	326	315	321	296	281	94.9
기 타	1,612	1,786	1,924	1,753	1,638	93.4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13)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마. 원양어업¹⁴⁾

2005년도 원양어업 경영체는 2004년도 121개사 보다 9개사가 줄어든 112개사이며, 업체별 규모를 살펴보면 1~2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한 업체가 74개사로서, 전체의 66%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원양업체 경영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도에 조업한 원양어선은 전년도 433척보다 23척이 감소한 410척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참치선 205척, 오징어선 31척, 트롤선 130척, 기타 44척이었다.

우리나라 원양업체 및 어선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연안국 및 국제수산물기구들의 조업규제 강화 등 어업여건의 악화로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경영체의 부도 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21〉 원양업체 경영규모 추이

(단위 : 개사, %)

구 분	'02	'03	'04	'05	'05/'04
합 계	131	129	121	112	92.6%
1척	61	62	58	53	91.4
2척	33	28	28	21	75.0
3~5척	21	25	20	23	115.0
6~10척	5	4	4	6	150.0
11~20척	8	8	9	7	77.8
21척 이상	3	2	2	2	100.0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14)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제2절 어가 경제¹⁵⁾

1. 어가소득

2005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28,028천원으로 전년(26,159천원)에 비해 7.1%(1,869천원) 증가하였고, 전년에 비해 어업소득은 0.15% 감소한 반면, 어업외소득은 2.5% 증가하였으며, 어가소득중 어업소득의 비중이 42.6%로 전년에 비해 3.1%p 감소하였다.(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91.9%, 도시가계 소득의 71.8%)

〈표 22〉

어 가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어 가 소 득]①	21,463	21,590	23,916	26,159	28,028	107.1
경 상 소 득	21,463	21,590	20,221	22,604	23,594	104.4
어업소득	8,556	9,060	10,741	11,959	11,950	99.9
어업외소득	8,425	7,944	8,619	9,168	9,399	102.5
이전소득	4,482	4,586	861	1,477	2,245	152.0
비 경 상 소 득(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 -	- -	3,695 (4,556)	3,555 (5,032)	4,434 (6,679)	124.7 (132.7)
[농 가 소 득]	23,907	24,475	26,878	29,001	30,503	105.2
[도시가계소득]	31,501	33,509	35,280	37,361	39,010	104.4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주 : ① 어가소득=경상소득(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15)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표 23〉 어업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01	'02	'03	'04	'05	'05/'04
어업소득	8,556	9,060	10,741	11,959	11,950	99.9
어업총수입	18,980	17,846	23,114	25,144	26,576	105.7
어업경영비	10,424	8,786	12,373	13,185	14,626	110.9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주 : 어업소득 = 어업총수입 - 어업경영비

〈표 24〉 어업외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01	'02	'03	'04	'05	'05/'04
어업외소득	8,425	7,944	8,619	9,168	9,399	102.5
겸업소득	5,587	4,724	4,176	4,350	4,559	104.8
사업외소득	2,838	3,220	4,443	4,817	4,840	100.5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표 25〉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4,482	4,586	4,556	5,032	6,679	132.7
이전소득	4,482	4,586	861	1,477	2,245	152.0
비경상소득	-	-	3,695	3,555	4,434	124.7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2. 어가 가계지출

2005년도 어가가계지출은 22,89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8.6%(1,815천원) 증가하였는데, 소비지출은 17,682천원으로 전년(16,602)에 비해 6.5%(1,080천원) 증가하였고, 비 소비지출은 5,214천원으로 전년(4,479천원)에 비해 16.4% (735천원) 증가하였다.

〈표 26〉

가 계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01	'02	'03	'04	'05	'05/'04
가 계 지 출	16,863	16,660	20,019	21,081	22,896	108.6
소 비 지 출	16,863	16,660	16,249	16,602	17,682	106.5
비 소 비 지 출	-	-	3,770	4,479	5,214	116.4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표 27〉

소 비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01	'02	'03	'04	'05	'05/'04
소 비 지 출	16,863	16,660	16,249	16,602	17,682	106.5
식 료 품 비	3,225	3,211	4,129	4,452	4,699	105.5
주 거 비	996	920	1,088	1,078	1,215	127.1
광열수도비	860	906	1,166	1,184	1,236	104.4
피복신발비	576	543	637	655	642	98.0
보건의료비	1,376	1,331	1,091	1,199	1,409	117.5
교 육 비①	1,940	1,957	778	683	620	90.8
교양오락비	158	174	400	502	532	106.0
교통통신비	1,686	1,858	2,295	2,391	2,485	103.9
기 타②	6,046	5,760	4,665	4,458	4,844	109.7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주 : ① 2003년부터 교육비 중 출타자녀 교육비는 비소비지출로 분류변경

② 2003년부터 교제증여비 중 각종 성금 및 출타자녀 생활비를 비소비지출로 분류 변경

〈표 28〉 비 소 비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01	'02	'03	'04	'05	'05/'04
비 소 비 지 출	-	-	3,770	4,479	5,214	116.4
가계부문조세	-	-	210	218	203	93.1
공 적 연 금	-	-	298	351	374	106.6
사 회 보 험	-	-	381	382	355	92.9
기타 비소비지출	-	-	2,879	3,528	4,282	121.4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3. 어가자산

2005년 말 현재 어가의 평균자산은 183,841천원으로 전년(160,698천원)에 비해 11.4%(23,143천원) 증가하였는데,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13.9%(15,527천원), 15.6%(7,615천원) 증가하였다.

〈표 29〉 어 가 자 산

(단위 : 천원)

구 분	'01	'02	'03	'04	'05	'05/'04
어 가 자 산	132,519	139,188	140,477	160,698	183,841	114.4
고 정 자 산① (구 성 비)	96,408 (72.8)	98,229 (70.6)	100,400 (71.5)	111,870 (69.6)	127,397 (69.3)	113.9 -
유 동 자 산② (구 성 비)	36,111 (27.2)	40,959 (29.4)	40,077 (28.5)	48,828 (30.4)	56,443 (30.7)	115.6 -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주 : 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② 미처분농수산물, 사용중인어업용자재 등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4. 어가부채

2005년 말 현재 어가부채는 가구당 34,531천원으로 전년(32,544천원)에 비해 6.1%(895천원) 증가하였는데,

어업용부채는 5.1% 증가한 반면, 어업용 이외 부채가 7.3% 증가하였으며, 어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부채/당좌자산 비율은 72.5%로 전년(81%)에 비해 다소 개선(8.56%p 하락) 되었다.

〈표 30〉

어 가 부 채

(단위 : 천원)

구 분	'01	'02	'03	'04	'05	'05/'04
어 가 부 채(A)	22,848	23,673	29,836	32,544	34,531	106.1
어업용부채 (구 성 비)	9,617 (42.1)	9,893 (41.8)	16,696 (56.0)	17,665 (54.3)	18,560 (53.7)	105.1 -
어업용이외부채 (구 성 비)	13,231 (57.9)	13,780 (58.2)	13,140 (44.0)	14,880 (45.7)	15,971 (46.3)	107.3 -
당 좌 자 산(B)	28,485	33,439	32,585	40,159	47,608	118.5
단기상환능력[(A/B)×100]	80.2	70.8	91.6	81.0	72.5	-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주 : 어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제3절 수산물 생산

1. 생산동향¹⁶⁾

2005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전년(2,519천 톤) 보다 7.7%(195천 톤) 증가된 2,713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면 어업을 제외한 연근해, 양식 및 원양어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된다.

〈표 31〉 어업 생산 현황

(단위 : 톤,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2,665,123	2,476,188	2,487,042	2,519,101	2,713,908	107.7
연근해어업	1,252,098	1,095,787	1,096,526	1,076,687	1,097,016	101.9
양식어업	655,827	781,544	826,245	917,715	1,041,058	113.4
내수면어업	18,141	18,511	19,680	25,299	23,738	94.0
원양어업	739,057	580,346	544,591	499,400	552,096	110.6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어업생산통계

2. 연근해어업

2005년도 연근해어업(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1,097천 톤으로 전년도(1,077천 톤)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 2,714천 톤 중 40.4%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어업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우선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체 수(허가건수)는 2005년도 96,032개로서 전년(97,153개)에 비해 1.2%(1,121개)가 감소되었고, 이중 생산량의 비중이 큰 근해어업의 경영체는 2005년에 4,359개로, 전년(4,467개)에 비해 2.4%(108개)가 어선감척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전체 생산량과 경영체당 생산량은 전년 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별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경영체의 감소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는 단위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 [예,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 경영체 당 생산량 : ('95) 603톤→('05) 1,714톤, 184% 증]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패류 및 해조류 등 품종별 생산량 동향은 어류의 생산량이 722천 톤으로 전년(672천 톤)에 비해 7.4%(50천 톤) 증가, 갑각류의 생산량은 62천 톤으로 전년(57천 톤)에 비해 8.8%(5천 톤) 증가, 패류의 생산량은 81천 톤으로서 전년(100천 톤)에 비해 19.0%(19천 톤) 감소, 연체동물의 생산량은 212천 톤으로 전년(233천 톤)에 비해 9.0%(21천 톤) 감소하였고, 해조류의 경우는 생산량이 15천 톤으로서, 전년(9천 톤)에 비해 66.7%(6천 톤)가 증가하였다

가.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은 50~130톤급 어선에 의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소흑산도, 제주도 및 동해남부해역 등에서 고등어·정어리·전갱이·삼치 등을 주 대상으로 연중 조업이 이루어지는 연근해어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종의 하나이다.

특히, 선망어업은 2005년도에 한 달간의 자체 휴어기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대상종인 고등어 어황의 내유량 감소로 전년(220천 톤)에 비해 12.7% 감소한 192천 톤에 머물렀다.

나.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60~140톤급 어선 1척이 조업하는 ‘외끌이어업’과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어업’으로 구분되며, 서·남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로 갈치·가자미·조기류 등을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그 간 대폭적인 감척으로 단위 생산성이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 생산량은 86천 톤으로 전년(77천 톤)보다 11.7%가 증가하였다.

다.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20~60톤급 어선으로 동해 일원에서 오징어·가자미·도루묵·새우류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과, 서·남해에서 가자미·아귀·강달리·새우·갑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어업’과 ‘쌍끌이어업’으로 구분)으로 구분되고 있다.

동 어업의 어획량은 매년 감소하다가 2002년도부터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18천 톤)보다 20.2%가 증가된 22천 톤을 생산하였다.

라.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오징어·갈치·복어 등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주 어획대상이 되고 있는 오징어어장은 어군의 북상기에 따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해역별로는 남해안에서는 제주도~대마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서해안에서는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7~11월, 동해안에서는 동해남부해역으로부터 강원도 및 대화퇴 근해에 걸쳐서 6~12월에 어장이 형성되며, 이중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치어장은 주로 5~12월에 제주도 주변 및 제주도 동남해역에서 형성되고 있고, 복어어장은 1~4월에 중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의한

“중·일 잠정조치수역” 하단해역과 6~10월의 제주도 서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근해채낚기어업은 오징어의 어획량 감소로 63천 톤을 생산하여 전년(67천 톤) 보다 6% 감소하였다.

마.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갈치·조기·멸치·강달리·아귀·꽃게 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계절과 조류의 흐름에 따라 남북방향으로 어장 분포 범위가 변동한다.

또한, 동중국해에서의 어획대상 자원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 간 대폭적인 어선감척으로 생산량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갈치·조기 등의 어황이 호조를 보여 68천 톤을 생산하여 전년(44천 톤)보다 54.8% 증가였다.

바. 기선선인망(권현망)어업

기선선인망어업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중 규모가 가장 큰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톤급 미만의 본선을 비롯, 가공선·어탐선·운반선이 1개의 선단을 이루어, 남해연안 일대에서 멸치를 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멸치는 전형적인 연안 회유성 어종으로 해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량은 해황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5년에는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해역에서 중심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생산량은 132천 톤으로 전년(105천 톤) 보다 25.7% 증가하였다.

사. 자망어업

자망어업은 동·서·남해에서 조기·멸치·꽁치·꽃게 등을 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조기는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서해남부해역에 밀집어장이 형성되면서 2005년도 생산량은 100천 톤으로 전년(83천 톤)보다 20.5% 증가하였다.

아. 근해트롤어업

근해트롤어업은 70~140톤급 어선으로 서·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오징어·갈치·병어·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대형트롤어업과 20~60톤급 어선으로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에서 새우류·가자미·도루묵·청어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트롤어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형트롤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말쥐치의 대량어획으로 호황을 이루다 이후 대상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간 어선감척으로 인해 최근의 단위생산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해구트롤어업은 처음에는 새우트롤어업으로 번성하여 왔으나, 이후 대상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에 애로를 겪어오다가 최근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 생산량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근해트롤어업의 주어획대상 어종이 되고 있는 오징어 내유량 감소로 2005년 생산량은 102천 톤으로 전년(124천 톤) 보다 17.7% 감소하였다.

자. 통발어업

통발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부터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규모도 다양하다. 이 어업은 어획대상에 따라 장어통발, 기타통발(어류·게류·고둥류), 문어단지로 구분된다.

장어통발어업은 통영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1990년대 들어 자원감소 및 어장축소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통발 중 대형어선은 양자강 하류의 동중국해에서 꽃게를 대상으로 조업을 하여 왔으나,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EEZ로 이동 조업을 하게 되어, 자망, 저인망, 연안어업 등 기존어업과 경쟁조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61천 톤을 생산하여 전년(54천 톤) 보다 13.0% 증가하였다.

차. 연승어업

연승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에서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규모도 다양하다.

주 어획대상으로 갈치·옥돔·아귀·복어·가자미·장어·볼락류 등이며, 일반적으로 망어구에 의한 조업이 불가한 암초지역에서 조업이 간단히 이루어져 기업형 보다는 선주 겸 선장 형태의 소규모 형태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15천 톤을 생산하여 전년(11천 톤) 보다 36.4% 증가하였다.

〈표 32〉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2	'03	'04	'05	'05/'04
합 계	1,095,787	1,096,526	1,076,687	1,097,016	101.9
대 형 선 망	181,849	158,662	220,004	192,078	87.3
대 형 기 저	89,035	69,486	77,041	86,215	111.9
중 형 기 저	16,319	22,252	17,637	21,718	123.1
근 해 채 낚 기	73,063	73,802	66,845	62,891	94.1
근 해 안 강 망	59,144	40,887	44,145	67,691	153.3
권 현 망	90,492	133,954	104,846	132,146	126.0
자 망	136,132	92,052	82,877	99,891	120.5
근 해 트 롤	141,965	143,761	123,692	101,606	82.1
통 발 어 업	50,906	53,899	54,411	60,756	111.7
연 승 어 업	16,142	14,755	11,373	14,830	130.4
마을·구획어업	53,746	73,553	51,142	75,805	148.2
기 타 어 업	186,994	219,463	222,674	181,389	81.5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어업생산통계

3. 양식어업¹⁷⁾

2005년도 천해양식어업은 입식물량의 증가, 태풍“매미” 피해복구 이후 입식원 물량의 본격출하, 적조 등의 자연피해 감소 등의 이유로 전체 생산량은 13%가 증가한 1,041,058 톤으로 나타났다.

어류양식의 경우 2004년도에는 11%가 감소한 64,476톤이 생산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입식물량 증가, 태풍“매미” 피해복구 이후 입식물량의 본격 출하, 자연피해 감소로 26%가 증가한 81,421톤을 생산하였으며,

17)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주요 생산어종은 넙치·조피볼락·돔·송어·농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패류양식의 경우, 안정된 해황의 장기간 지속과 양호한 생육으로 굴, 홍합, 바지락, 키조개, 전복 등의 생산이 늘어난데 힘입어, 2005년도 생산량은 전년도 304,889 톤 보다 7%(21,366톤)이 늘어난 326,255톤을 생산하였으며, 품종별로는 굴이 251,706톤으로 패류 생산량의 77%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홍합(43,953톤), 바지락(17,401톤), 키조개(4,950톤)의 순을 보였다.

미역과 김·다시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해조류양식은 전년도 (536,748톤) 대비 15.7%(84,408톤)이 늘어난 621,156톤을 생산하였다. 그 중 미역이 281,871톤으로 49%를 차지하였으며, 김이 43%인 197,610톤, 다시마는 10.4%인 108,327톤을 생산하였다. 기타 톳·청각·파래 등은 전년도 24,110톤에 비해 38.3%(9,238톤) 증가한 33,348톤이 생산되었다.

기타 수산동물양식은 우렁챙이·미더덕·새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우렁챙이와 미더덕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2005년도에는 전년 (11,602톤) 대비 5% 늘어난 12,226톤이 생산되었다.

〈표 33〉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구 분		'02	'03	'04	'05	'05/'04
합 계		772,816	826,245	917,715	1,041,058	113.4
어류	소 계	48,073	72,393	64,476	81,421	126.3
	넙 치	23,343	34,533	32,141	40,059	126.6
	조피볼락	16,548	23,771	19,576	21,297	108.8
	기 타	8,182	14,089	12,759	20,065	157.3
패류	소 계	203,705	291,063	304,889	326,255	107
	굴	173,501	238,326	239,270	251,706	105.2
	홍 합	13,201	15,785	20,409	43,953	215.4
	피 조 개	4,745	4,696	3,134	2,548	81.3
	바 지 락	10,652	27,494	27,570	17,401	63.1
	기 타	1,606	4,762	14,506	10,647	73.4
해조류	소 계	497,557	452,054	536,748	621,156	115.7
	미 역	242,135	198,172	261,574	281,871	107.8
	김	209,995	193,553	228,554	197,610	86.5
	다 시 마	24,873	25,259	22,510	108,327	481.2
	기 타	20,554	35,070	24,110	33,348	138.3
기타수산 동물		23,481	10,735	11,602	12,226	105.4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어업생산통계

주 : 기타 수산동물은 우렁쟁이, 새우, 미더덕 등

4. 내수면어업¹⁸⁾

2005년 내수면어업 생산은 전년도 25천 톤에 비해 6.2%가 감소한 24천 톤이었다. 이 중 어로어업의 생산량이 7.5천 톤 수준으로 전체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고밀도순환여과식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점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4〉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18,141	18,511	19,680	25,299	23,738	93.8
어 로 어 업	5,971	5,690	6,080	10,302	7,500	72.8
잉 어	953	883	947	1,430	1,211	84.7
붕 어	1,896	1,552	1,004	1,397	1,145	82.0
미 꾸 라 지	2	-	6	-	1	-
뱀 장 어	17	10	20	37	35	94.6
가 물 치	6	8	6	24	13	54.2
메 기	102	266	99	146	229	156.9
송 어	-	9	-	-	-	-
피 라 미	233	247	120	50	21	42.0
패류(재첩 등)	669	636	1,465	3,972	1,400	35.3
기 타	2,093	2,079	2,413	3,246	3,445	106.1
양 식 어 업	12,170	12,821	13,600	14,997	16,238	108.3
잉 어	372	283	190	231	429	185.7
향 어	1,212	962	920	702	921	131.2
송 어	2,834	2,860	3,521	3,502	3,283	93.8
뱀 장 어	2,644	2,968	4,312	5,168	5,775	111.8
가 물 치	333	291	314	278	252	90.7
민 물 돔	609	756	717	302	268	88.7
기 타	4,166	4,701	3,626	4,814	5,310	110.3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어업생산통계

18)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5. 원양어업¹⁹⁾

2005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참치 연승어업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꽁치봉수망 및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어획 호전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552천 톤을 생산하였다.

가. 참치어업

우리나라의 참치어업은 참치선망어업과 참치연승어업으로 구분된다. 참치선망어업은 통조림 원료인 가다랑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28척이 출어,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211천 톤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용 통조림 원료로 공급하였으며,

참치연승어업은 횡감용인 눈다랑어, 황다랑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 2005년도에는 177척이 출어, 전년도 생산량 54천 톤 보다 8% 감소한 50천 톤을 생산하여, 대부분 일본에 횡감용으로 수출하였다.

나. 오징어어업

원양 오징어생산은 채낚기어업과 트롤어업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채낚기어업은 포클랜드, 페루 어장 등에 출어하여 전년 대비 13% 증가한 28천 톤을 생산하였으며,

남서대서양 및 뉴질랜드 수역 등에 출어한 트롤어선에서도 53천 톤이 어획되어, 전년 대비 11천 톤이 증가한 81천 톤을 어획하였다.

다. 트롤어업

트롤 어업은 원양어업 중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2005년도에는 전체 원양생산량의 39%인 215천 톤을 생산하였다.

19)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이는 명태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는 북양트롤어업이 러시아 측으로부터 2005년도에는 6천 톤의 쿼터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전년 대비 22%가 증가한 27천 톤의 명태를 어획하였다.

또한, 해외 트롤어업도 라스팔마스를 중심으로 한 서부아프리카, 남서대서양 및 인도네시아 등에 출어하여 전년 대비 2% 증가한 188천 톤(오징어 트롤어획 53천 톤 포함)을 어획하였다.

〈표 35〉 원양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2	'03	'04	'05	'05/'04
합 계	580,346	544,591	499,400	552,096	111
참 치 선 망	206,150	190,452	184,985	210,777	114
참 치 연 승	61,631	48,794	53,667	49,619	92
오징어채낚기	94,760	80,871	25,010	28,144	113
꽁 치 봉 수 망	20,088	31,219	22,943	40,509	177
북 양 트 롤	24,998	23,401	21,985	26,726	122
해 외 트 롤	160,623	161,720	183,738	187,929	102
기 타	12,096	8,134	7,072	8,392	119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어업생산통계

제4절 수산물 수출·입²⁰⁾

1. 수 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87년 이후 15억\$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국내외 수출환경의 악화로, 2001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내 왔으며, 2005년도에 들어서는 전년 대비 수출물량은 증가(△5,443톤, 1.3%)한 반면, 금액은 86백만\$(△6.7%) 감소하였다.

〈표 36〉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 %)

구 분	'02	'03	'04	'05	'05/'04
총 수 출	162,471	193,817	253,845	284,419	112.0
수 산 물	1,160	1,129	1,279	1,193	93.3
구 성 비	(0.7)	(0.6)	(0.5)	(0.4)	-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가. 품목별 수출현황

활어의 경우 2001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 왔으나, 2003년 들어 전년 대비 15% 증가한 79백 만\$을 수출하였으나, 2005년 90백만\$을 기록, 2004년 대비 2% 감소하였다. 또한, 신선·냉장의 경우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왔으나 2004년에는 144백만\$을 수출하여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 137백만\$을 수출하여 다시 감소하였다.

20)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한편, 수산물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냉동품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 나타내고 있는데, 2004년에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655백 만\$을 수출하였으며, 2005년에 595백만\$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9.1%가 감소하였다.

〈표 37〉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톤, 천\$, %)

구 분	'03		'04		'05		'05/'04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24,785	1,129,385	406,435	1,278,638	411,878	1,193,117	101.3	93.3
활 어	6,923	78,640	7,344	91,572	8,514	89,695	115.9	98.0
신선·냉장	29,195	141,837	27,076	144,090	24,237	136,795	89.5	94.9
냉 동	273,933	532,385	270,793	654,680	278,865	595,113	103.0	90.9
기 타	114,734	376,523	101,222	239,296	100,262	371,514	99.1	155.3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나. 국가별 수출현황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62.1%가 일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미국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뉴질랜드, 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졌으나, 중국, 스페인, 대만, 이탈리아, 홍콩, 호주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국가는 104개국이며, 국별 비중은 일본 62.1%, 중국 9.1%, 미국 7.4%, 뉴질랜드 5.1%, 태국 4.8% 등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8〉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천\$, %)

구 분	'02	'03	'04	'05	'05/'04
합 계	1,160,435	1,129,385	1,278,638	1,193,117	93.3
일 본	823,117	740,447	834,649	741,062	88.8
중 국	48,345	70,769	124,102	108,031	87.1
미 국	77,625	80,385	81,130	88,174	108.7
뉴 질 랜드	21,167	30,487	44,544	60,478	135.8
태 국	34,492	38,354	37,565	57,383	152.8
스 페 인	33,077	46,148	36,702	31,519	85.9
대 만	16,857	17,305	20,177	13,196	65.4
이 탈 리 아	12,155	11,356	14,030	11,253	80.2
캐 나 다	10,058	8,011	6,172	9,025	146.2
홍 콩	8,445	14,350	15,334	8,895	58.0
인도네시아	4,999	5,502	4,337	5,869	135.3
호 주	6,609	6,740	6,551	5,029	76.8
기 타	63,489	59,531	53,345	53,203	99.7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표 39〉

주요 어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 %)

구 분	'02	'03	'04	'05	'05/'04
합 계	1,160,435	1,129,385	1,278,638	1,193,117	93.3
참 치	273,524	224,640	249,915	226,399	90.6
오징어	65,089	83,425	122,938	107,578	87.5
넙 치	41,721	51,475	58,817	67,250	114.3
굴	76,122	74,699	76,641	61,204	79.9
캐비아(대용)	52,891	49,240	46,817	56,741	121.2
김	37,709	41,646	45,031	54,244	120.5
붕장어	57,732	52,075	51,939	49,161	94.7
계살	23,664	36,149	46,426	41,163	88.7
미역	20,400	21,900	35,885	29,868	83.2
툰	33,588	36,325	30,614	23,939	78.2
삼치	10,216	12,232	16,465	21,086	128.1
피조개	29,226	25,548	19,729	19,054	96.6
바지락	24,188	21,177	24,998	18,040	72.2
한천	7,128	7,821	8,550	15,529	181.6
새꼬리민태	8,241	10,042	11,829	15,315	129.5
고등어	15,569	13,789	10,739	13,152	122.5
어란	4,503	8,747	30,107	12,857	42.7
전갱이	16,795	7,971	17,712	11,848	66.9
민대구	5,389	5,578	8,537	10,628	124.5
돔	6,941	8,991	7,392	9,005	121.8
기타	349,799	335,915	357,557	329,056	92.0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 수 입

2005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은 갈치, 꽃게 등의 수입이 감소했으나 조기, 오징어 등의 수입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한 2,384백만 \$을 기록했다.

주요 수입국인 중국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작년대비 각각 3.0% 및 12.0% 증가하였으나, 일본 수산물 수입이 소폭 감소(△5%)를 나타내었다. 향후 자유무역협정 등 관세율변동 등으로 수산물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 전망된다.

〈표 40〉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톤, 백만\$, %)

구 분	'02	'03	'04	'05	'05/'04
총 수 입	152,126	178,827	224,463	261,238	116.4
수 산 물	1,884	1,961	2,261	2,384	105.4
구 성 비	(1.2)	(1.1)	(1.0)	(0.9)	-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가. 품목별 수입현황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되었던 횡감용 활어의 경우 2005년도에는 수입이 감소하여 176백만\$로 전년 대비 12.3% 감소세를 보였다. 신선·냉장의 경우 작년과 유사한 금액을 나타내어 2005년에는 전년 금액대비 3.9%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수입물량의 71.4%를 차지하는 냉동의 경우 물량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반면, 금액은 5.1%가 증가하여 활어를 제외하고 전 품목에 걸쳐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표 41〉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톤, 천\$, %)

구 분	'03		'04		'05		'05/'04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합 계	1,238,603	1,961,145	1,280,915	2,261,356	1,256,142	2,383,574	98.1	105.4
활 어	53,696	159,029	54,486	201,175	38,363	176,449	70.4	87.7
신선냉장	112,462	270,779	129,164	318,305	120,772	330,782	93.5	103.9
냉 동	913,181	1,239,212	904,471	1,337,986	897,493	1,406,323	99.2	105.1
기 타	159,264	292,125	192,794	403,890	199,514	470,020	103.5	116.4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나. 국가별 수입현황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의 39.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반면 베트남·미국·태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14.0%, 12.0%, 17.5% 증가하였다.

2005년도 현재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107개국으로 전년도 109개국에 비해 2개국이 감소하였으며, 국별 수입비중은 중국 39.3%, 러시아 11.6%, 일본 7.3%, 베트남 6.9%, 미국 6.4%로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의 71.4%를 점유하여 그 비중은 전년의 72.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42〉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천\$, %)

구 분	'02	'03	'04	'05	'05/'04
합 계	1,884,417	1,961,145	2,261,356	2,383,574	105.4
중 국	719,314	713,538	909,536	936,351	102.9
러 시 아	215,638	299,252	276,783	277,216	100.2
일 본	146,497	148,699	180,620	173,140	95.9
베 트 남	121,733	129,878	143,524	163,642	114.0
미 국	173,774	152,677	136,225	152,555	112.0
태 국	84,737	95,616	106,521	125,147	117.5
대 만	54,993	42,827	61,668	63,533	103.0
칠 레	22,375	32,362	43,935	57,076	129.9
캐 나 다	43,178	51,355	46,582	42,474	91.2
인도네시아	22,718	26,630	29,008	33,630	115.9
영 국	21,902	25,302	25,543	30,182	118.2
노 르 웨 이	26,152	25,229	35,226	29,146	82.7
기 타	231,406	217,780	266,185	299,482	112.5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제5절 수산물 수급 및 가격²¹⁾

1. 수 급

2005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 동향은 중국산 수산물 수입증가로 총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4.2% 증가한 5,802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4,169천 톤을 소비하였고, 1,121천 톤은 수출하였으며, 나머지 512천 톤은 2006년도 재고물량으로 이월되었다.

공급측면에서는 일반해면어업 1,097천 톤, 천해양식어업 1,041천 톤, 그리고 원양어업에서 552천 톤 등 2,714천 톤이 생산되어, 국내소비도 6.3%로 늘어났으며, 공급부족분은 수입 2,557천 톤과 전년도 재고량 531천 톤으로 충당하였다.

〈표 43〉

수산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공 급	생 산	2,665	2,476	2,486	2,519	2,714	107.7
	수 입	1,806	2,226	2,268	2,477	2,557	103.2
	전년재고	510	641	769	573	531	92.7
합 계		4,981	5,343	5,523	5,569	5,802	104.2
수 요	국내소비	3,260	3,433	3,578	3,922	4,169	106.3
	수 출	1,080	1,140	1,202	1,116	1,121	100.4
	차년이월	641	770	743	531	512	96.4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2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2. 소 비

2004년도 기준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48.7kg으로 전년 보다 8.9% 증가한 소비형태를 보였으며, 국민 동물성 단백질 공급비율에 있어서도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의 40.4%에 비하여 2004년에는 42.8%로 높아졌다.

〈표 44〉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단위 : kg/연간, %)

구 분	'00	'01	'02	'03	'04	'04/'03
합 계	36.8	42.9	44.5	44.7	48.7	108.9
어 패 류	30.7	36.2	36.3	38.5	40.8	106.0
해 조 류	6.1	6.7	8.2	6.4	7.9	123.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4)』

주 :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

〈표 45〉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단위 : g/1인당 1일, %)

구 분	'00	'01	'02	'03	'04	'04/'03
합 계	41.19	44.66	45.7	45.9	46.51	101.3
축 산 물	26.27	27.18	28.00	27.42	26.60	97.0
어 패 류	14.92	17.48	17.70	18.57	19.91	107.2
(점 유 율)	(36.2)	(39.1)	(38.7)	(40.4)	(42.8)	(111.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4)』

3. 가격

2005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내수면어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수산식품의 생산자물가(도매물가)도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요 대중성 해면어종인 고등어, 조기 등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소비자 물가동향

(단위 : %)

구 분	'01	'02	'03	'04	'05
총소비자물가	4.1	3.7	3.4	3.0	2.6
수 산 식 품	6.3	4.0	0.7	6.0	△1.3
- 선 어 개 류	5.4	4.6	1.4	1.4	△4.2
- 염 건 어 류	12.1	2.8	△1.7	7.8	7.2
- 해 조 류	△0.8	0.3	1.0	0.7	3.1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자료

주 1 : 전년 말 대비 등락률임

2 :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기준년도를 '1995년' → '2000년'으로 변경함

2005년도 수산식품의 소비자 물가는 대중성 어종인 갈치·냉동오징어 등의 가격 안정세와 고등어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가 하락하였으며,

염건어류는 액젓·마른오징어·복어 등의 생산 감소로 가격이 7.2% 상승하였고, 해조류는 생산량 감소 및 소비량이 많아 3.1% 상승하였다.

제6절 어업 및 어장환경²²⁾

1. 어 황

가. 해역별

2005년도 동해에서는 봄철 북상하는 꽁치를 대상으로, 가을철에는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전년비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오징어는 여름철 이후 동해 전해역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 졌으나 어황은 다소 부진하였다. 한편 동해구 중형외끌이어업은 가자미류, 도루묵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전년 및 평년비 다소 부진한 어황을 나타내었다.

남해에서는 멸치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으며, 특히 멸치의 어황은 전년 및 평년비 순조로웠으나, 그 외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 및 평년비 다소 부진한 반면,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근해안강망, 기선저인망, 유자망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으며, 강달이, 아귀, 갈치,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전년 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나. 어종별

고등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여름철 이후 서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었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비 다소 부진하였다. 멸치는 기선권현망 및 유자망어업에 의해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 졌으며, 전체적인 내유량 증가로 전년 및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최근 들어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참다랑어는 제주도~대마도간

22)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역에서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기선저인망어업의 주 대상어종인 갈치, 참조기는 전년 수준을 보였으며, 갑오징어는 여전히 낮은 자원 수준을 보였다. 한편 도루묵은 동해구 기선저인망어업에 의해 동해 연안측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비 다소 부진한 어황이었으나, 명태는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의 어획량을 나타내었다. 오징어는 여름철 이후 동해 전 해역에서 활발히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어황은 다소 부진하였다. 콩치는 봄철과 가을철에 동해 연안해역에서 전년비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2. 자원동향

가. 연근해 어업자원

연근해 부어 및 저어류에 관한 어획량 변동조사는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의 근해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조사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참다랑어, 갈치, 참조기, 말쥐치, 붕장어 등 9개 주요 어종에 대하여 어체측정과 체장조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생산력의 변동과 연급군 분석을 통하여 자원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2006년도 TAC 대상 자원인 고등어, 붉은대게, 오징어 등 10종과 추가 예비대상종인 갈치, 멸치 2종에 대한 자원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자료로 제공하였다.

나. 원양 어업자원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업 초기인 1970년대 초반에는 15~40만 톤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점차 증가하여 1992년에 100만 톤을 생산하여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약간 감소한 70~80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에는 약 55만 톤을 어획하였다.

다랑어류는 원양어업 초기에는 연승어획이 주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초부터 대형선망어선이 진출하여 중서부 태평양에서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주로 어획하고 있다.

북태평양 명태는 1980년대에 어획량이 최고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자원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원양어업국들은 북태평양 오호츠크 공해 및 베링공해에서 자율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였으나, 최근 베링공해 조업재개를 위한 자원조사를 실시중이다.

남서대서양 포클랜드 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증가하였고, 2005년 남동태평양 페루근해의 아메리카대왕오징어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꽁치류의 주 조업어장이 일본의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체어장 개발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러시아 남쿠릴수역에도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나, 동 수역도 일본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함에 따라 2002년 이후로 남쿠릴의 북부수역과 인접 공해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19척이 31,219톤을 어획하였고 2004년에는 19척이 22,943톤을 어획하였다.

3. 연안어장 환경변화

가. 연안어장 오염

해수 중 화학적산소요구량 (COD)을 기준으로 동해안은 대부분의 연안에서 해역기준 I 등급 (1 mg/L 이하) 수준으로 양호하였으나, 일부연안의 항내 정점들에서는 해역기준 II등급 (2 mg/L 이하) 수준을 나타내었다.

서해안은 대부분의 연안에서 해역기준 II등급 (2 mg/L 이하) 수준이었으나, 고창연안과 시화호에서 해역기준 III등급 (4 mg/L 이하) 수준이었다. 남해안은 대부분 연안에서 해역기준 II등급 수준을 나타냈으며, 내만역인 마산만, 진해만, 광양만 및 통영, 부산, 울산연안은 해역기준 III등급 수준이었다.

해저퇴적물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진해만, 거제도연안, 울산연안, 마산만, 시화호 등이 오염퇴적물 기준 (20 mg/g.d, 일본수산자원보호협회)을 초과하였다. 산취발성황화물 (AVS)은 강구연안, 영일만, 진해만, 울산항, 목포항, 시화호 등이 오염퇴적물 기준 (0.200 mg/g.d, 일본수산자원보호협회)을 초과하였다.

나. 적조발생

2005년에는 전 연안에서 총 39건의 적조가 발생하였으며, 무해성 29건, 유해성 10건이 발생하였다. 유해성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는 7월 19일 전남 붓돌바다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9월 14일까지 58일간 지속되었다.

2005년 적조는 예년에 비해 15~30일 이상 조기에 발생되었고, 발생범위가 남해안에 국한되었으며, 남해 중동부 해역에서 소멸 후 재발생

되어 장기간 지속되었다. 또한 *Chattonella antiqua* 적조가 전남 장흥·고흥해역에서 8월 4일 발생하여 9월 3일 소멸될 때까지 한 달간 지속되었다.

다. 대형 독성해파리의 대량 출현

대형 독성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 (*Nemopilema nomurai*)는 최근 7~8년 동안 여름부터 초겨울에 걸쳐 우리나라의 전 해역에 대량 분포하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7월 초순에 우리나라 남서 해역인 병풍도 남단 및 제주해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8월 중순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현하였으며, 8월말에서 9월 중순 사이에 해파리의 출현밀도가 년 중 가장 높았다.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2월에는 출현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제 Ⅱ 편
2005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제 1 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제1절 자율관리어업²³⁾

그 동안 정부 주도하의 어업자원관리는 어업인의 정부에 대한 의타심 심화 및 주인의식을 약화시켜 자원남획 및 어업질서 문란을 야기시키는 등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WTO체제 출범, UN해양법협약 발효,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은 국내·외 수산업의 여건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어업환경 악화는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절감케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어업인의 주인의식 및 자조·자립심 함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자율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2월부터 자율관리공동체 63개소가 신청하여 본격 추진되었으며, 시행 5년차인 2005년에는 참여공동체수가 308개소까지 확대되어 기반조성단계에서 확산·심화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중 추진실적이 우수한 60개소를 선정하여 89억원의 육성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선의의 경쟁을

23)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의 장애요인인 공동체 또는 업종·지역간의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는 민간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유도하고, 참여공동체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전담 어촌지도사를 지정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지원기구인 자율관리어업 자문위원회(1회), 시·도별 지역협의회(17회), 전국 자율관리지도자협의회(2회) 등을 통하여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안내 및 교육용책자 배포(10,000부), 우수사례집(29개 공동체) 및 영상물(2개소) 제작, 제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10월) 개최 등의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하였다.

〈표 47〉 2005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 동 체 수		308	5	14	10	11	21	32	25	99	37	33	21
육성 사업	지원수	60	1	2	3	2	6	6	5	16	8	7	4
	사업비	89	1	3	3	6	7	11	6	21	14	12	5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제2절 수산자원 조성²⁴⁾

1. 인공어초시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과 수산자원의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71년부터 추진해 온 인공어초 시설은 적지 306,751ha 중 '05년까지 186,398ha를 시설하여 61%를 달성하였다.

또한, 해역별·어종별 특성에 적합한 어초 다양화를 위해 2005년에는 폴리콘어초 외 2종을 일반어초로 선정·시설토록 하였고, 점보강제어초 외 8종을 시험어초로 선정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어초어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085백만 원을 투입 103,240ha에 대한 어초위치, 상태조사 및 3,837톤의 폐어망 등을 수거하고 갯녹음현상 발생어장 281ha에 5,687백만 원을 투입 해중림을 조성하였다.

〈표 48〉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실적

(단위 : ha, 백만 원, %)

구분	'02		'03		'04		'05		'05/'04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합 계	9,618	54,073	7,908	38,343	5,668	43,976	5,263	42,997	92.9	97.8
부 산	203	1,002	164	607	108	890	104	990	96.3	111.2
인 천	801	4,701	758	923	492	4,038	522	4,047	106.1	100.2
울 산	224	927	76	795	52	1,000	68	849	130.8	84.9
경 기	224	1,370	32	2,043	324	1,423	178	1,415	54.9	99.4
강 원	825	4,717	590	3,460	350	2,500	354	2,494	101.1	99.8
충 남	896	4,010	528	3,993	612	4,500	772	4,404	126.1	97.9
전 북	656	2,985	528	2,473	535	2,184	176	2,184	32.9	100.0
전 남	2,259	12,468	2,397	7,037	1,341	8,903	1,310	8,832	97.7	99.2
경 북	624	4,368	428	3,270	364	3,045	140	3,045	38.5	100.0
경 남	1,689	8,927	1,174	6,171	560	7,333	424	7,332	75.7	100.0
제 주	1,217	8,598	1,233	7,571	930	8,160	1,215	7,405	130.6	90.7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24)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2. 종묘방류

1971년 국립수산과학원 북제주수산종묘배양장(현재 패류육종연구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15개소의 국·도립 수산종묘배양장이 시설되어, 2005년까지 1,425백만 마리의 유용 수산종묘를 생산, 그 중 264백만 마리를 연안에 방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1986년부터 2005년까지 민간에서 생산된 넙치, 조피볼락 등 정착성 고부가가치 품종 743백만 마리를 매입·방류하는 등 연안 수산자원을 조성하였다.

〈표 49〉 국·도립 수산종묘생산시설 종묘생산 방류 현황

(단위 : 천마리, 천개, m, %)

배양장	시설 년도	주요 생산 품종	'04		'05		'05/'04	
			생산	방류	생산	방류	생산	방류
합 계			157,776	135,959	154,040	87,205	97.6	64.1
국립(연구센터)			99,624	93,630	26,920	21,760	27.0	23.2
패류육종(북제주)	'73	전복	99	70	-	-	-	-
양식사료(포항)	'80	참전복, 보라성게, 참해삼	100	80	-	-	-	-
어류육종(거제)	'82	넙치, 보리새우	1,235	1,150	190	100	15.4	8.7
해조류연구(목포)		청각, 참모자반	5,500m	-	-	-	-	-
패류연구(남해)	'89	진주조개, 피조개, 바지락	16,570	16,570	15,950	15,900	96.3	96.0
어류연구(울진)	'92	강도다리, 은어	60	60	5,595	5,595	9,325	9,325
갑각류(태안)	'96	대하, 꽃게	460	100	170	150	37.0	150.0
강릉시험포	'78	성게, 북방대합, 바윗굴	-	-	-	-	-	-
완도시험포	'84	참전복, 참모자반, 청각	5,500	-	5,000	-	90.9	-
부안시험포	'86	참전복, 꽃게, 주꾸미	-	-	-	-	-	-
남제주시험포	'87	참돔, 돌돔, 큰민어	75,600	75,600	15	15	0	0
시·도립			58,152	42,329	127,120	65,445	218.6	154.6
인 천	'02	넙치, 꽃게, 전복, 대하	5,500	5,400	10,730	10,730	195.1	198.7
강 원	'97	넙치, 전복, 성게, 우렁챙이	4,781	4,781	8,080	8,080	169.0	169.0
전 북	'00	넙치, 전복, 대하, 꽃게	29,703	25,493	30,948	30,873	104.2	121.1
전 남	'99	감성돔, 민어, 전복, 대하	4,256	4,030	10,082	9,000	236.9	223.3
경 북	'98	참돔, 전복, 우렁챙이, 해삼	3,530	-	3,040	3,040	86.1	100.0
경 남	'99	볼락, 굴, 전복, 돌류, 우렁챙이	7,672	635	61,840	1,542	806.0	242.8
제 주	'99	참돔, 돌돔, 전복, 오분자기	2,710	1,990	2,400	2,180	88.6	109.5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표 50〉 2005년도 시·도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현황

(단위 : 천마리, 백만원)

구 분	품종별	방류물량	지 원 금 액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	23종	920,294	8,958	6,270	2,688
부 산	넙 치	214	86	60	26
	해 삼	106	20	14	6
	조피볼락	260	91	63	27
	참 돔	209	58	41	17
인 천	전 복	300	300	207	93
	넙 치	727	100	70	30
	조피볼락	1,190	217	155	62
	황 복	238	100	70	30
	꽃 게	918	200	140	60
울 산	전 복	435	400	280	120
	넙 치	645	80	56	24
	감 성 돔	555	60	42	18
	조피볼락	408	60	42	18
경 기	넙 치	1,611	819	573	246
	조피볼락	218	120	84	36
강 원	전 복	772	418	292	125
	넙 치	381	139	98	42
	감 성 돔	365	78	55	24
	해 삼	1,236	298	208	89
	조피볼락	334	119	83	36
	내 수 면	1,366	241	169	72
충 북	내 수 면	723	142	100	43
충 남	넙 치	486	257	180	77
	대 하	22,214	100	70	30
	보리새우	340	153	107	46
	꽃 게	833	98	68	29
	내 수 면	345	115	80	34

구 분	품종별	방류물량	지 원 금 액		
			계	국 고	지방비
전 북	조피볼락	285	143	100	43
	내 수 면	125	9	6	3
경 북	전 북	918	363	254	109
	넙 치	136	83	58	25
	가자미류	20	30	21	9
	내 수 면	873	135	95	41
전 남	전 북	257	163	114	49
	넙 치	496	130	91	39
	감 성 돔	974	190	133	57
	해 삼	190	41	29	12
	가자미류	92	34	24	10
	대 하	39,000	105	74	31
	보리새우	1,750	35	24	11
	돌 돔	90	38	27	11
	참 돔	227	65	45	20
	내 수 면	3,506	200	140	60
경 남	전 북	227	158	110	48
	감 성 돔	873	168	118	5
	돌 돔	276	109	76	33
	참 돔	212	53	37	16
	볼 락	920	284	198	85
	내 수 면	1,805	90	63	27
제 주	전 북	733	1,026	718	308
	감 성 돔	200	66	46	20
	돌 돔	679	373	261	112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표 51〉

민간종묘 매입·방류 실적

(단위 : 천마리, 백만원, %)

품종별	'02		'03		'04		'05		'05 / '0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85,362	2,662	126,302	5,717	100,670	8,101	92,294	8,958	91.7	110.6
조피볼락	254	221	242	110	999	299	2,787	783	279.0	261.9
넙 치	1,549	261	2,518	1,001	6,093	1,968	4,482	1,608	73.6	81.7
황 복	77	56	260	130	340	170	238	100	70.0	58.8
감 성 돔	682	122	1,791	385	1,988	499	2,967	562	149.2	112.6
돌 돔	317	83	568	261	909	348	1,045	520	115.0	149.4
참 돔	652	64	-	-	525	125	648	176	123.4	140.8
농 어	-	-	317	142	-	-	-	-	-	-
볼 락	-	-	188	67	464	174	920	284	198.3	163.2
보리새우	-	-	2,178	59	4,719	99	2,090	188	44.3	189.9
해 삼	-	-	-	-	1,059	253	1,532	358	144.7	141.5
대 하	77,236	343	110,227	547	73,435	564	61,214	205	83.4	36.3
전 복	1,297	1,212	3,105	2,423	3,415	2,885	3,856	2,913	112.9	101.0
내 수 면	3,193	300	4,908	592	6,724	716	8,744	932	130.0	130.2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3. 바다목장 조성

세계 각 연안국의 EEZ 선포에 따른 어장축소, 경쟁적 조업에 의한 자원고갈과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수산물의 생산성과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연안 바다에 인공어초, 인공해조장, 해중림 등 인위적인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과학적으로 훈련된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해양환경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환경친화적인 울타리 없는 새로운 양식방법인 바다목장 조성을 위해 1998년~2010년까지 총 1,589억원을 투입하여 해역별 특성에 맞는 바다목장 5개소를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표 52〉

바다목장 조성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통영	여수	태안	울진	북제주
예 산	1,589	240	307	337	355	350
기 간	8~9년	'98~'06 (9년)	'01~'08 (8년)	'02~'10 (9년)	'02~'10 (9년)	'02~'10 (9년)
목장유형		다도해형	다도해형	갯벌형	관광형	체험·관광형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통영 바다목장은 그 동안 개발된 연구결과를 실험해역에 적용시키고, 조성된 자원의 효과 조사 및 관리이용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고,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서·제주해역 바다목장은 '03. 12월에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지역을 선정하여 어장환경, 생태, 자원조사 등을 통해 '0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4. 총허용어획량제도

TAC(Total Allowable Catch ; 총허용어획량)제도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제도로,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연안국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할권 강화 및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그 동안 수산업법(1995년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1996년 12월)을 개정하여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TAC 할당, 어획실적보고, 지도·단속 등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2002년 3월)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마련한 바 있다.

2005년에는 고등어·정어리·전갱이(대형선망어업), 붉은대게(근해통발어업), 대게(근해자망, 통발), 개조개·키조개(잠수기어업), 제주도소라(마을어업) 및 꽃게(연근해 자망, 통발 : 연평어장과 서해특정해역 한정) 등 7개 업종 9개 어종에 대하여 TAC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어업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오징어 자원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오징어의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TAC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상연습을 실시하였으며,

TAC 실시에 따른 오징어 어획 업계간의 갈등 해소 및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먼저 오징어를 대량 어획하는 4개업종 대표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민간자율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TAC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TAC할당량의 어획량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양륙장을 중심으로 전국 7개 지역에 14명의 읍서벼요원들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어획량관리, 해양생물자원의 과학적 자료수집, 관련법령 준수확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표 53〉 2005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현황

(단위 : 톤, %)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총허용어획량) 현황		
		TAC	할 당 량	소 진 율
대 형 선 망	고 등 어	160,000	111,169	69.5
	전 갱 이	12,000	11,991	99.9
	정 어 리	5,000	2	0.0
근 해 통 발	붉은 대게	22,000	21,813	99.1
잠 수 기	개 조 개	7,000	3,814	55.1
	키 조 개	2,300	2,293	99.7
마 을 어 업	제주도소라	1,683	1,585	94.2
근해자망통발	대 계	1,000	805	80.5
연근해자망통발	꽃 계	6,000	864	14.4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5.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03. 7. 15 시행된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에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관리·이용토록 의무화 함에 따라 시·도에서 2005년말 현재까지 27개소 / 4,103ha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수면에 대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제3절 양식어업 육성²⁵⁾

1. 양식어장 개발

2005년도 양식어장개발은 WTO/DDA, FTA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장 구조조정 위주의 개발정책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경쟁력 취약품종, 종묘 확보 곤란 및 수급 불균형으로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의 신규어장 개발금지과 유효기간 만료 후 재개발 시 일정부분을 축소하도록 하였고,

국가 공익사업이 예정된 수면이나 각종 재해 또는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도 신규어장 개발을 금지하고, 부실관리 또는 생산실적이 부진한 어장은 동일 어장으로 재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하여 다랑어, 고등어 또는 외해(중층)가두리양식 및 키조개 살포식 양식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험어업을 거쳐 해당 양식어장으로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해역별 특성, 종묘 수급문제 등을 검토한 후 어장개발을 허용하며, 국가공익사업으로 인한 유희수면에 대한 활용을 위하여 한정 어업면허의 개발과 기존어장의 여건변화로 양식이 곤란할 경우 적정품종으로의 대체개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25)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2. 환경친화형 양식기반 시설 확충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을 통한 지속적 생산증대를 위하여 2005년도에 31,858백만원(농특회계 10,674, 균특회계 1,800, 수발기금 19,384)을 투입·지원하였다.

사업내용은 배합사료 직불제 227ha, 수협사료시설·운영비 지원 1개소, 사료저장고 2개소, 폐사어처리시설 1개소, 해삼양식 시설 및 키조개 양식시설 각 1개소, 갯지렁이 양식시설 10개소, 축제식 월동장 시설 10개소, 노후 시설 개량 40개소, 그밖에 친환경양식 기자재 구입자금 및 양식어장 복원사업 등이다.

제4절 내수면어업 개발²⁶⁾

동해안의 연어자원 증강을 위하여 1967년부터 2005년까지 279백만 마리를 생산·방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강원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 및 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등에서 7,250천마리를 인공 부화하여 동해안 17개 하천 및 남해안 섬진강유역에 방류하였으나,

2000년부터 회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결과 치어방류 이후인 4~5월 연안해역의 수온이 평년대비 2~3℃의 고수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연어의 초기 먹이생물(neocalanus, oikopleura) 발생량이 부족하여 방류된 치어가 연안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상회유를 하게 됨으로써 초기 감모율이 높았고, 회귀당시에도 소상하천의 수온이 평년에 비하여 1~2℃가 높아 회귀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54〉

연어방류 및 채포 실적

(단위 : 천마리, %)

구 분	합 계	'67~'01	'02	'03	'04	'05	'05/'04
방 류 량	278,763	229,723	10,450	14,735	12,925	10,930	84.6
채 포 량	3,250	1,563	60	36	29	23	79.3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26)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제5절 어장정화²⁷⁾

어장환경의 보전·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2005년도에 패류·마을어장 및 해조류 어장 등 12,809ha을 정화하였고, 침체어망인양 사업도 실시하여 1,397톤을 수거·처리하였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만(灣) 중심의 광역 정화·정비사업으로서 '96년부터 남해안 9개만(전남4개만, 경남5개만)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전남도(여자만) 1,500ha와 경남도(진해·한산만) 3,679ha의 해역에 대해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두리양식어장은 사료 찌꺼기, 배설물로 인한 오니의 퇴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어병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가두리 양식어장 정화방법 개발연구』를 추진하여, 어장 해저의 퇴적된 오니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7)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제6절 적조대책²⁸⁾

2005년도 적조는 7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 경남 거제시 연안 및 전남 완도군 연안해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태풍“나비”에 의해 유해성적조(Cochlodinium)가 소멸되었으며, 가두리 및 육상양식장에서 돔류 등 양식생물 총 1,638천마리가 폐사하여 10.6억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의 유해성적조(Cochlodinium)는 연안수와 외양수가 만나는 전선대에서 발생하였으나 2005년에는 수온전선대 형성 없이 적조가 발생하였다.

이는 6월중순 일시적으로 강한 쿠루시오의 영향 및 태풍 “하이탕”(7월 18일)의 간접영향으로 외해에 머물던 코클로디니움²⁸⁾이 소량 연안으로 유입되어 7월 19일 나로도 해역인 붓돌바다에서 소규모로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적조발생기간에 예년과 같은 뚜렷한 강우를 동반한 태풍이나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없어 성층의 파괴나 영양염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8월중순 이후 전남 장흥에서 고흥해역까지 차토넬라 등으로 천이되면서 일시소멸 되었다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민·관·군·경의 총력대응과 적조발생 초기에 인공위성, 화상통신망, 적조예보 자동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신속한 적조탐색과 적기예보·전파 등 적절한 대처외 동시에 해양수산부, 시·도(시·군), 수협, 해경, 어업인 등의 참여는 물론 적조현장에 육·해군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등 총력방재를 실시하였으며,

28)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2002. 9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적조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육상기인 오염원, 해양오염원 저감 등 적조발생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적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수산생물 종묘대, 영어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죽은 양식물 철거비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표 55〉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시기와 특징

구 분	'01	'02	'03	'04	'05
최초발생일	8. 14	8. 2	8. 13	8. 5	7. 19
소 멸 일	9. 24	9. 27	10. 13	9. 3	9. 14
지 속 기 간	41일	57일	62일	30일	58일
최 초 발 생 지 역	나로도 인근 ~돌산 동안	여수 붓돌바다 ~돌산 동안	여수 붓돌바다 ~남해 두미도	거제 둔덕, 남부 여차	나로도인근
발 생 범 위	완도~강릉	완도~울진	진도~강릉	완도~거제	완도~거제
발 생 건 수	56건	59건	45	65건	39건
최 고 밀 도 (개체/ml)	32천	30천	48천	6천	25천
수 산 피 해	84억원	49억원	215원	1.2억원	10.6억원
소 멸 요 인	수온하강	수온하강	수온하강	기상변동, 중간경쟁	태 풍 “나비”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제7절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²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해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현재 천수만, 영광, 완도,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남해·통영 I, 남해·통영 II, 한산만, 진동만 등 10개소의 해역이 지정되어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후 20여년이 지나 어업환경 및 지역여건 등이 크게 변화되었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행위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2차에 걸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육지부분의 76%(1,243km² 중 941km²)를 해제(302km²은 존치)하고 해면부분(2,625km²) 존치·보존하는 조정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시·군으로 하여금 동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표 56〉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현황

구역		지정면적(km ²)			조정후(육지)		최초 지정
		계	육지(A)	해면	면적(B)	비율(A-B)/A	
합계		3,868.08	1,243.03	2,625.05	302.51	75.7%	
충남 (1)	천수만	213.45	82.67	130.78	11.8	85.7%	'78.11.
전남 (5)	완도, 함평만, 가막만, 여자만, 득량만	2,164.61	768	1,396.61	204.64	73.4%	'82. 1.
경남 (4)	한산만, 진동만, 남해·통영 I·II	1,490.02	392.36	1,097.66	86.07	78.1%	'75. 3.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29)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제 2 장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제1절 어업구조조정 및 재편³⁰⁾

우리나라 EEZ의 자원량은 479만 톤으로 연간 125만 톤 내외의 생산이 적정량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한·중·일 3국 어선들에 의해 연간 160만 톤이 어획되고 있어 약 30% 내외의 과도어획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어획은 어선의 대형화, 기관의 고마력화, 어구·어법의 발달, 과도한 어구사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어업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간 정부에서는 어선감척, 허가정수 설정, 업종통폐합 등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동일한 수산자원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업적 특성으로 지역간·업종간 조업분쟁, 어업인의 이기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최근의 WTO뉴라운드 협상전개, 신국제어업질서 형성 등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일반감척으로 연안어선 748척에 333억원을 지원하여 '94부터 '05까지 총3,865척 8,944억원을 지원하였다.

30)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제2절 어업질서 확립³¹⁾

1. 연근해어업 여건변화와 신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법무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3부 1청 장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어업 합동단속체제를 구축, 매월 2회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2005년 한해 적발·단속한 불법어업은 총 4,054건으로 이중 불법소형 기선저인망 어선 201건,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이 23건, 조업구역 등을 위반한 대형기선저인망 70건, 기선형망 192건, 기타 잠수기 등이 3,568건이다.

'05년 6월부터는 허가어선의 유형별·해역별 불법어업 근절방안을 수립하여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추진해온 결과 허가어선 단속건수가 '04년까지는 연간 2천여척이었으나 '05년도에는 4천여척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합법어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구 구입비 등 전업자금 4,652백만원을 지원하여 불법어선 167척을 합법어업으로 전업하였다. 또한, 불법어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도에 200척을 시작으로, 2004년도에 108척, 2005년도에 92척을 추가 지정하여 현재 400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4. 12. 31일 법

31)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를 제7312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05~'06년간 총 888억원(2,500척)투입계획을 수립하고 '05년도에 1,788척을 매입·정리하였다.

한편,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행위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584건으로 영해침범조업 및 무허가 49건, 특정금지구역침범 85건, EEZ위반조업이 350건이었다.

〈표 57〉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 분	'02	'03	'04	'05	'05/'04
합 계	3,102	2,067	3,673	4,054	110
소 형 기 저	1,258	888	904	201	22
중 형 기 저	31	37	40	23	58
대 형 기 저	39	15	64	70	109
기 선 형 망	61	39	243	192	79
잠 수 기	23	27	80	98	123
기 타	1,690	1,061	2,342	3,470	148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2. 안전조업 지도

연근해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연근해 어선안전조업지도대책」을 수립·시달하는 한편, 성어기별 주요 어장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어로보호 및 조업분쟁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대화퇴·동중국해 등 먼 어장에는 복지모선으로 하여금 조업중

인 어선들에 대하여 유류 및 식수 공급과 더불어 긴급환자에게는 치료와 구급약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경 등과 협조하여 조난어선 발생시 구조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표 58〉 어업인 보급지원 및 조난어선 구조 실적

(단위 : 척, 명)

지 원 내 용	'02	'03	'04	'05
식 수 공 급	4	1	10	-
유 류 공 급	-	-	-	2
의 료 지 원	165	52	24	9
조 난 어 선 구 조	7	5	-	13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또한, 전국 주요 항·포구 39개소의 선박출입항신고소(통제소 및 합동신고소)에 배치된 어선안전점검요원 60명을 통하여 출항어선에 대한 항해·통신장비 점검 및 선원수첩 소지, 어선원 안전조업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게 함으로써 출어선에 대한 월선·피랍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다.

〈표 59〉 어선원 교육 및 안전점검 실적

(단위 : 명, 척, %)

구 분	'02	'03	'04	'05	'05/'04
어 선 원 교 육	62,823	60,450	58,349	56,825	97.4
어 선 안 전 점 검	54,587	57,350	77,636	100,237	129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3.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연근해어장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조업안전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업무를 위탁(11,305백만원 지원)하여 운영하면서, 매일 어업기상예보 방송과 태·폭풍 등 악천후 시 조업어선의 안전한 항·포구 대피를 지도하고, 해·어황 예보와 어가유통정보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전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 어업정보통신국의 주요 운영실적은 교신가입어선 12,473척을 대상으로, 3,200천통의 무선전보를 송·수신 처리하였으며,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에 의한 EEZ 출어선에 대한 위치, 어획실적보고 154천통, 입역 및 출역통보 36천통 등을 수행함으로써 일본 및 중국수역에 출어하는 우리어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표 60〉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02	'03	'04	'05	'05/'04
합 계	10,557	10,928	11,480	12,156	105.9
인 건 비(운영비)	9,819	10,300	10,976	11,305	103.0
시 설 보 강 사 업 비	738	628	504	851	168.8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제3절 WTO/DDA, FTA 협상대응 국내대책³²⁾

FTA 및 '05. 12월 말로 예정된 WTO-DDA 협상 타결 이후 예상되는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05 ~ '09까지 5조 6천억원을 투융자하는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였는데

동 대책은 1999년 한·일 어업협정발효 등 어려워진 어업여건에 따라 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어업인지원특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주목표로 하여 WTO-DDA/FTA 협상대응, 수산자원회복, 생산구조개편, 선진어업질서의 정착과 해양환경 개선, 소비자 지향적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어촌지역 활성화 등 8개 중점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요 어종 및 업종별로 경쟁력 실태분석을 통한 피해보전 세부방안과 직접지불제 등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4개 대책반을 구성,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WTO 등 국제협상동향에 따른 적기대응 체제를 갖추었으며,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피해보전대책 마련을 위한 「WTO 및 FTA 협상 관련 국내대책 수립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32) 해양수산부 통상협력팀

제 3 장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제1절 수산물 가격안정³³⁾

1. 정부 비축사업

명태·오징어 등 주요품목을 주 생산 시기에 산지수협을 통해 적정량을 구매하여, 성수기 주요 소비지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으로 원활한 구매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05년에는 냉동오징어·냉동고등어·김 등 7개 품목 15천 톤을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05. 10월 말라카이트그린 대책 발표로 내수면양식어류 수급조절이 불가피하여 송어·향어·자라 등 603톤(35억원)을 구매하는 등 총 3.8천톤(145억원)을 구매하여 수급조절 및 시장 활성화를 기하였다.

〈표 61〉 2005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단위 : 톤, 백만 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15,020	38,178	3,881	14,486	25.8	37.9
김	270	1,829	108	1,560	40.0	85.3
냉 동 오징어	3,000	4,310	745	2,118	24.8	49.3
냉 동 고등어	1,500	8,998	2,028	4,175	135.2	46.4
냉 동 갈 치	250	3,922	397	3,125	158.8	79.7
냉 동 명 태	10,000	2,802	-	-	-	-
긴급가격안정		16,319	603	3,508	-	-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33)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2. 민간 가격안정사업

2005년도 민간가격 안정사업에 2,492억원을 지원하여 오징어·명태·조기·갈치·김 등 276천톤을 수매하였다.

부문별로는 저장수매지원사업에 1,971억원을 지원하여 174천톤을 수매하였고, 가공수매 지원사업에 521억원 102천톤을 수매함으로써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산지수협 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공판장 포함)에 출하촉진을 위한 기금 969억원을 지원하여 1,192천 톤의 물량을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였고, 산지도매시장의 출하촉진을 위하여 55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산물유통증진 및 상품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3.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도 재고 및 2005년도 생산·수입·수출 계획을 분석·검토하여 「수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특히, 설날 등 성수기 성수품목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날대책기간(2005년 1월 25일 ~ 2월 07일)”, “추석대책기간(2005년 9월 05일 ~ 9월 16일)”을 정하여, 명태·오징어, 고등어 등 수요과다품목을 중심으로 정부비축품을 방출하는 동시에, 민간보유량의 출하도 권고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물가지도반을 상설 운영하여 재고조사 및 출하독려 등 수급조절기능을 보완하였다.

제2절 유통구조 개선³⁴⁾

1. 유통시설 확충

수산물의 신속한 양륙과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2005년도에 19,177백 만원을 투입하여 위판장 2개소, 자갈치시장 현대화 및 부산 감천항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지로 직출하 하여, 유통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영어조합법인 등 13개소에 수산물직매장 설치비 18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62〉 2005년도 수산물유통보급시설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물 량	사 업 비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 담
합 계	17	44,005	19,177	7,757	2,000	15,071
활 선 어 위 판 장	2	1,400	420	-	-	980
수산물도매시장건설	1	23,757	14,000	7,757	2,000	-
수 산 물 직 매 장	13	5,857	1,757	-	-	4,100
자갈치시장 현대화	1	12,991	3,000	-	-	9,991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2. 유통기능 강화

연근해(양식 포함) 수산물 생산량 2,162천 톤의 54.6%인 1,182천 톤을 산지 수협에서 상장 매매함으로써, 어업인 수취가격 제고 및 어획물의 신속 분산·유통을 촉진하였으며,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취급물량은

3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357천 톤으로 우리 나라 수산물 생산량의 16.5%를 취급하였고,

이 중 도매시장법인이 253천 톤으로 70.8%, 수협공판장에서 76천 톤으로 21.2%, 상장지 외의 물량이 28천 톤으로 7.8%를 취급하였다.

그리고 산지 및 내륙지 공판장의 환경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중도매인 등 유통중사자와 생산어업인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수산물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수산물 32개 품목에 대하여 표준거래단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표준규격으로 출하시 수발기금에서 162억원을 연 4%의 저리로 생산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사업자 등에 지원하였다.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협 및 공영도매시장 내 도매법인·하역노조 등에 하역장비인 팔레트와 지게차 구입비 338백만 원을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수산물유통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2002년까지 73개 산지수협의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수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infofishnet.co.kr) 구축을 통하여 산지수협의 위판정보(물량, 가격 등)를 어업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경락정보 제공을 위하여 강동수산 등 11개 도매시장에 경락정보 DB를 구축하였고, 경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강동수산 등 3개소에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 추진한 영어조합법인등 500개 어가의 홈페이지 구축과 이들 어가 등이 참여한 통합수산물 전문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04년 250백만원 → '05년 520백만원) 하였다.

〈표 63〉 수산물 규격출하촉진 지원대상품목과 거래규격

품 목	거래단위	거 래 단 량	포 장 재
마 른 멸 치	봉지, 상자	500g, 1kg, 2kg	비닐, 골판지
북 어	봉지, 상자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마 른 오 징 어	봉지, 상자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굴 비	상 자	5마리, 10마리	골판지
김	봉 지	10장	비닐
마 른 미 역	봉 지	5장	비닐
마 른 실 미 역	봉 지	20g, 50g, 100g, 250g	비닐
마 른 썰 은 미 역	봉 지	20g, 50g	비닐
쥐 치 포	봉 지	200g, 500g, 1kg	비닐
마 른 새 우	상 자	500g, 1kg, 2kg, 3kg	골판지
마 른 문 어	축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뱅 어 포	속	5장, 10장	비닐, 골판지
간 미 역	봉지, 상자	200g, 500g, 1kg, 3kg, 5kg, 10kg	P.E필름, 골판지
새 우 젓	통, 병	1kg, 3kg, 5kg, 10kg	P.E용기, 유리용기
멸 치 젓	"	1kg, 3kg, 5kg, 10kg	P.E용기, 유리용기
어 리 굴 젓	"	200g, 500g, 1kg	유리용기, 합성수지
굴	통, 봉지	200g, 500g, 1kg, 3kg, 10kg	비닐, P.E용기, P.S상자
바 지 락	포 대	500g, 1kg, 3kg, 5kg, 10kg	P.E그물망
피 조 개	통	500g, 1kg, 3kg, 5kg, 10kg	합석, 스티로폼
고 막	포 대	500g, 1kg, 3kg, 5kg, 10kg	P.P포대
우 령 썩 이	통	500g, 1kg, 3kg, 5kg, 10kg	스티로폼
꽃 게	상 자	3kg, 5kg, 10kg	골판지, PVC
냉 동 오 징 어	"	2kg, 4kg, 8kg	골판지
명 태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폼, 골판지
조 기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폼, 골판지
고 등 어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폼, 골판지
갈 치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폼, 골판지
삼 치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폼, 골판지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 1매의 크기 : 가로 206mm, 세로 189mm 이상, 마른미역 1장의 규격 : 가로 75cm, 세로 15cm 이상

〈표 64〉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물량

(단위: 톤, %)

구분	시장명	법인명	'02	'03	'04	'05	'05/'04
합계	15	23	359,993	351,289	352,856	356,681	101.0
중 양 도 매 시 장	가락동	소 계	127,044	125,685	123,297	121,153	98.1
		강 동 수 산	70,110	70,407	70,234	66,062	98.3
		서 울 건 해	23,662	23,491	25,860	20,684	98.9
		수 협 공 관	24,120	25,206	20,922	26,308	101.7
		상 장 예 외	9,152	6,581	6,281	8,099	128.9
	대 구	소 계	9,286	10,894	13,117	14,816	112.9
		대 구 수 산	5,996	6,740	7,557	7,557	108.1
		대 구 종 합	3,290	4,154	5,560	6,641	119.4
	대 전	소 계	5,804	6,824	6,103	6,299	102.0
		대 전 수 산	5,393	6,420	5,627	5,623	99.9
한 발 건 해		411	414	476	606	127.3	
울 산	소 계	6,748	7,132	7,405	6,988	105.9	
	중 양 수 산	2,393	3,192	3,215	3,207	99.8	
	울 산 건 해	3,522	757	475	564	118.9	
	수 협 공 관	833	3,183	3,673	3,217	87.9	
노량진	노량진수산	108,381	105,200	102,191	98,102	96	
지 방 도 매 시 장	구 리	소 계	64,073	58,776	59,847	60,446	101.0
		강 북 수 산	29,855	24,177	22,896	25,288	110.4
		수 협 공 관	34,218	34,599	35,394	34,310	97.0
	수 원	소 계	5,081	3,517	5,588	6,290	112.5
		수 원 수 산	1,767	582	2,442	2,830	115.8
		수 협 공 관	3,314	2,935	3,146	3,460	109.9
	청 주	청주수산	4,349	2,947	2,500	2,223	89.0
	전 주	소 계	3,595	3,595	3,221	3,099	96.3
		전 주 수 산	1,898	1,898	1,982	1,801	109.1
		수 협 공 관	1,697	1,697	1,239	1,298	104.7
	안 양	상 장 예 외	14,609	16,251	18,210	18,878	103.6
	안 산	소 계	3,812	3,667	4,077	4,317	105.8
		안 산 수 산	3,812	3,223	4,010	4,242	105.7
		상 장 예 외	-	444	67	75	111.9
	충 주	충 주 수 산	1,104	958	865	858	99.2
이 리 수 산		992	1,064	1,350	1,307	96.9	
포 항 수 산		4,002	4,022	4,516	4,497	99.2	
경 주 수 산		1,113	757	569	541	95.1	

자료: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표 65〉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시장명	법인명	'02	'03	'04	'05	'05/'04
합계	15	23	976,745	977,892	1,006,575	1,018,106	101.1
중 양	가 락 동	소 계	390,939	347,838	383,668	392,381	102.3
		강 동 수 산	161,183	152,709	179,890	168,481	93.7
		서 울 건 해	133,248	103,798	108,136	125,936	116.4
		수 협 공 판	66,958	67,198	73,901	72,248	97.8
		상 장 예 외	29,550	24,133	21,761	25,716	118.1
도	대 구	소 계	21,318	21,781	25,602	27,296	106.6
		대 구 수 산	13,121	13,013	14,732	15,846	107.5
		대 구 종 합	8,197	8,768	10,870	11,450	105.3
매 시	대 전	소 계	12,125	15,026	15,281	15,260	99.9
		대 전 수 산	9,564	12,814	12,789	11,920	93.3
		한 받 건 해	2,561	2,212	2,492	3,340	134.0
장	울 산	소 계	20,959	20,797	19,868	21,160	106.5
		중 양 수 산	9,717	9,371	8,174	8,578	104.9
		울 산 건 해	5,590	3,684	3,224	4,249	131.7
		수 협 공 판	5,652	7,742	8,034	8,333	103.7
	노량진	노량진수산	315,459	308,594	330,668	310,225	93.9
지 방	구 리	소 계	125,378	118,883	126,250	119,931	95.0
		강 북 수 산	57,436	50,301	46,294	46,310	100.1
		수 협 공 판	67,942	68,582	73,833	67,361	91.3
도	수 원	소 계	10,387	7,124	11,644	12,323	105.8
		수 원 수 산	4,253	1,421	5,861	6,003	102.4
		수 협 공 판	6,134	5,703	5,783	6,320	109.2
매 시	청 주	청 주 수 산	8,442	5,445	4,652	4,145	89.2
		소 계	11,541	11,541	10,157	10,967	107.9
		전 주 수 산	5,238	5,238	5,885	5,664	96.3
장	안 양	수 협 공 판	6,303	6,303	4,272	5,303	124.1
		상 장 예 외	36,451	42,902	49,425	53,081	107.3
		소 계	7,419	7,434	13,145	11,907	90.6
시	안 산	안 산 수 산	7,419	6,083	11,869	11,719	98.8
		상 장 예 외	-	1,351	1,276	187	14.7
		소 계	2,502	2,295	2,341	2,105	90.0
장	충 주	충 주 수 산	2,565	2,644	3,087	3,141	101.7
		이 리 수 산	2,565	2,644	3,087	3,141	101.7
		소 계	8,002	8,040	9,031	9,005	99.8
포 항	포 항	포 항 수 산	8,002	8,040	9,031	9,005	99.8
		소 계	3,258	2,284	1,756	1,635	93.2
경 주	경 주	경 주 수 산	3,258	2,284	1,756	1,635	93.2
		소 계	3,258	2,284	1,756	1,635	93.2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제3절 수산물 검사³⁵⁾

1. 수산물검사 강화

UN 해양법 발효에 따른 어장축소 및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수산물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WTO체제 및 FTA체결 확산에 따른 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화와 건강식품으로의 선호도 증가로 수산물 수입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말라카이트그린 등과 같이 새로운 위해물질로 인한 불량수산물의 적발 건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연안해역의 환경악화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EU 등 세계 각 국에서도 자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 이에 부합되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수입국과 긴밀한 위생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이면서도 불량수산물의 수입빈도가 높은 중국과 베트남에 대하여는 기 체결된 수산물위생약정에 따라 가공공장등록 및 현지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증명서 첨부 등을 의무화 하므로써 수출국에서 생산단계부터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활수생동물에 대하여도 추가로 「한·중 활수생동물검사검역에 관한 약정」을 체결·시행(2005.10.15)함에 따라 양식시설에 대하여도 등록 및 관리 의무화로 외래 난치성 질병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5)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도네시아와 「한·인도네시아 수산물·수산제품 위생약정」을 체결·시행(2005.12.14)함에 따라 위생 취약국가에 대한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수산물에 대한 약정을 근거로 중금속, 항생물질 등 위해물질이 검출된 중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등록시설에 대하여는 수입 잠정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약정국가의 등록가공공장 및 양식시설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 개선토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입증된 수산물이 수입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입수산물의 검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서는 활어 특성상 활력도 유지를 위해 조건부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정밀검사결과 통보전 사전 불법유통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5.1.10부터 활어, 냉동품, 건제품, 염장품에 대하여는 조건부신고필증 교부대상 물품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부적합 빈발품목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후란, 색소 및 유기인제농약 등과 같이 국내외 위해정보 입수시 신속하게 수입수산물에 대해 동 물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수입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국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감소되므로서 국내 생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식약청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산 낙지에 강제 물 주입으로 인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05년 10월 한·중 수산실무자회의에서 우리 측은 물 주입 수산물

수출을 근절토록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우리 측의 물 주입 검사방법과 판정기준을 제시하여 양국의 검사방법과 기준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물 주입 수산물을 수출하는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중국검역 당국에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도 검사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입수산물검사신청시 검사종류에 대한 휴대폰 단문자서비스(SMS), e-메일 서비스 및 검사정보 인터넷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수산물 검사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관능검사로 인한 부적합 처분시 검사판정위원회에 수입신고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수출수산물의 위생협약 국가에서 요구하는 위생조건에 부합된 원활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외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의 조사·점검계획 수립시에 점검시기 및 회수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수산물검사·검역예규」를 개정·시행하였으며, 대 일본지역 수출수산물의 항생물질 검사에 엔로플록사신 항목을 추가하는 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도모하였다.

〈표 66〉 수산물 수출·입 검사실적

(단위 : 천톤, 백만\$, %)

구 분	2003		2004(A)		2005(B)		대비(B/A)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 출	96	219	100	279	129	380	129	136
수 입	930	1,649	1,010	1,933	932	1,939	92	100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아울러 국내산 수산물 중 대중성 어종과 오염 우려가 높은 생산단계의 양식어종 등 27종 1,368점을 대상으로, 식중독균·항생물질·중금속, 말라카이트그린(MG)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생산단계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만을 생산·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수산물품질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제품, 염장품등 68개 품목을 냉동품, 헛감용 등을 추가하여 112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분, 설탕등 관능위주의 심사기준에서 항생물질, 식중독균, 중금속 등 위생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수산식품의 웰빙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 검사기능 강화

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화에 따른 수입증가와 더불어 불량수산물의 반입도 증가하고 있어 수입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질량분석기(LC/MS/MS) 등 첨단 분석검사장비 51종 330대를 확보하였으며, 기존 검사원에 대하여도 일산화탄소·항생물질·중금속 등 관련 7개 분야 25명을 국내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석검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수준의 검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제4절 수산물 수출·입 대책³⁶⁾

1. 수입 개방대책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수입자유화에 따른 정치·사회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8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1997년 7월 1일까지 잔여 수입제한 품목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거나 수입 제한 방법을 GATT 규정에 합치시키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1일 2004년도 관세통계통합분류상 수산물로 분류된 406개 전 품목에 대한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수입품 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1992년에 3개 품목을 시작으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왔으며, 2005년 현재 조정관세적용품목은 뱀장어(활어), 돔(활어), 오징어(냉동) 등 11개 품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중국산 뱀장어에 대해서는 “선 검사, 후 통관” 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하면서 아울러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검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어패류 중금속 검사기준을 종전의 총량 기준에서 개별적인 검사로 변경하고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는 등 수입검사를 한층 강화하였다.

36)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2. 수출 촉진대책

우리나라 1차 산업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였던 수산업은, IMF 영향에 따른 경영압박과 시장개방 등 국내외 여건 악화로, 2001년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2005년에도 적자가 지속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발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외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양자간·다자간 외교협상을 통한 수출활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

동 사업은 영세한 중소 수출업체의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199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해외시장개척단 파견·포장디자인 개발·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우수수산물 광고·수출주력품목 집중지원 등을 위하여 1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나. 수출촉진 및 증대를 위한 수산외교협상 강화

최근 수출 대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수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수산물의 제1수출국인 일본 또한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어, 대일 수출 확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한·일 양국간 고위급 회담 및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양국간 수산물 교역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서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김 수입쿼터(Import Quota ; IQ)제도에 대하여 우리 측은 이를 폐지

(대 한국 적용중지 포함)토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측은 김 IQ제도는 WTO규정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부터는 중국산 김도 수입한다고 발표('04. 10. 22)하였다. 우리 측은 우리나라산 김 수출에 영향이 없도록 배정량의 한·중 분리, 지금까지의 수출물량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이런 주장은 한·일간 의견차이로 합의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1일 '일본의 김 IQ제도가 WTO규정에 부적합' 함을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으며, 2006년 1월 20일 향후 10년간 한·일간 김 IQ물량을 1,200만속으로 합의하여 안정적인 김 수출 물량을 확보하였다.

다. 수출업체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 추진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수산물 수출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5년에 원료를 구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원료수매자금 472억 원을 연리 4%(업체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3.0% ~ 3.5%)로 융자 지원하였으며,

수산물 수출업체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814억원을 연리 4%(업체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3.0% ~ 3.5%)로 융자 지원하였다.

또한, 2005년 세계 일류상품으로 활넙치, 전복, 냉동다랑어 3개 품목이 지정되었으며, 기 선정된 김·굴·비단잉어·참치켄 등을 육성 지원하여 해외시장에 우수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수산물 수출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례적인 설문조사 및 수출진흥확대회의 등을 통하여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다양한 수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5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³⁷⁾

1. 가공제품 생산

2005년도 수산물 가공제품생산은 1,559천 톤으로 전년도의 1,529천 톤 대비 2%의 증가되었으며, 처리 형태별·품종별 생산추이는 <표 67>과 같다.

<표 67>

수산가공품 생산 추이

(단위 : 톤, %)

구 분	'02	'03	'04	'05	'05/'04
합 계	1,438,677	1,357,717	1,528,795	1,559,201	102
○ 고차가공품	267,124	253,734	348,007	316,029	91
- 동결처리	57,483	46,233	60,047	57,213	95
- 통 조 립	83,043	80,608	159,638	138,585	87
- 한 천	397	347	458	443	97
- 연 제 품	87,015	91,121	96,581	88,290	91
- 조미가공품	19,343	21,501	22,486	19,759	88
- 어 유 분	19,843	13,924	8,797	11,739	133
○ 단순가공품	1,171,553	1,103,983	1,180,788	1,243,172	105
- 원형동결	938,999	983,951	993,030	965,868	97
- 건 제 품	42,014	26,724	53,064	58,343	110
- 염신장품	42,598	37,381	34,626	43,534	126
- 해조제품	82,946	28,511	71,265	153,597	216
- 기 타	64,996	27,416	28,803	21,830	76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37)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2. 가공산업 지원

수산물 가공제품의 생산증대와 산지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5년도에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127억원과 가공업체 운영자금 90억원 등 23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용은 <표 68>과 같다.

이와 별도로, 수산물 유통의 One-Stop 체제 구축과 원양어획물의 가공수출 등 물류센터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산 감천항에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조성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68〉

가공업체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02		'03		'04		'05		'05/'04
	개 소	금액	개 소	금액	개 소	금액	개 소	금액	
합 계	45	15,404	70	20,582	93	23,645	-	19,251	81
◦ 시설 자금	9	7,064	33	11,402	43	12,700	37	11,251	89
- 냉동냉장시설	5	5,400	5	4,650	5	5,000	4	4,611	92
- 가공시설현대화	2	400	-	-	2	1,080	3	1,560	144
- 산지가공시설	3	1,264	4	1,552	10	3,740	7	3,700	99
- 선어회가공시설			4	4,000	3	1,500			-
- 기 타	-	-	20	1,200	23	1,380	23	1,380	100
◦ 운영 자금	36	8,340	37	9,180	50	10,945	-	8,000	73
- 냉동냉장업	15	3,810	22	6,635	18	5,150			
- 통조림제조업	3	600	7	1,090	4	700			
- 조미가공업	-	-	-	-	1	100			
- 해조가공업	10	2,300	5	920	8	1,190			
- 연제품가공업	1	300	1	90	1	100			
- 기 타	7	1,330	2	445	18	3,705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 '05년부터 가공업체 운영자금은 업종별로 분류 않고 통합운영

3.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국가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증표를 표시하여 시장에 출하하게 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 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1993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과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로 구분된다.

수산전통식품은 예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우리 고유식품의 계승 및 육성을 위해 품목을 지정하고, 공장심사 및 품질심사 후 그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상품에 「물레방아」 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써, 2005년 말 현재 젓갈류·죽류·계장류 등 5개류 43개 품목을 지정하여 69개 업체에서 인증을 받아 생산·출하하고 있으며, 1999년 최초로 승어 어란 제조 기능보유자를 수산물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표 69〉 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젓갈류(27)	○ 젓갈 :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밴댕이, 자하, 우렁챙이(멍게), 청어알, 가리비 ○ 액젓 : 멸치, 까나리, 청매실멸치, 새우 ○ 식혜 : 가자미, 명태
죽 류(6)	○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계 장 류(3)	○ 꽃게, 민꽃게(돌게), 참게
건 제 품(2)	○ 굴비, 마른가닥미역
기 타(5)	○ 조미김, 고추장굴비, 재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한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산지특산물을 대상으로 품질심사 후 그 품질을 인증하여 상품에 「품」자 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서,

인증대상품목은 2004년 말 현재 마른오징어·마른멸치·굴비·마른옥돔·마른한치·마른꽃새우·덜마른오징어·간미역·간다시마·김·찢툰 등 4개류 25개 품목에서 2005년에 횡감용·냉동수산물, 해조가공품 3개류 38개품목으로 확대하여 109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생산·출하하고 있다.

〈표 70〉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건제품(10)	○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한치, 마른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염장품 (3)	○ 간다시마, 간미역, 간고등어
해조류 (8)	○ 마른김, 마른돌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 마른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찢툰
횡감용수산물 (17)	○ 신선·냉장품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방어, 삼치, 농어, 오징어, 붕장어, 우렁챙이, 생굴 ○ 냉동품 : 새조개, 피조개, 새우, 북방대합, 한치, 참치, 학공치
냉동수산물 (19)	○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콩치, 청어, 새우, 옥돔, 굴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표 71〉 수산 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조미가공품(4)	○ 조미취치포, 조미개량조개, 다시마환, 다시마분말
해조가공품(2)	○ 다시마환, 다시마과립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제 4 장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³⁸⁾

제1절 어촌개발

1. 어촌종합개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도시 집중, 지역간 또는 도시·어촌 간 불균형, 환경오염 등 개발후유증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의 수산정책도 증산지향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어촌개발은 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려 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어가수는 1997년 100천 호에서 2005년도에는 80천 호로 줄어들었고, 도시가계소득에 대비한 어가소득은 1997년 74% 수준에서 2005년도 7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1988년부터 시범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어촌계가 3억원의 한도내에서 어·패류양식 등 소득증대 사업과 도로 등 생산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어업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을 스스로 선택·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향식 개발방식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정부 사업방식과는 매우 다른 내용의 사업이었다.

38)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전국에 바다와 접하고 있는 시·군이 65개임을 고려하여 “1개 시·군에 1개 어촌계씩” 6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여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 18,742백만 원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65개 사업 실시 어촌계 중에서 27개가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촌의 노인·부녀·장년·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협의하게 됨으로써 어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전국의 모든 어촌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여러 개의 어촌계를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총 160개 권역)하고 선정된 권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1994년 7월 농어촌발전특별세의 신설로 투입재원 5,432억원을 확보한 후, 1995년도부터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당해 연도에는 21개 권역에 52,500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2005년도까지 152개 권역(완료 134, 계속 18)에 487,88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72〉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 분	합 계		'88 ~ '92	'94 ~ '03	'04	'05
사 업 량	완 료	202	65	109	21	7
	계 속	18	-	21	4	18
사 업 비	506,627		18,742	404,650	50,418	32,817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주 : 1. 지원율 : (1988 ~ 1992년) 국고 70%, 지방비 30%
 (1994 ~ 2003년)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2004년 신규사업부터)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
2. 사업량 중 1988 ~ 1992년 기간은 어촌계수이며, 1994년 이후는 권역수임
3. 본 사업은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03년부터는 2개년사업으로 추진

〈표 73〉 시도별 어촌관광 지원 실적

(단위 : 권역, 백만 원)

구분	합계	인 천	강 원	충 남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권역수	23	1	1	1	12	3	4	1
사업비	32,817	856	1,094	1,750	14,276	3,020	8,321	3,500
권역명		용진 북도· 영흥	강릉 강릉동	서천서천	여수 화정 여수 남면2 고흥 동일 고흥여자만 해남 송지1 무안 월두 완도 소안 완도 고금 진도 남동·세포 진도 전두 신안 자은 신안 안좌	영덕대진 울릉울릉 포항월포	통영한산2 통영산양2 거제거제만 남해고현	북군 한림서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주 : 기본조사용역비는 제외된 수치임

지원규모는 권역당 평균 3,500백만 원으로서 지원조건은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이며, 특히 자담 5% 중 공공부문은 집행주체인 시·군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여 최대한 어업인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선착장·물량장 등 어선계류시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수산특산물 가공·공동작업장 등 수산업관련 육상시설, 낚시터·직판장·관광낚시어선 등 어촌소득기반시설 등이며, 이 사업은 어업소득과 어업외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환경개선을 연계시킴으로써 어촌정주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2. 어촌관광 활성화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 어업여건의 악화에 따른 어촌의 어업 외 소득원을 개발하고, WTO-DDA, FTA 협상 등 시장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어촌지원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소득 증가 및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의 소득 증대와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어촌관광모델 24개소(어촌어항복합공간 7개소, 다기능어항 6개소, 어촌관광단지 11개소)를 대상으로 4,732억원을 투입하여 어촌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촌계장 등 어촌마을 리더그룹에 대한 어촌관광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어촌관광 컨설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어촌교류방안 등을 담은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을 마련('04. 5)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1) 어촌관광모델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에 따라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찾는 관광어촌」을 모토로 우선 어촌관광모델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표 74>와 같이 모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04년도에 어촌·어항복합공간(I 모델)인 마량항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다기능어항인 강원도 대포항 개발을 민자로 착수한데 이어

2005년도에는 어촌·어항복합공간 2개소, 다기능어항 5개소, 어촌관광단지 4개소 등 11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쳤고, 어촌어항복합공간 2개항

(양포, 정자)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I 모델인 마량항 개발공사를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어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표 74〉 어촌관광 모델개발사업(시범사업)

구 분	I형(복합공간)	II형(다기능어항)	III형(어촌관광단지)
개 념	◦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어촌·어항복합공간	◦ 기존어항 + 관광기능 ⇒ 다기능어항	◦ 기존어촌 + 관광기능 ⇒ 어촌관광단지
사업기간	◦ 6개년('04 ~ '09)	◦ 6개년('04 ~ '09)	◦ 6개년('04 ~ '09)
사업주체	◦ 해양수산부/지자체	◦ 해양수산부	◦ 지자체
사업대상	◦ 7개소('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안목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 6개소('04.10.25선정) 대변항(부산시 기장군) 대포항(강원도 속초시) 홍원항(충남 서천군) 국동항(전남 여수시) 격포항(전북 부안군) 지세포항(경남 거제시)	◦ 11개소('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사업규모	◦ 총 1,079억원 -개소당 150억원 .어항부문:100억원 .어촌부문:50억원 .국비:25억원 .도비:25억원 -기본및실시설계비 29억원	◦ 총 2,957억원 -개소당 500억원 .국가어항부문:300억원 .민자유치부문:200억원 * 대포항 372억원 -기본및실시설계비 85억원	◦ 총 696억원 -개소당 60억원 .어촌부문:60억원 .국비:30억원 .도비:30억원 -기본설계및홍보비 36억원
주요 시설	◦ Fisherina, 녹지공원 복지회관, 생태체험장	◦ Seafood센터, 마리나 해상위락시설, 관광호텔	◦ 수변공원, 산책로 Seafood센터

2)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 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01년부터 '13년까지 112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05년은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의 동검마을 등 18개 마을을 조성하였다.

〈표 75〉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조성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58	2	3	7	5	6	4	12	6	8	5
2001	9	1		2	1	1		1	1	1	1
2002	8	-	-	1	1	1	1	1	1	1	1
2003	11	1	1	1	1	-	1	2	1	2	1
2004	12	-	1	1	1	1	1	3	1	2	1
2005	18	-	1	2	1	3	1	5	2	2	1

〈표 76〉 연도별 어촌체험마을 투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1시범사업	'02년	'03년	'04년	'05년	
사 업 량	112	9	8	11	12	18	
사 업 비	합 계	68,222	9,422	4,000	5,500	6,000	11,000
	국 비	34,111	4,711	2,000	2,750	3,000	5,500
	지방비	30,700	4,240	1,800	2,475	2,700	4,950
	자부담	3,411	471	200	275	300	550

3) 기타시설

1998년부터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공간 제공과 지역간 균등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어업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 수산·친 해양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4년까지 7개 지역에 개소당 60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말까지 전남 완도(60억원)·경남 거제(60억원)·강원 삼척(60억원) 등 3개 지역이 완공되어 지역관광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부산 북구(60억원), 경기 안산(60억원), 경북 영덕(60억원), 제주 북제주(60억원) 등 4개 지역에 240억원(국비 120억원, 지방비 120억원)을 지원하여 '05년까지 부산을 제외한 3개소를 준공하였다.

다. 어촌관광홍보 및 도시/어촌교류

1) 어촌관광홍보

'05년은 5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다운어촌 찾아가기 행사(22회 3,220명)를 추진하였고,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등 어촌관광 관련 박람회에 참가(3회)하여 어촌관광모델 전시 및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언론매체 및 지하철 광고판,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어촌관광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77〉 연도별 어촌관광홍보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어촌관광홍보	-	-	-	130	530

2) 도시/어촌교류

어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공동화의 지속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어촌을 되살리고자 도시와의 교류의 일환으로 '05. 5. 24. 어촌사랑 선포식과 함께 100개의 기업·단체와 100개의 어촌이 처음으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하고 교류의 물꼬를 터 2005년 한 해 동안 총 214개 기업·단체와 어촌이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는 외연확대와 함께 상호 방문 및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시/어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2절 어항시설 확충

1. 어항개발의 개요

수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여 <표 78 참조>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 78> 어항지정 현황

(’05.12.31기준)

구분		항수	지정권자	투입재원	비고
법정항	국가어항	105	해양수산부	국비 100%	
	지방어항	307	시·도	국비 80% 지방비 20%	
	어촌정주어항	492	시·군·구	지방비 100%	
비법정항	소규모항	1,313	시·군·구	지방비 100%	육지 : 533개항 (해수부 관장) 도서 : 780개항 (행자부 관장)

2. 어항개발현황

가.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항을 지정하여 개발을 착수한 이후 2005년까지 105개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30,885억원 중 2005년까지 총사업비의 64.7%에

해당하는 19,974억원을 투입하여 81개항을 완공하였으며 77%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

〈표 79〉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수	105	2	5	2	-	14	7	6	30	15	18	6
완공항	81	1	3	2	-	11	5	5	23	12	14	5

2005년에는 54개항에 1,735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투입중인 경남 지세포항 등 6개항을 완공하고, 강원도 남해항 등을 관광친수어항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시범개발중인 전남 국동항 등 6개항의 다기능어항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다기능어항 개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완공항 중 항내수질오염으로 어항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청도, 소안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항내수질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나. 지방어항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항을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완공율이 저조함에 따라 1994년부터 농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균형개발특별세 재원으로 53개항에 441억원(국비 353억원, 지방비 88억원)을 투입 17개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307개항 중 115개항이 완공(완공률 37%)되었다.

〈표 80〉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307	14	33	4	5	14	29	12	92	23	63	18
완공항	115	9	16	2	2	2	13	5	23	8	25	10

다. 어촌정주어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3개항을 지정하였으며, 2005년 현재 492개항이 지정되어 있으나, 지방어항의 완공율이 부진함에 따라 완공위주의 집중투입을 위하여 어촌정주어항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81〉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지정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수	492	14	6	13	8	19	19	0	26	4	345	38

제3절 어선건조 및 장비·설비 현대화³⁹⁾

1. 연안어선 대체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

가. 친환경 어선건조 지원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선 현대화를 위하여 '77년 연근해어업진흥계획에 따라 추진한 노후어선대체사업은 '88년 이후부터는 합성수지(FRP)어선 보급시책에 의거 목·강선의 건조지원을 중단하였다.

친환경어선건조사업(구 : 노후어선대체사업)의 지원대상은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중 감척대상인 안강망, 낭장망, 해선망어업을 제외하였으며, 합성수지(FRP)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였다.

2005년도에는 2,879백만원을 투입하여 59척(160톤)의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지원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조업 및 해양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였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어선의 74.2%를 점유하고 있는 FRP 어선의 폐선 처리 및 선박수리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2005년부터는 친환경재질인 알루미늄 선박 건조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알루미늄 어선 건조에 지원된 사업물량은 61.35톤, 사업비 982백만원으로, 지원단가는 톤당 20백만원이었다.

나. VHF(DSC) 무선설비 지원

어선과 일반선박간 통신수단 구축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난으로 어업인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2005년도부터 안전정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39)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2003년도 현재 선박검사대상 어선 13,735척중 VHF 무선설비 장착 어선이 1,193척으로 8.7%에 지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로 5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 지원되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250백만원을 지원하여 268대의 VHF를 설치하였다.

2.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개량 지원

가. 어선기관 대체 지원

'77년부터 연근해어업진흥계획에 의거 무동력어선의 동력화 및 저효율기관 대체를 위한 “동력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하여 왔으나, '88년이후 보조지원을 중단, 융자 재원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사업명칭도 어선기관대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896백만 원을 지원하여 7,045마력을 대체하였다.

나.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지원

'77년부터 해양사고 예방 및 어선의 피해의 최소화 등 원활한 구조를 위하여 무전기 등의 통신, 항해장비보급을 추진하여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하여 왔으나 '83년 이후 보조지원을 중단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400백만원을 투입지원 16척의 장비 및 설비를 개량하였다.

다. 어선용 기계 공급 지원

1994년부터 무전기, 레이더 등 12개 품목의 어선용기계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세어업인의 기계구입 부담을 줄여 조업능률향상과 안전조업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400백만 원을 지원하여 44대의 어선용 기계를 지원하였다.

〈표 82〉

2005년도 친환경 어선건조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보조	융자	소계	자담
합 계				6,218.8	969.8	3,855.2	4,825.0	1,393.8
소 계				4,098.8	969.8	2,159.2	3,129.0	969.8
농 특	친환경 어선건조	267.74톤		3,599.4	720.1	2,159.2	2,879.3	720.1
		AL	61.35톤	1,227.0	245.4	736.2	981.6	245.4
		FRP	206.39톤	2,372.4	474.7	1,423.0	1,897.7	474.7
	VHF무선설비	832대	499.4	249.7	-	249.7	249.7	
소계				2,120	-	1,696	1,696	424
기 금	어선 기관대체	7,000마력	1,120	-	896	896	224	
	장비·설비개량	10척	500	-	400	400	100	
	어선용기계공급	250대	500	-	400	400	10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제 5 장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제1절 국제 어업협력 강화

1. 연안국과의 어업협력⁴⁰⁾

200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어선이 입어한 연안국은 5대양에 걸쳐 26개국으로서 지난해 31개국보다 5개국이 줄었다. 입어국이 줄어든 이유는 그 동안 계속 입어해오던 오만, 멕시코, 모잠비크, 마다카스카라 등 4개국과 2004년도에 입어를 재추진하였던 베트남 수역에 입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13개국이나, 특히 우리 어선이 입어한 26개국 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함에 따라, 기 체결된 어업협정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모색 및 연안국에 대한 어업협력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2005년도에 우리어선이 입어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상호 입어하는 일본, 중국과는 입어료를 상호 면제하고 있으나, 우리 원양어선이 일방적으로 입어하는 24개국은 입어료를 지불하고 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연안국에 지불한 입어료 총액은 57,646,769\$, 어획량은 552,096M/T으로서 2004년도의 입어료 총액 46,214,835\$, 어획량은 499,400M/T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어획량 감소 원인이었던 포클랜드 수역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어황 회복에 기인한다.

40)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우리나라 어선이 연안국에 입어하는 조건 즉, 조업수역 및 척수, 어획 할당량, 입어료 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어업회담을 개최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어선의 원활한 입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며, 특히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의 하나로써 태평양의 도서국 나우루에 스쿨버스 1대를 비롯한 학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 12월 26일 남아시아 일대를 강타한 지진해일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현지 조사활동 2회 등 활발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와의 수산분야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표 83〉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현황

국가별	체결일	발효일	비 고
합 계			13개국
중 국	'00. 8. 3	'01. 6.30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일 본	'98.11.28	'99. 1.22	6개월전 통보로 종료
파푸아뉴기니	'92. 1.25	'92. 4.15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러시아	'91. 9.16	'91.10.22	6개월전 폐기통보 없을시 매 1년씩 연장
모리타니아	'84. 1. 7	'84. 1. 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에쿠아도르	'84. 5.22	'84. 9.19	6개월전 통보시 종료
호 주	'83.11.23	'83.11.24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투발루	'80. 6.18	'80. 6.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쿡아일랜드	'80. 8.25	'80. 8.25	3개월전 통보시 종료
솔로몬	'80.12.12	'80.12.12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키리바시	'80.12.18	'80.12.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프랑스	'80. 9.19	'80.12.19	3개월전 통보시 종료
이 란	'77. 5.11	'78. 4. 1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표 84〉 양국간 수산협력약정 체결현황

국가별	체결 부처	체결(발효)	비 고
합 계			4개국
노르웨이	수산부	'02. 1.24	2년마다 정례회의 개최 등
베트남	수산부	'02. 4.23	양국 EEZ내 어업활동 상호 지원 등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02. 4.26	양국 EEZ내 어업활동 상호 지원 등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 농축수산식품처	'03. 9. 1	수산·양식 기술의 공동개발 등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가. 한일 어업협정⁴¹⁾

1998년 11월 28일 체결한 『한·일 어업협정』에 의거, 2005년 한·일 어업협상은 2004년 12월 24일 및 2005년 2월 5일 동경에서 『제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양국 EEZ 입어규모를 1,086척, 어획할당량은 67,000톤(등척·등량)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을 결정하였다.

또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국 배타적경제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 중 2006년의 어획할당에 관련된 것의 정보제공을 1회 실시하였고, 조업질서를 위한 조치로서 지도·단속실무자회의를 2회 실시하였다.

2005년도 양국어선의 조업실적은 우리어선 731척이 입어하여 20,306톤을 어획하여 소진율은 할당량 대비 30.3%로서, 어획량은 지난 해 20,669톤보다 363톤 감소하였다. 업종별 조업현황은 꽂치·붕수망어업의

41)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소진율이 98%로서 전년비 증가하였고, 나머지 업종은 전년비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한편, 일본어선은 183척이 입어하여 9,640톤을 어획하여 소진율은 할당량 대비 14.4%로서, 어획량은 지난 해 25,032톤보다 15,392톤 감소하였다. 업종별 조업현황은 일본의 주력업종인 대중형선망, 이서저인망, 예인조어업의 어획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어선의 소진율이 전년보다 대폭 낮은 이유는 제주도 남부수역에서 형성된 고등어 어장이 2005년에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5〉 2005년도 한·일 양국간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

구 분	합 의 사 항		조 업 결 과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 국 어 선	1,086	67,000	731	20,306	30.3
일 본 어 선	1,086	67,000	183	9,640	14.4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나. 한·중 어업협정⁴²⁾

2000년 8월 3일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의거, 2005년 한·중 어업협상은 2004년 11월 24일 중국에서 『제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EEZ 입어규모를 우리 측은 6개 업종 1,600척 68,000톤, 중국 측은 4개 업종 2,100척 77,52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을 결정하였는데, 우리 측은 2004년도 보다 198척을 더 확보하였으며, 중국 측은 지난 해 2,250척 보다 150척을 감축하였다.

42)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2005년도 양국 어선의 상대국 EEZ에서의 조업실적을 보면, 우리 어선은 383척이 입어하여 5,580톤을 어획하였고, 소진율은 할당량 대비 8.2%, 어획량은 지난 해 대비 56% 증가하였다. 업종별 조업현황은 낚시류가 생산량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그 외의 업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중국어선은 1,586척이 입어하여 27,879톤을 어획하였고. 소진율은 할당량 대비 36%, 어획량은 지난 해 대비 60.1% 증가하였다. 업종별 조업현황은 우조 어획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의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어선의 소진율이 낮은 이유는 중국어선의 밀집조업과 어장 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경제성 저하로 입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으로 우리어선의 소진율 향상을 위하여 2006년도 중국 측과의 입어교섭시 우리 주력업종인 낚시류 어업의 조업여건 개선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입어규모의 실질적 균형 문제와 어종별, 업종별 할당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표 86〉 2005년도 한·중 양국간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

구 분	합 의 사 항		조 업 결 과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 국 어 선	1,600	68,000	383	5,580	8.2
중 국 어 선	2,100	77,500	1,586	27,879	36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다. 한·러 어업협정⁴³⁾

1991년 9월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쿼터에 의한 입어 등을 협의해 오고 있다.

러시아 수역은 다른 원양수역과는 달리 우리 바다와 연접해 있어 어장간 거리가 짧아 어업경비 소요가 적고 조업관리도 용이(러시아 15일, 남미·대서양 60일, 인도양 45일)하는 등 장점이 많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3대 어종인 명태의 총 생산량 중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이다.

특히,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이후 북해도 수역 명태 트롤어선이 철수함에 따라 북양트롤어선은 대체어장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러시아어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 어장은 명태 외에도 청어·대구·꽁치·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자원량이 풍부하여 수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87〉

명태생산 추이

(단위: 톤,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199,330	25,040	22,132	20,073	26,029	129.7
원 양	소 계	199,123	24,825	21,890	20,009	26,004	129.9
	러 시 아	199,123	24,825	21,890	20,009	26,004	129.9
	북 해 도	-	-	-	-	-	-
연 근 해		207	215	242	64	25	39.1

자료: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43)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러시아 수역에서의 어획쿼터는 1991년 9월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간 교대로 개최되는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정부간 쿼터가 결정되고 있으며, 어선별 배정은 정부간 쿼터가 확정된 이후 한국 원양어업협회 “북양트러블위원회”에서 어선별 톤급과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어획쿼터 배정이 확정되면 러시아 “국가어업위원회”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게 된다.

2004년 12월 개최된 제14차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총 32,250톤이 배정되었으나, 러시아수역의 어업자원상태를 고려하여 한국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키로 한 2004년 양국 정상간의 공동선언 결과에 따라 2005년도에 중국에 배정키로 되어있던 명태쿼터 중 6,000톤이 추가되어 총 36,250톤이 배정되었다.

2005년도 정부간쿼터 소진 현황을 보면, 명태는 쿼터 26,500톤 중 26,004톤(98.1%)을 소진하였고, 대구는 쿼터 2,650톤중 2,644톤(99.8%)을, 오징어는 쿼터 6,000톤 중 2,515톤(41.9%)을, 꽁치는 쿼터 2,500톤 중 2,489톤(99.6%)을 소진하여 총 쿼터 38,250톤 중 34,248톤(89.5%)을 소진하였다.

2006년도 입어를 위한 제15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2005년 12월(서울) 개최하여, 명태 20,500톤, 오징어 6,000톤, 대구 2,650톤, 꽁치 2,500톤, 가오리 600톤, 청어 250톤, 복어 200톤 등 총 32,700톤의 정부쿼터를 할당 받고, 어류·기타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위생안전보장 및 불법교역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문안확정과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강구하기 위한 회의를 2006년중에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표 88〉 연도별 한려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단위: 톤,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232,903	72,322	177,155	134,055	173,635	129.5
·명 태 쿼터	203,876	63,446	167,886	128,740	165,391	128.5
- 정 부 쿼터	34,936	24,852	21,890	20,009	26,004	129.9
- 민 간 쿼터	168,940	38,594	145,996	108,731	139,387	128.2
·직 접 어 로	164,187	-	-	-	-	-
·공 동 어 로	-	-	-	-	-	-
·합 작 사 업	4,753	38,594	145,996	108,731	139,387	128.2
·기 타 사 업	29,027	8,886	9,269	5,315	8,244	155.1
- 대 구	10,389	5,332	2,499	2,648	2,644	99.8
·정 부 쿼터	2,488	2,497	2,499	2,648	2,644	99.8
·민 간 쿼터	7,901	2,835	-	-	-	-
- 청 어	-	-	-	-	-	-
·정 부 쿼터	-	-	-	-	-	-
·민 간 쿼터	-	-	-	-	-	-
- 오 징 어	1,524	2,259	2,586	2,294	2,515	109.6
·정 부 쿼터	1,524	2,259	2,586	2,294	2,515	109.6
·민 간 쿼터	-	-	-	-	-	-
- 꿩 치	14,964	1,295	4,184	-	2,489	-
·정 부 쿼터	14,964	1,295	4,184	-	2,489	-
·민 간 쿼터	-	-	-	-	-	-
- 기 타	2,132	-	-	400	496	149.0

자료: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2.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⁴⁴⁾

가. 국제 어업 변화 동향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1994년 11월) 및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의 채택(1995년 8월) 등으로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국제적 어업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관할기구 부재수역에 대하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2004년 6월 설립되었으며,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등 기존 기구에서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선박감시체제(VMS)” 및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신 국제어업질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적·안정적 조업 보장과 책임 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신설 또는 미가입된 국제수산기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채택된 국제어업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어업관련 법규 정비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가입 추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수산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해조업이 곤란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4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참여하거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방류한 연어자원에 대한 국제적 권리확보와 선진과학기술 습득을 위해 북태평양 소하성어족 보존위원회(NPAFC) 가입을 추진하여 2001년 “제9차 연례회의”에서 필요한 교섭을 마치고 2003년 5월 가입하였다.

그동안 특별한 규제가 없어 관심이 적었던 「전미열대참치위원회 (IATTC)」에도 2002년도부터 옵서버로 계속 참석하여 정확한 기구 동향 파악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기구 가입을 추진키로 하여 14개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동 기구 가입에 대한 사전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2005년 12월 정식으로 가입 완료하였으며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SPRFMO) 창설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다.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주요활동 상황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기 가입한 15개 수산기구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 추진 중이거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수산관련 국제기구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도모는 물론, 장기적인 어장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제수산기구 중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주요 기구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표 89>와 같다.

〈표 89〉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 (2005년 12월 기준)

번호	기구명	본부 (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	FAO 수산위원회	로 마 (1965. 5)	1965.12	일본, 미국 등 190개국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방안 논의
2	OECD 수산위원회	파 리 (1961. 9)	1996.12	OECD 가입 30개국	회원국 수산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3	APEC 수산실무그룹	싱가포르 (1991. 3)	1991. 3	APEC 회원국 21개국	역내 수산자원관리 기술이전 등
4	국제포경위원회(IWC)	케임브리지 (1946.12)	1978.12	일본, 미국 등 59개국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위원회(CCAMLR)	호 주 (1982.4)	1985. 4	칠레, 아르헨티나 등 24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이용
6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CBSPC)	시 애 틀 (1995.12)	1995.12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
7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캐 나 다 (1979. 1)	1993.12	캐나다, 러시아 등 13개국	북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
8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로 마 (1967. 9)	1968. 1	미국, 일본 등 33개국	중동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9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로 마 (1973.11)	1974. 1	이태리, 스페인 등 33개국	중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10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APFIC)	방 콕 (1948.11)	1950. 1	일본, 베트남 등 20개국	회원국의 합리적 수산정책 수립 지원
11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ICCAT)	스 페 인 (1969. 3)	1970. 8	스페인 등 39개국	대서양 다랑어자원 보존 및 이용
12	인도양다랑어위원회 (IOTC)	세 이 셸 (1996. 3)	1996. 3	호주, 인도 등 23개국	인도양 다랑어자원 보존이용
1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호 주 (1994. 5)	2001.10	일본, 호주 등 5개국	남방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
1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마이크로 네시아 (2004. 6)	2004.10	호주, 뉴질랜드 등 17개국	태평양 수역 고도회유성 어종 보존관리

번호	기구명	본부 (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5	북태평양소하성 어족위원회(NPAFC)	벤쿠버 (1993. 2)	2003. 5	캐나다 등 5개국	연어자원의 보존관리
16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나미비아 (2003. 4)	가입 추진	앙골라 등 3개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17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미국, 라호야 (1950.3)	"	미국, 일본 등 14개국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자원 보존관리
18	아태지역 양식기구 (NACA)	방콕 (1990. 1)	미가입	북한, 중국 등 14개국	양식기술 정보교환 등
19	태평양공동체사무국 (SPC)	뉴칼레도니아 (1947. 2)	"	프랑스 등 27개국	다랑어관련 자료수집, 과학조사
20	남인도양수산협약 (SIOFA)	미정 설립준비	"	호주, 뉴질랜드 등	남인도양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라. 책임 있는 어업의 이행 및 기타 사항

책임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각종 국제어업규범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업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지역수산기구를 비롯하여 각 연안국에서는 관할수역내 조업어선들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어선위치 확인 등 인공위성을 통한 선박감시체제(VMS)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도모하고 조업 위반여부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명확한 증빙자료 확보와 선박조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9년에 VMS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토록 원양업체를 지도하고 있다.

〈표 90〉 선박자동위치감시시스템(VMS) 설치 실적

(2005년 12월 기준)

구 분	계	북양 트롤	꽁치 붕수망	원양 선망	저연승	참치 연승	해외 트롤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척수	386	7	20	27	10	169	124	29
설치현황	232	7	20	25	9	169	2	-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특히, 지역수산기구에서는 규제조치 준수여부 감독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생물학적 정보수집을 위해 조업어선에 읍서버 승선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따라 외국인 읍서버 승선에 따른 우리 어선의 조업불편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02년에 국제읍서버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태평양도서지역사무소에서 2002년에는 국제읍서버 요원 5명에 대하여, 2003년에는 국내 자체 교육 실시를 위해 전문교관 4명, 2004년부터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국제읍서버요원 5명을 선발하여 국내훈련을 실시하고, 일부 요원들을 해외자원 시험조사에 참여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읍서버요원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급변하는 국제어업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과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전문적인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국제기구별로 지정된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사전에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회의참석시 대표단 자문 등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의 참석 후에도 결과 보고서를 통한 feedback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토록 하였다.

2005년의 경우 5명의 민간전문가가 총 7회에 걸쳐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하였고, 그 동안 취약했던 수산관련 국제협력분야의 민간 전문인 양성에도 기여하는 등 부수적 성과를 이루었다.

3. 남북수산협력 추진⁴⁵⁾

남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21 ~ 24)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5.7.9 ~ 12)에서 남북수산실무회담 개최문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열렸다.

동 회담에서 남북은 서해상 공동어로, 서해상 제3국 불법조업 통제협력,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사업 진행, 우량품종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제3국 어장 공동진출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이후 5차례의 회담을 가졌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5)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일 자	회 담	주요 회담내용 및 결과
2006.3.2 ~ 3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근본적인 재설정을 주장하여 서해공동어로 및 바다목장 사업이 논의되지 못함
2006.3.15	남북수산실무 회담 개최제의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동해공동어로를 위한 수산 실무회담 (실무접촉포함)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군사회담과 서해공동어로의 선행을 주장하며 거부
2006.4.22 ~ 24	제18차 남북 장관급 회담	서해공동어로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실천적인 대책을 취해나가는데 인식을 같이함
2006.5.16 ~ 18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군사회담과 동일하게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서해공동어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논의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회담이 결렬
2006.6.3 ~ 6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남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합의

나. 기타 추진실적

한편,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수산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남북수산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계, 업계, 법조계, 언론계, NGO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된 남북수산협력자문위원회('05.11.16)를 발족하였고, 이를 통해 남북수산협력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 직후인 2006년 3월 15일에는 제10차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을 개최하여 남북수산협력의 추진방향

에 대한 각계 전문가, 사업자,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6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수산분야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개별 사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하는 등 대북 협상력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해 평화정착 T/F’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제3국어선 불법조업과 공동어로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부처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제2절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⁴⁶⁾

1. 기존 어장의 확보

가. 참치어업

우리나라 참치어업은 1957년 지남호(230톤급)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으로 출어한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세계의 참치 주 조업국으로 성장하였다.

참치어업의 주어장은 연승어업의 경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중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키리바시, 솔로몬 등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으며, 선망어업은 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아, 마이크로네시아 수역 등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연승어업은 177척이 출어하여 50천 톤을 어획하였으며, 선망어업은 28척이 출어하여 211천 톤을 어획하였다.

나. 오징어어업

우리나라 오징어어업은 1985년 남서대서양(포클랜드)어장이 개발되면서 채낚기어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1993년 페루어장 진출, 1995년 알젠틴 관할수역내에 용선형태의 입어, 1997년 우루과이 어장 진출 등으로 해외어장을 확대하였다.

1997년도에 오징어 과잉생산으로 어가 폭락과 더불어 1998년도에 불어닥친 IMF 영향에 따른 출어척수 감소로 어획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포클랜드 어장의 어획 호조로 309천 톤의 어획량을 보임에 따라 재고누적으로 업계 자율적인 어획량 감축을 실시하여 2000년

46)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에는 178천 톤을 어획하고, 2001년도에는 이보다 15천 톤이 감소된 163천 톤을 어획하였다.

하지만 2002년도에는 엘리뇨현상으로 포클랜드 어장의 어황 저조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141천 톤을 어획한 후, 2004년도에는 극심한 어획부진에 따라 포클랜드 정부의 조업 조기종료 선언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오징어채낚기 업체의 건의로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19척을 감척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로 2005년도에는 원양오징어 어장의 어획 호전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28천 톤을 어획하였다.

다. 트롤어업

(1) 북양 트롤

북양트롤어업은 1966년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의 베링해 공동시험조업 실시를 효시로, 1967년 삼양수산(주) 등 민간업체들에 의한 상업조업 개시로 본격화되었으나 1977년 3월 “미·소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소련의 캄차카 근해 및 미국 수역에 출어 중이던 북양트롤 어선들이 전면 철수하게 되었으며, 이중 일부 미국수역에 남아 쿼터조업과 공동어로사업으로 조업하던 어선마저도 쿼터조업은 1987년에, 공동어로사업은 1991년을 끝으로 완전히 철수하였다.

1987년부터 시작된 베링공해조업도 1992년 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베링공해관련국제회의” 결과에 따라 1993년부터 2개년간 잠정적으로 조업중단이 이루어졌고, 1994년 6월 서명한 『중부베링해명태자원의보호및관리에관한협약』에 의거 명태 자원량이 167만 톤이 될 때까지 조업을 계속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호츠크공해에 대하여도 1993년 11월 15일 한·러 어업위원회 시 양국간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오호츠크공해 조업을 자체키로 함에 따라, 1993년 4월 25일 이후 실시된 조업중단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 한·러 국교 수교에 따라 민간쿼터를 이용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시작한 북양트롤어업은, 1991년 9월 『한·러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본격적으로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게 됨에 따라 매년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미·러 수역에서 철수한 북양트롤어선들은 일본 북해도 영해 외측에서 조업하여 오다가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1999년 11월 전면 철수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측은 어업자원 및 자국어업인 보호를 이유로 외국 정부용 쿼터량을 감축하고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오호츠크해에 대하여 외국어선의 조업을 전면 금지하였고, 2001년부터 민간쿼터가 국제입찰로 제도가 변경되어 자국민에게 우선 입찰을 실시하고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에게 입찰을 허용하고 있어,

2002년도 민간쿼터 명태 입찰에서 전량 러시아 자국민이 낙찰 받음으로써 우리나라는 민간쿼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우리 어선들은 안정적인 조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5년도는 정부쿼터 27천 톤의 명태쿼터를 확보하여 26천 톤을 어획하였다.

(2) 태평양 트롤

1977년 미·러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동 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선 일부가 뉴질랜드 수역으로 어장을 이동하였으며, 1978년에는 양국간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쿼터조업을 하여 왔다. 그러나 뉴질랜드정

부의 자원자국화 정책에 따라 외국에 대한 쿼터량이 계속 감소되다가 1992년부터는 정부쿼터가 종식되고 현재는 민간 개별협력에 의해 쿼터량을 확보하여 조업중에 있다.

또한 1986년부터 진출한 인도네시아수역 등은 최근 외국어선의 과당 경쟁으로 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연안국들이 자원자국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날로 어업여건이 어려워져 기존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병행하여 새로운 어장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해외트롤어업 생산량(187,929톤) 중 태평양 수역에서 가장 많은 73,467톤을 생산하였다.

(3) 대서양 트롤

1966년부터 진출한 대서양트롤어업은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1970년대에는 100여척으로 출어척수가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중서대서양의 자원감소에 따라 출어척수가 감소되자 어선들은 남서대서양을 비롯하여 NAFO수역, 인도네시아 등 신 어장으로 진출하여 다소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NAFO수역에서도 캐나다 정부가 가자미 등 경계왕래어족자원의 보호조치를 취함에 따라 1993년 4월 29일 동 수역에서 조업하던 3척이 완전 철수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서양 트롤어선은 기니수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아프리카수역과 앙골라수역 및 남서대서양 공해수역 등 어장에 출어하여 조기, 민어, 오징어 등을 주포획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나, 주 어장인 기니 꼬나끄리 수역의 경우 외국어선의 과당 경쟁으로 어장이 황폐화됨으로써 어업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8% 증가한 63,958톤을 생산하였다.

(4) 인도양 트롤

1970년대 중반에 새로운 어장확보 차원에서 진출한 인도양어장에서는 그동안 관련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교섭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업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인도양에 출어하는 우리 원양어선 세력의 증가가 둔화되어, 현재는 오만, 소말리아, 모잠비크 등에 진출하여 새우, 갑오징어, 한치 등을 주 포획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만 등 연안국 정부의 조업규제 강화와 과도한 단속으로 동 수역의 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5년도에는 전년대비 23% 감소한 14,915톤을 생산하였다.

(5) 중남미 트롤

1969년에 수리남 파라마리보를 중심으로 하여 진출한 새우트롤 어업은 가이아나, 불령가이아나, 브라질 등에 진출, 새로운 수출업종으로 각광을 받아 왔으나 1977년 가이아나의 200해리 수역 선포, 1981년 이후 프랑스령 가이아나의 쿼터 삭감 및 어획물 양륙조건부 허가와 1988년 9월 이후 브라질의 외국어선 입어규제 등으로 동 어장에서 철수 후, 현재는 수리남, 멕시코 수역에서만 극히 일부어선이 조업해 오고 있다.

2.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에 처음으로 인도양에 진출한 이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 수산물 생산량 252만 톤의 약 20%인 50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64%를 국내에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산업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주요 연안국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자원자국화정책 강화로 해외어장이 축소되고,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UNFSA) 및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등 국제수산기구에 의한 조업규제 강화로 조업여

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WTO/DDA 및 FTA협상과 관련 수산보조금의 제한 및 관세인하가 전망됨에 따라 조정관세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주요 원양업종의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원양업체의 영세성과 자본구조의 취약성, 원양어선의 노후화 가속 등으로 원양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대응하여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 31일 「원양어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2005년부터 유류비의 지속적 상승과 환율하락 등으로 인한 원양업체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자 원양어업인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2005.5.12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동 심포지움에서는 정부의 원양어업 정책에 관한 입장 등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고 전문가와 업계가 제시한 원양어업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003년 수립된 원양어업중장기발전계획을 새로이 진단하고 개선방향 등을 마련하여 2006년중에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3. 해외 신어장 개발

최근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공해조업규제 강화 등 국제적인 어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 유지를 위하여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와의 어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어구·어법의 시험과 국제관리수역에서의 우리나라 어획쿼터 확보에 노력하였다.

정부는 1999년도부터 근해어선 해외어장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

나, 해외수역에 대한 정보부족 및 어획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귀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1년도부터 정부에서 직접 해외수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에게 제공하여 해외수역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2002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2,550톤급 시험조사선 탐구1호를 인도양에 투입하여 서남부 심해어장에 서식하는 ‘오렌지 라피(Orange roughy)’ 등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에는 ‘꽁치’어장확보를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속 360톤급 실습선인 갈매기2호를 임차 투입하여 북태평양공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425톤급 갈매기호에 과학자를 승선시켜 러시아 남쿠릴북부수역 ‘꽁치’ 자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수역의 꽁치 자원분포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3년에도 갈매기호를 이용한 ‘꽁치’어장 자원조사를 북태평양동부수역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상업조업이 가능한 자원량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꽁치조업 어장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어기가 길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2,550톤급 시험조사선 탐구1호와 민간조업선 2척을 남태평양동부수역의 부어 자원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예상보다 자원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상업조업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04년도에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1호와 민간조업선 1척을 투입하여 북태평양중부수역 ‘돔’어장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북양명태트롤어장과 연계 조업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도 1척(사조산업, 503오룡호)이 진출하여 약 690톤을 어획하는 실적을 거뒀다.

2005년도에는 원양오징어채낚기(인성실업, 701인성호) 및 근해어선 6척(쌍끌이 2통, 근해오징어채낚기 2척) 등 7척을 투입하여 북태평양빨강오징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풍부한 자원량을 확인하였으며, 2006년도에 근해채낚기 5~6척이 자체적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4.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고유가 시대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05년 8월부터 연구개발(R&D)사업비 1억원을 국고지원,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어선, 연료비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원양어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 연료유인 MGO(마린가스 오일)를 중질유인 ‘마린 퓨얼30’(MF30)으로의 대체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연구사업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운항지침서에 따를 경우 운항 및 조업에 지장없이 연료비가 현행보다 30%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비 절감규모는 라스팔마스의 우리 원양어선들이 MGO가격을 톤당 \$600, MF30을 톤당 \$420에 공급받고 있으므로 톤당 \$180이 절감되어 척당 연간 2억 6,400만원의 절감효과가 거양된다.

동 절감효과는 연구수행 과정 중 이미 전문가의 지도하에 원양트롤어선 27척이 연료비절감장치를 장착 정상운항중으로, 연료비 절감효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고, 이들 어선의 연료비 절감효과만 계산해도 연간 71억 2,800만원 이상이 절감되며, 앞으로 전체 원양트롤어선이 장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 연구개발 시스템으로도 중·대형선박인 원양참치연승 192척, 근해 대형트롤 58척, 근해 쌍끌이 등 저인망 250척의 일부선박에도 연료비 절감장치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들 어선에 대하여는 보다 정밀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현재 시험중인 연료비 절감장치 2가지 모델의 장점을 살려 새로이 통합된 시스템을 2006년부터 2개년에 걸쳐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에 있다.

제 6 장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제1절 어업인력 육성⁴⁷⁾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에게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지도·교육 및 각종 수산관계 정보 보급 등을 통하여 단계적(일반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 어촌지도사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시에는 장기저리의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일반후계자의 경우 1인당 40~50백만원, 전업경영인의 경우 1인당 50~100백만원을 지원하여 1981년부터 2005년까지 16,555명에게 총 379,050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2005년도에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업인후계자 선정제도를 선정 후 지원체제로 바꾸어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선정과 동시에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47)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표 91〉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합 계		'04까지		'05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6,555	379,050	16,029	360,700	526	18,350
◦일반후계자('81부터)	14,210	255,613	13,811	243,663	399	11,950
◦전업경영인('92부터)	2,303	120,012	2,176	113,612	127	6,400
◦선도경영인('95부터)	42	3,425	42	3,425	-	-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제2절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⁴⁸⁾

어업인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정보화마인드를 갖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14,155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어업인, 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 어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어업인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어촌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모범어촌계 50개소에 “어촌정보사랑방”을 개설하였으며, 어업특성상 어업인들이 조업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어업인들이 원격으로 수산기술상담 및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영상교육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31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다.

48)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제3절 해양수산교육

1. 해양수산교육⁴⁹⁾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해양수산인력 육성」을 교육목표로 2005년도의 해양수산 교육훈련은 기본교육, 전문교육Ⅰ, 전문교육Ⅱ, 전문교육Ⅲ, 특별교육, 어업인교육, 열린교육 등 7개 분야로 편성, 총 66과정 163회 11,572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연간 계획 대비 129%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인력개발 패러다임 변화 및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4과정 10개 교과목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촌 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어업인들에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지 방문교육 및 원격영상으로 수산기술상담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틈새시간 현지방문 및 참여식 교육, 교육시설 개방 등을 통하여 열린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해양수산업 발전의 선도적인 인력 개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 해기사 양성 및 어업기술 훈련⁵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어선에 승선할 해기사 5,623명을 양성하였고, 승무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인의 경우도 74,618명을 “신규교육 및 기초안전과정”을 통해 선원으로 양성·배출하였다.

49) 해양수산인력개발원

50)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또한 해기사 면허취득교육과 기타 연수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총 46,860명의 교육생을 배출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어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였다. 특히 기초안전교육, 연안선직무교육, 면허취득교육은 현지 순회교육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교육생의 시간과 경비 절감은 물론 어선의 적기 출어가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 대외기술협력사업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어업분야 연수생을 1968년부터 매년 초청하여 2005년까지 총 89개국 631명을 연수시킴으로써, 국위 선양은 물론 원양어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표 92〉 연도별 어선원 교육실적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66~'99	'00	'01	'02	'03	'04	'05
합 계	131,479	99,734	8,066	5,920	5,462	3,954	4,314	4,028
해기사양성교육	5,623	4,892	167	125	112	87	80	160
일반선원양성교육	27,621	27,621	-	-	-	-	-	-
기초안전교육(신규자)	45,522	40,344	1,764	1,132	750	606	458	438
기초안전교육(재교육)	13,269	3,342	1,449	1,690	2,569	1,340	1,404	1,475
연안선직무교육	3,369	2,666	148	129	81	89	139	116
원양선직무교육	3,742	2,367	397	319	170	185	125	179
외국인研修교육	656	558	8	19	27	-	25	19
기타교육	31,677	17,944	4,133	2,506	1,753	1,647	2,053	1,641

자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교육부

주 : 기초안전교육의 경우, 1998년부터 재교육과정을 신설하였음

제4절 해양환경 연구⁵¹⁾

1. 해양변동 연구

가. 해양조사 및 예측

미국의 NOAA 열감지 위성으로부터 매일 4~6회 위성수온자료를 수신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양자료속보 (172회 발간)”로 FAX 전송 (6천여회)하여 활용케 하였다. 또한, SeaWiFS 위성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연근해역의 기초먹이생물 분포를 정량화하였으며, MODIS 위성으로부터 해수색(ocean color)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동중국해, 동해, 서해, 남해의 190여개 정점에서 분기별 및 격월로 실시한 정선해양관측 자료와 연안 35여개 관측점에서 측정한 연안수온, 기상자료와 위성이 관측한 광역 수온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주간 및 월간 해황변동을 64회 예측하여 “주간 해황예보”, “월간 해황정보”로 배포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나. 해양자료 관리 및 서비스

한국해양자료센터 (KODC)는 국제기구인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IOC)가 공인한 국가해양자료센터 (NODC)와 정부 지정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해양과학 정보관리 체제 구축과 해양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1999년부터 해양과학정보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 7차년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국가해양조사계획 (NOP), 해양조사요약보고 (CSR/ ROSCOP), 해양조사자료 (TESAC)를 수집하

51) 국립수산과학원

여 국제해양자료정보교환시스템 (IODE)을 통해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2. 해양환경 오염 연구

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운영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은 총 107개 해역 346개 정점으로 표·저층의 해수, 해양생물 및 해저퇴적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수는 일반항목 11개에 대해 4회 조사, 미량금속 8개 항목에 대해 2회 조사하였으며,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은 1개 항목을 1회 조사하였다.

해양생물은 클로로필-a, 총대장균군, 동·식물 플랑크톤을 4회 (2, 5, 8, 11월) 조사, 지표생물에 대한 미량금속 7개 항목과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4개 항목에 대해 1회 조사하였다.

해저퇴적물의 경우 일반항목 4개, 미량금속 7개 항목과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3개 항목에 대해 1회 조사하였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일반 수질지표 성분을 연 4회 조사하였고, 내수면의 경우 퇴적물 4개 항목을 1회 조사하였다. 어류상조사는 특정 내수면에 대해 2회 조사하였다.

나. 연안어장 적정환경관리 연구

(1) 연안어장 환경용량 산정연구

진해만의 목표수질을 COD 기준 해역 II 등급으로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환경용량을 산정했다. 생태계 모델 예측결과 마산만 주

변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천은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로부터 유입되는 10여개 하천과 덕동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였다. 이런 영양염류가 동 수역의 COD, 클로로필 a농도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2) 갯벌어장 생물서식환경 연구

충남 비인만 갯벌의 수질환경은 혼합작용이 활발하나 부영양도가 높았다. 퇴적물은 모래가 우세하고, 오염도가 낮으며, 퇴적우세환경을 나타내었다.

저서생물은 조위와 퇴적상에 따라 서식대가 뚜렷했으며, 만형 갯벌인 충남 남해포에 비해 서식밀도가 17배 높았다. 새만금 외측 부안 갯벌에서는 대형저서다모류의 밀도는 감소하는 반면 중형저서다모류의 밀도는 증가하였다. 전남 하의도 갯벌의 칠게 자원량은 137톤으로 추정되었다.

전국 66개 단위갯벌을 수질과 퇴적물의 오염도로 등급화한 결과, 1등급 34개소, 2등급 24개소, 3등급 4개소, 4등급 2개소, 5등급 2개소로 분류하였다. 저서동물 채집의 표준화를 위해 모래 갯벌에서 Can Corer를 이용하여 8회 이상 채집했을 때에 총 종수의 80% 이상 채집할 수 있었다.

3. 적조대책 연구

가. 적조예찰 및 예보연구

적조감시체제의 일환으로 77개 정점에 대해 2월부터 11월까지 적조예찰을 실시하였고, 적조 발생의 조기 예측을 위해 동중국해와 남해연안에서 광역조사를 실시하여 코클로디니움 유영세포 출현을 확인하였다.

적조상황실 운영을 통해 수산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에 적조주의보와 적조경보를 발령하여, 홈페이지, ARS, SMS, FAX, 실시간 위성TV 데이터 방송 등으로 신속한 적조정보전달을 하였다.

나. 적조생물의 생리·생태 특성 연구

기억상실성 패독을 일으키는 *Pseudo-nitzschia spp.*는 울진연안을 제외한 동·서·남해 일대 대부분의 정점에서 매월 출현하였고 진해만 일대에서 7월과 9월에 식물플랑크톤 개체수중 96% 이상으로 우점하는 등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다. 2005년 8월 전남 장흥군 연안에서 유해적조생물인 *Chattonella antiqua* 적조 (최대 350 cells/ml)가 발생하였다.

적조생물 종 보존 연구를 실시하여 순수 분리하여 배양주를 확보한 식물플랑크톤은 총 11속 15종 18분리주로 *Cochlodinium* 2분리주, *Chattonella* 1분리주 *Alexandrium* 3분리주, *Gymnodinium* 2분리주, *Heterosigma* 1분리주, *Prorocentrum* 4분리주 등을 확보하였다.

다. 적조피해 경감대책 연구

생물학적 적조구제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여 *Co. polykrikoides*과 *Ch. antiqua*에 강한 제어능력을 가진 균주를 분리하였으며 성장단계별로 다른 제어능력을 보였다. 최고 95%이상의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황토살포에 따른 영향 평가결과 퇴적된 황토량과 저서생물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남해도, 통영, 거제도 일대에서 조사한 결과, 해역에 따른 저서생물상의 다양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황토살포에 의한 영향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해파리 대량발생 연구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발생, 이동 및 확산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에 걸쳐 총 34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를 기반으로 실험실에서 발달 단계별로 배양을 하며 각 단계 별로 수온, 염분 및 먹이 등과 환경 조건별 실험을 실시 중이다.

또한, 트롤 조업시 노무라입깃해파리를 다른 어획물과 분리하기 위한 분리 배출 및 절단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노무라입깃해파리에서 추출된 물질을 이용하여 생리활성도를 검색한 결과, 황산화에서 활성을 보였다.

제5절 어업자원 조사연구⁵²⁾

1.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연구

연근해 부어 및 저어류에 관한 어획량 변동조사는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의 근해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조사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참다랑어, 갈치, 참조기, 말쥐치, 붕장어 등 9개 주요 어종에 대하여 어체측정과 체장조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생산력의 변동과 연급군 분석을 통하여 자원수준을 평가하였다.

2006년도 TAC 대상 자원인 고등어, 붉은대게 등 9종 및 신규대상 자원인 오징어와 추가 예비대상종인 갈치, 멸치 2종 등 총 12종에 대한 자원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자료로 제공하였다.

2. 원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원양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국제적 어업 관리의 기초를 위해 원양 주요 어업 (트롤 등 6개 어업) 및 주요 어종 (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생물특성 및 자원평가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어업별 해역별 어종별 자원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18개의 국제기구 회의에 국별 자료로 제공하여 원양어장의 지속적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52) 국립수산과학원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양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국제옵서버 14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옵서버는 2005년도에 한국원양 다랑어연승 4회, 선망어선 3회, 오징어쌍끌이 1회 및 오징어채낚기 1회 승선하여 어획량 통계, 부수어획종 혼획상태, 어업대상종의 분포 밀도 및 자원상태 등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제6절 수산공학기술 개발⁵³⁾

1.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된 망지의 해수 중 분해도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생분해성 복합섬유의 경우 8개월부터 분해가 시작되어 15개월 경과하면 표면이 상당히 분해되는 확인할 수 있으며, 생분해성 단일섬유의 경우는 20개월 정도에서 분해가 시작되었다. 생분해성 자망 및 통발어구의 어획성능은 통계적 검증결과 기존의 합성섬유 어구와 어획성능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붕장어 등 특수한 체형의 물고기를 잡기위한 통발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기타 어종의 혼획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발내로 들어가는 입구둘레가 작은 통발을 고안하여, 수조에서 통발의 입구둘레 크기별 어획실험을 실시한 결과, 입구둘레를 줄인 새로운 통발은 붕장어만 선택적으로 어획이 가능하고, 기타어종의 혼획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서해안 꽃게 삼중자망과 홑자망의 어획성능 비교연구에서는 홑자망이 삼중자망보다 마리수 대비 높게 나타났고 혼획저감형 자망에 의한 폭당 꽃게 어획량은 641.9g으로 삼중자망 (내망 152mm)에 비해 12% 감소하였으나, 혼획률은 51.9% 적게 나타났으며, 홑자망과 삼중자망의 망목선택성 곡선을 밝혔다.

53) 국립수산과학원

3.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실제 해상에서 가두리 시스템의 안정성 분석 및 가두리 설계안 보완을 위해 강재구조로 된 축소모형 외해가두리를 제작하여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리 지선 약 1마일 해상에 설치하였다.

가두리의 운영시스템은 침하부상 방식으로서 규격 5×5×5m의 생물사육용 가두리 취부가 가능하도록 설계, 현장 시설하여 파랑중 구조물의 운동특성에 대한 관찰을 실시한 결과, 파고 4~5m 정도의 거친 해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중 6m에 침하시킨 시험용 가두리에서는 파랑에 의한 운동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되어, 한국형 외해가두리 설계안은 생물사육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어항리모델링 설계기술 개발 연구를 위하여 통영 삼덕항, 울산 제전항, 경주 대본항을 대상으로 하여 어항의 해역환경 특성조사를 수행한 결과, 삼덕항의 경우 소파안벽으로 인한 선박의 동요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나, 선박의 크기 및 선속에 따라 발생하는 항주파의 상호교란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파구조물의 공극률에 따른 소파효율 분석을 위한 수치모델을 구축하였고, 수조를 이용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부소파제의 수리학적 특성 및 동적 거동을 분석한 결과, 폰툰형 보다는 연직판형 부소파제가 파랑을 제어하는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각 해역의 어초어장 현황 조사를 통하여 연안 해역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어초가 시설된 해역에 모여드는 어류, 어획량 등 생물적 특성과 시설어초의 내구성과 관련된 공학적 특성 등을 분석, 그

결과를 어초시설 기준 및 시공 방법에 적용함으로써 연안 어초어장의 생산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남해동부 시설어초에 대한 효과조사

다기능성 어초 구조개발 시험 결과 시험용으로 시설된 어초에 부착 서식하는 전복의 각장성장량이 '04년 7월 3.0cm ~ '05년 3월 6.5cm로 양호하였다. 낚시터용 어초 개발시험 결과 기초부는 평탄지반 적용 용이한 면구조로 설계하여 안정성 확보 및 내침하성 어초 구현하였고, 중간층은 부재를 면구조로 하여 어류 거주공간 극대화 하였다. 상층부는 음영을 주는 탁자(차광판) 배치로 어류위집을 극대화 하였다.

나. 동·서·남해 시설된 인공어초에 대한 연구

어초종류별 시험 효과분석 조사 결과 어초종류별 어획 마리수 및 중량은 어류형어초인 사각어초와 고선어초에서 효과 높았으며, 어초별 부착해조상은 아치형, 신요철형 순이고, 수심 20m 이내 시설된 어초인 아치형, 신요철형은 다시마, 미역이 우점하였고, 20m 이상의 수심에 시설된 고선, 사각어초는 홍조류가 우점하였다.

시설어초에 대한 효과조사 결과 사각형, 신요철형, 대조구에 대하여 삼중자망에 의한 폭당어획효과는 대조구에 비해 사각형 325.0%, 신요철형 187.2% 로 효과가 있었다. 어초종류별 매몰 특성은 사각형어초 40 ~ 60cm, 신요철형 30 ~ 40cm로 소량 침하 상태를 보였다.

제7절 양식기술 개발 연구⁵⁴⁾

1.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양식산업 표준화 연구를 통해 넙치의 양식 경제성 분석 보고서와 양식표준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외래종의 국내 이식 시 자연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여, 국내 이식품종과 향후 이식 예상 품종인 터봇, 부세, 줄농어, 홍민어 점농어, 무지개가리비, 흑점줄전갱이, 향어, 잉어, 대서양 연어 및 흰다리새우 등을 대상으로 외래 양식생물의 이식과 생태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조피볼락 번식 메커니즘 구명의 일환으로 *Baculovirus*-누에 시스템을 이용한 여포자극호르몬(FSH) 생산과 호르몬 처리로 양식산 뱀장어를 최종성숙까지 유도하여 부화자어를 18일까지 사육하였다.

그리고 2개 기관 293 tube 시료에 대한 호르몬 분석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강도다리 정자를 자체 개발된 인공정장액으로 30일간 냉동보존 기술을 확립하였다.

한국형 외해가두리 개발을 위해 실용화된 미국 NOAA의 Sea Station (Net System사)의 외해가두리 25×15(3,000m³) 3조를 도입하여 남제주 표선해역에 시험어업 승인취득과 함께 설치하고 돌돔 입식 사육실험 중이며, 한국형 외해가두리의 개발을 위해 외해 가두리 축소모형 시작품을 제작 설치하여 최적 설계안을 확정하였다.

54) 국립수산과학원

2.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동해안에서는 참가리비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인공채묘 적정 생산량과 채묘기 재질, 초기 성육어장의 특성, 산지별 종패의 비교 양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참가리비 어장정보 관리시스템 통합체제를 구축하였고, 어장환경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폰 단문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동해안 해역특성에 적합한 양식방법 개발을 위해 전복/해삼 복합양성기와 가리비/전복 겸용 수하식 양성방법, 가리비/전복/해삼을 각기 수용하는 복합양성기를 개발하였다.

서해안에서는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황복양식 연구에서 당년 상품화를 위한 적정 입식 체중(140g 전후), 생산량 ($1\text{kg}/\text{m}^2$), 백점층 발생시 저염분(8%) 처리효과 등을 구명하였고, 비닐하우스에 의한 기초 월동시험도 성공하였으며, 황복양식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꽃게 축제식 양식시험에서는 당년 조기산 종묘를 전용 배합사료로 사육하여 당년 상품생산에 성공하였다. 또한 비단가리비의 양식적지로 3개 해역 (진도, 완도, 화성)과 자연 채묘장으로 백령도를 개발하였다.

남해안 특산어종 황점볼락의 대량 종묘생산 기술개발에서는 치어의 적정 사육밀도 (75마리/200L)와 적정수온 (16°C)을 구명하였고, 고등어의 주 산란기 (4~6월)와 해상가두리에서 MP 사료 사육시험 (10개월)에서 95.1% 생존율, 3.15의 사료계수 결과를 구명하였다.

3.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새로운 양식품종인 강도다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성호르몬 LHRHa를 $100\mu\text{g}/\text{kg} + 17\alpha 20\beta\text{diOHP } 100\mu\text{g}/\text{kg}$ 을 이용 수정률 75.2%의 4,500천개의 부상란을 인공채란하였고, 자연산란 유도도 수정률 87.6%

의 5,000천여개의 부상란을 채란하였다. 자어 사육시험에서 5,000마리/m² 수용구의 성장과 생존율이 가장 양호하였고

생산된 강도다리 수정란 500천개와 전장 17.5~32.9mm의 치어 50천마리는 분양하였다. 대구는 인공채란 시 부화율이 60%로 조사되었고, 수정란의 수송은 수정 후 최소 3일 (배체 형성)째가 가장 양호하였으며, 적정 수온 12℃에서 40일째까지 사육하였다.

키조개 인공종묘 생산시험에서 총 11회에 24억개를 채란하였고, 수정률은 62%였다. 난발생 적정수온은 20~30℃, 적정염분은 30~35psu로 조사되었고, 수정 후 17일까지 사육하였다.

피조개 양식산업의 안정화 기술개발에서 봄철 모패를 20℃와 23℃에서 가온 사육시, 각각 52일과 48일째에 68.5%까지 성숙하여 인공채란하여 부착치패를 보호망 종류별(통발형, 원통형, 직사각형, 노출형)로 중간양성한 결과, 성장률의 차이는 없었으나 생존율은 통발형 (43.7%)이 가장 높았다.

새우양식 생산성 회복을 위해 고흥 나로도산 바이러스 비감염 모하로부터 미감염 F₁ 대하 120천마리 (PL 6기, 생존율 19.2%)를 생산하였다.

꽃게 조기종묘 생산시험에서 3~4월 채집된 자연산과 양식산 어미를 15일간 26℃에서 사육하여 89%의 외포란율을 얻었고, 2~3기 어린게를 170천마리 생산하여 방류 및 시험연구용으로 분양하였다.

해조류 양식 생산성 향상 연구에서, 잇바디돌김과 모무늬돌김 11계통주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66계통주를 보존 중에 있다. 모자반의 양성수심별 최대 성장도달 시기를 구명하였고, 수심관리로 수확시기 조절도 가능하여 일시 대량출하에 의한 가격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양식용 배합사료 연구에서 개발된 넙치 성어용 배합사료는 증체율,

사료효율, 사료계수, 일간성장률, 단백질 전환효율, 생존율 등에서 영양학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부가가치와 활용도 높이기 위한 관상어류 양식 기술 개발연구에서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쏘배감펍, 쏘종개, 샛별돔 등 13종과 외국산 파랑돔, 샛별돔 등 4종을 확보하여 어미로 사육 중에 있으며, 국내산 해마는 인공번식에 성공하였다.

4.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양식생물 질병역학 조사를 전국의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무지개송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천연생약재를 이용한 실용적 면역증강제 개발 실험에서, 혼합 생약제는 저수온기 넙치의 라이소자임 활성 및 고수온기 넙치의 식세포 활성 등 비특이적인 면역기능을 증가시키며 넙치의 저수온기 *Edwardsiella tarda*와 고수온기 *Streptococcus iniae*에 대한 내병효과를 보였다.

고효능 백신 개발연구에서는 개발된 연쇄+ 에드워드균 혼합백신의 연쇄구균(*S. iniae*)과 에드워드균(*E. tarda*)에 대한 항병력을 확인하였다. 어류의 연쇄구균증 예방백신, 제조방법 및 투여방법에 대해 특허등록(특허번호: 제0505727호)하였고, 돌돔이리도바이러스 재조합 백신으로 PCT 국제특허 심사진행(2006년 각 국별 특허출원 예정) 중이다.

어류이동병원 운영으로 6차 269개 양식장 910건에 대해 어병진단 및 처방을 실시하여 직접적인 대어민 진료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류 방역센터 홈페이지와 양식생물질병 57종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한 결과, 총 방문자수는 177,477명, 회원가입자수는 172명, 웹 진단 서비스의 요청 8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5.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수산생물의 품종개량에 관한 연구는 부가가치가 큰 넙치와 전복을 중심으로 굴, 대하, 조피볼락, 멧게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양식생물의 유용 유전정보 획득 및 DB를 위하여 굴과 멧게의 주요 조직으로부터 cDNA library 제작하고 EST를 각각 845개와 549개를 분석하였고, 넙치의 면역관련 subtracted cDNA library 및 3.2K DNA chip을 제작 분석하였다. 또한 전복 유래 저염분 관련 유용유전자를 확보하고 전복의 2K DNA chip을 제작 분석하였다.

넙치의 육종연구를 위하여 4.4 cM의 넙치의 연관 유전자지도를 작성하였고, QTL 분석을 위하여 역교배에 의한 기준가계 생산 및 유전자 분석에 의해 열성치사 유전자좌 mapping을 실시하였다.

수산물의 산업과학화 연구에서, 83종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생리활성물질을 추출하여 암세포 독성, 혈압강하활성, 항산화활성, 항균활성을 탐색하여 총 498종의 DB화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해조류로부터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및 불가사리의 산업적 이용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6.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내수면 어류자원 증강 및 양식어가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잉어류, 붕어, 산천어 등 담수어종 치어 150만여 마리를 생산하여 5만여 마리를 교육 및 홍보용으로 무상 분양하였으며, 내수면 자원증강용으로 잉어 등 5종의 종묘 140만여 마리를 대단위 수면, 13개 저수지 및 강에 방류하였다.

냉수성 어종으로는 산천어 3만마리를 수해로 생태계가 파괴된 하천에 방류하였으며, 시험용으로 1만 마리를 분양하였다. 회유성 어종인 연어는 10만 마리를 생산하여 8개 하천에 표지방류하였다.

제8절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⁵⁵⁾

1.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수산물에 대한 국민보건위생 안전확보 및 미국·EU·일본 등과 체결한 『수출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위생협정』 이행을 위하여, 지정해역 7개소 (조사면적 61,800 ha, 지정면적 34,385 ha)에 대한 조사결과, 지정해역 내 해수와 패류는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였고, 주변 오염원도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 확대와 수출품종 다양화를 위하여 2002년 충남 태안군의 바지락 생산해역(5,500 ha), 2003년 경남 통영시 용남·광도의 굴 생산해역(5,000 ha), 2004년 충남 서천군 비인만 해역에 대한 지정해역 타당성 확인을 위한 위생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한편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근거하여 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 미국 FDA등록패류가공공장, 패류위생관리업무수행 실험실, 패류위생관리행정 등 “한국패류위생관리운용실태”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2.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가. 생물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남해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장염비브리오균 (*Vibrio parahaemolyticus*), 패혈증비브리오균 (*V. vulnificus*) 및 콜레라균(*V. cholerae*)등 해양상재 병원세균과 설사성바이러스 (*Norovirus*), 이질균(*Shigella* spp.)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전기분해 해수를 이용하여 분변계 대장균에 오염

55) 국립수산물과학원

된 패류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나. 이·화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의 양식 굴에 대한 테트라싸이클린계열 항생제 모니터링 결과,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검출되었으나 굴 수확기(10월~익년 4월)에는 비수확기에 비하여 검출농도 및 검출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항생제 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중의 β -lactam계열(ampicillin, amoxicillin) 항생제 동시 분석법을 확립하였으며, 넙치에 대한 엔로플록사신 및 시프로플록사신의 적정 휴약기간은 수온에 관계없이 각각 60일과 10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독물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전국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는 1월부터 검출되어, 진해만에서 울산 연안의 남해동부, 충남 태안, 경북 영해 및 경주 등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5월 초순~중순에 걸쳐 최대로 확대되었다.

설사성 패류독소는 5월에 굴에서 1회 및 7~8월에 진주담치에서 3회 검출되었고,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는 1월과 2월에 일부지역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복어류의 독성은 품종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근육의 경우 대부분 식용하여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흰점복은 일부 근육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산 고등류의 독소(테트라민) 모니터링 결과, 식중독을 발생시킬수 있는 teramine 함량을 가진 유독종은 갈색띠매물고둥, 관절매물고둥, 명주매물고둥, 북방명주매물고둥, 조각매물고둥, 둥근명주매물고둥 등으로 확인되었다.

제9절 수산기술 지도·보급⁵⁶⁾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가. 수산기술 개발 보급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된 252명의 어촌지도·수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국 1,75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 중점 보급을 통해 활력 있는 어촌개발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였다.

먼저, 부산지역 진주조개양식시험 등 총 21개 과제를 연구·교습어장으로 운영하면서 해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함께 지역어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해양수산사무소별 “지역 으뜸품종(상품)”을 개발·육성함으로써 고소득품종 보급 확대 및 지역특산품 발굴에 기여하였다.

또한 굴·피조개·가리비·새고막 유생조사(108개 지점)를 통한 채묘 적기예보를 통하여 어촌지역에서 「최신수산기술개발보급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해역별 주요 양식단지에 대하여는 어장환경과 품종별 작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과학적인 어장관리를 도모하였고, 4~11월 사이 적조 발생 우려해역 132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순회예찰을 실시하는 등 적조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기여 하였다.

또한 전국에 29개의 「어병예찰진단반」을 연중 설치·운영하여 증상별 원인·치료대책을 강구하였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지도를 통해 어병 확산방지와 어병에 대한 각종 기술상담·정보제공 등 지도기관으로서 대어업인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56)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나. 어업인 교육 및 홍보

해역별 주요 어업시기에 어업인 8천여명 대상으로 수산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양식품종의 신기술보급과 수산자원회복관리, 수산물안전성 확보, 해양수산시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홍보하였으며, 새로운 양식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꽃게양식” 수산기술지 2,000부를 발간·배포 하였다.

2. 선진어업경영기반 구축

어업인들에게 기존의 관행적인 어업경영방식을 탈피하여 시장경쟁체제에 알맞은 과학적인 경영기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양식종인 넙치·조피볼락·굴·김·미역·대하·우렁쉥이, 전복, 가리비 등 9종의 양식어가 27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2004년도 양식품종별·지역별 소득에 관한 자료집 200부를 발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과학원 및 시·도 등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어업경영 진단·설계 및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3. 수산기술보급 관리기반 조성

수산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목포청 진도해양수산사무소 청사 신축과 여수청 기술지도선 신조(FRP 25톤급)로 수산기술보급활동의 기동력을 향상시켰으며, 어류질병·적조예찰·수질분석 등에 필요한 과학적 장비도 60여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어업경험이 풍부하고 동시에 덕망과 지도력을 겸비한 지역사회의 지도급 인사 200명을 명예어촌지도자 또는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산기술보급사업에 자진 참여토록 함으로써 민·관 유대강화와 대 어업인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제10절 수산특정연구개발⁵⁷⁾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거 농어촌개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동 사업은 “수산기술개발사업(현장으로, 첨단기술)”과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공립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5년도 수산기술개발사업은 “도서지역 고밀도 양식증대를 위한 컨테이너형 용존산소 관리시스템 개발” 등 총 73개 과제(신규사업 25과제, 계속사업 48과제)를 선정하여 5,155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는 “수산물 채취 잠수부의 잠수관련 질환의 현황 조사 및 대책수립” 등 총 14개 과제(신규사업 14과제)에 750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2005년도 말까지 총 463개 과제에 대하여 67,172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는데, 이 가운데 372개 과제가 연구 완료되었고, 나머지 91개 과제는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수산특정연구사업으로 연구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는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토록 하고, 특허출원 및 수산정책사업에 반영하여 어업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직접 활용토록 하는 한편,

수산업종사자 교육 등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과제는 현재 연구기관 및 업계에서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57)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표 93〉 수산특정연구개발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00	'01	'02	'03	'04	'05	'05/'04
합 계	과제수	89	90	92	77	83	87	105
	금 액	5,562	5,631	6,136	5,348	6,100	5,905	97
수산기술 개발	과제수	75	76	77	63	69	73	106
	금 액	4,762	4,888	5,351	4,634	5,350	5,155	96
수산정책 연구	과제수	14	15	14	14	14	14	100
	금 액	800	743	785	714	750	750	10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표 94〉 수산특정연구개발 주요성과

○ 산업재산권

(단위:건)

구 분		합 계	현장애로	첨단기술	수산정책
국제특허	출 원	14	2	12	0
	등 록	10	0	10	0
국내특허	출 원	174	91	71	12
	등 록	112	46	57	9
실용신안	출 원	23	17	5	1
	등 록	21	15	5	1
저작권	출 원	9	8	0	1
	등 록	9	8	0	1
상표	출 원	3	1	0	2
	등 록	3	1	0	2
의장	출 원	3	3	0	0
	등 록	3	3	0	0
S/W		2	0	2	0

○ 국내외 논문 및 학술회의 발표 실적(국제 505건, 국내 2,235건)

(단위 : 건)

구분	합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국제	SCI	105	-	-	-	2	8	10	18	10	14	14	21	8
	일반	57	-	-	1	6	4	2	6	9	7	1	5	16
	학술회의	343	-	2	10	18	16	26	25	34	55	50	77	30
국내	SCI	14	-	-	-	-	-	1	2	-	-	2	3	6
	일반	813	-	1	26	69	110	125	95	86	88	84	51	78
	학술회의	1,408	3	10	53	91	133	167	148	185	172	184	128	134

*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기술논문(미국) 색인검색

○ 경제적 성과

구분	합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기술이전(건)	36	-	-	-	5	8	7	6	4	3	1	2
매출액(억원)	2,663	10	20	40	26	57	181	291	333	1,001	508	139
수출액(억원)	165	-	-	-	-	-	6	27	29	63	40	-
고용창출(명)	1,870	-	4	2	1	10	12	41	37	799	485	479

○ 어업인 등 지도교육 활용 및 정책활용 실적

(단위 : 건)

구분	합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지도교육	475	-	2	6	29	43	68	62	44	61	57	61	42
정책활용	109	3	1	2	2	3	9	16	11	24	15	21	2

제 7 장 어업인 지원 강화

제1절 수산자금 공급 확대⁵⁸⁾

1. 영어자금

2005년도 영어자금의 총 공급규모는 2004년과 같은 1조 4,050억 원으로서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3,400억 원을, 원양어업 분야에는 650억 원을 공급하였다. 2005년말 현재 1조 3,303억 원이 대출되어 어업인들이 사용 중에 있으며 이를 어업분야별로 보면 연근해 1조 2,668억원, 원양 635억원 등이다.

자금 조달능력이 미약한 영세 소규모의 구획·마을·협동양식, 신고(투망, 나잠)어업과 맨손어업 및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업인 후계자와 영어조합법인(선정 또는 설립 후 3년 동안, 어업활동 경비에 국한) 및 자율관리시범실시어업 참여 어업인은 소요액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연근해어업은 가구(업체)당 소요액의 50~80%를 지원하되 용자비율 적용 방법의 개선으로 소요액 규모에 따라 2004년 보다 20백만 원 내지 170백만 원이 많은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원양어업은 업체당 소요액 규모에 따라 10~50%로 차등 지원하였다.

또한, 영어자금이 타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당 5천만원 이상 사용자(원양어업자 제외)에 대해서는 어업경영 실태를 대출기간(1년)내 2회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58)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한편, 영어자금의 지원금리는 연리 3%(2004. 3. 1부터)로 동일인당 용자한도를 2005년부터 연근해어업의 경우 지난해 보다 2억 원이 많은 12억 원으로 높이는 등 연근해어업에 대한 용자한도를 늘렸으나, 원양어업 경영자금이 별도 지원되는 원양어업은 지난해와 같은 50억 원으로 운용하였다.

〈표 95〉 영어자금 공급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02	'03	'04	'05	'05/'04
소 요 액		34,394	35,773	36,928	38,920	105.4
공 급 액		14,050	14,050	14,050	14,050	100.0
(공 급 율)		(41%)	(39%)	(38%)	(36%)	-
조 달	재 정 자 금	5,814	5,814	5,636	5,636	96.9
	수협신용자금	3,844	3,844	3,933	3,933	102.3
	수협상호자금	4,392	4,392	4,481	4,481	102.0
운 용	연 근 해 어 업	12,900	12,900	12,900	13,400	103.9
	원 양 어 업	1,150	1,150	1,150	650	56.5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사업 운용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2005년도 용자금은 전년 대비 288억원이 감소한 22억원으로서, 친환경 연안어선대체사업을 제외한 모든 수산부문 용자사업은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지원하게 되었다.

〈표 9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사업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04	'05	용자조건 (연리, 거치/상환)
합 계	30,982	2,159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28,393	2,159	
○ 어선 건조 및 설비 현대화	2,816	2,159	4.0%, 1~3/4~10년
○ 수산물 직매장	360	-	4.0%, 3년/7년
○ 수산물 위판장	473	-	4~5%, 3년/7년
○ 수산물 종합가공단지 조성	22,344	-	4.0%, 5년/10년
○ 수협사료시설 지원	2,400	-	5.0%, 3년/7년
<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 >	2,589	-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2,589	-	4.0%, 5년/10년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3. 수협 자체자금

수협은 2005년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내 최고 신용평가 등급을 획득한 것을 바탕으로 대고객신뢰를 제고하고 영업마케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체자금 등 총 13조 5,660억원을 조달하여 영어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였는데, 이는 지난 해 보다 2조 7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수산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비교적 저비용으로 1조 152억원을 증액 조달하였고, 예수금 7,040억원 및 기타 2,938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표 97〉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

구 분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국내 신용평가기관	
	Moody's	S&P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신용평가등급	A3(S)	A-(S)	AAA(S)	AAA(S)

〈표 98〉 수협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증감률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조 달	○ 자 체 자 금	85,404	73.9	102,681	75.7	20.2
	- 예 수 금	74,961	64.8	82,001	60.4	9.4
	- 특별회계자금	5,978	5.2	6,063	4.5	1.4
	- 수산금융채권	4,465	3.9	14,617	10.8	227.4
	○ 차 입 금	15,241	13.2	15,105	11.1	△0.9
	- 한 은	342	0.3	697	0.5	103.8
	- 재 정 자 금	7,709	6.7	7,116	5.2	△7.7
	- 제 기 금	7,190	6.2	7,292	5.4	1.4
○ 기 타	14,936	12.9	17,874	13.2	19.7	
합 계		115,581	100.0	135,660	100.0	17.4
운 용	○ 대 출 금	70,103	60.7	88,275	65.1	25.9
	- 금 용	56,232	48.7	74,510	54.9	32.5
	- 재 정	13,871	12.0	13,765	10.1	△0.8
	○ 타 사업자금	1,976	1.7	782	0.6	△60.4
	○ 기 타	43,502	37.6	46,603	34.3	7.1

자료 : 수협중앙회 금융기획부 (주 : 상호금융, 신탁, 공제적립금 제외)

제2절 어업인 부담 경감⁵⁹⁾

1.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2001년 1월 8일 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4년 3월 5일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추진된 “2004년도 어가부채 경감대책”은 2004년 12월 20일까지 「중장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추가 지원」 및 「연대보증 피해지원자금 상환연기」를 위한 상환연기 신청을 받아 당초 대출실행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어가부채대책을 직접 추진하는 수협은 한정된 인원으로 기존 업무에 더불어 추진함으로써 대출실행이 지연됨에 따라 네 차례나 연장하여 2005년 10월 31일 최종 마감한 결과, 2003년 말 현재 대출되어 사용 중인 대출기간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정책자금 10,896건에 2,415억원을 이미 사용한 기간과 관계없이 새로이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토록 연기 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어업용으로 대출받아 2003년 말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상호일반자금 대출금을 연리 5%로 5년 후 일시 상환토록 저리로 대체한 자금은 12,093건에 2,156억원이며, 2001년 어가부채대책으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토록 지원된 연대보증피해지원자금은 427건에 71억원이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토록 연장하였다.

그 동안 어가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된 자금의 2005년 말 현재의 대출 잔액을 보면 2000년 대책에 의한 수산업경영개선자금 997억 원(당초 2,000억 원), 2001년 대책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204억 원(당초 834억

59)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원),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3,047억 원(당초 3,659억 원), 수산업경영개선자금 596억 원(당초 882억 원), 연대보증피해지원자금 138억 원(당초 253억 원)이 있다.

또한, 2004년 대책으로 지원한 각종 부채대책자금의 2005년 말 현재 대출 잔액을 보면 중장기 정책자금 2,389억 원, 연대보증피해지원자금 68억 원, 상호금융저리대체 추가 지원자금 1,938억 원이며, 별도의 수산업경영회생자금 261억 원이 있다.

2. 각종 이차보전

각종 수산정책자금은 수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이들 자금의 공급재원은 재정자금 및 수협자금으로서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대출금리가 재원의 조달금리 보다 낮아 그대로 두면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은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이차보전으로 궁극적으로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가. 영어자금 이차보전

영어자금은 어업인이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어업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산정책자금이다.

정부는 이러한 영어자금의 금리를 그 동안 여러 차례 인하하여 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왔으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근해와 원양 구분 없이 일괄 연리

3.0%로 2004년 3월 1일부터 인하·적용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2005년도에 1조 4,050억 원의 영어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에 따른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와의 금리차액에 대해 40,013백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수협에 교부함으로써 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었다.

나. 수산피해복구 이차보전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를 입은 수산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한 복구용 융자금은 수협중앙회의 예수금으로 조달하여 연리 4%의 저리로 지원하는데 이에 따라 2005년에 196백만 원의 이차보전금 교부하여 어업인 이자부담 경감을 기하였으며,

2003년도 1~3월에 발생된 폭설·한파 피해와 8~9월에 발생된 적조 및 저비중 피해 및 9월에 발생된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서 피해발생일 현재 대출받아 사용 중인 영어자금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상환기한을 1~2년간 연장하고 이자도 같은 기간동안 면제함에 따라 9,625백만 원의 이차보전을 하여 어업인의 금융비용을 덜어 주었다.

다. 어가부채경감대책 이차보전

「2000년 어가부채경감대책」 「2001년도 어가부채경감특별대책」 및 「2004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 등에 대한 수협의 이자수입 손실 등에 대해 36,082백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교부함으로써 같은 규모의 어업인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었다.

3.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2004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가 쌀 협상 결과의 국회 비준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연리 3.0%를 초과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수산발전기금의 융자금”에 대해 2006년 1월 1일부터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 어업인은 연3.0%(2005년 4.0% 내지 5.0%)로 적용하고, 일반업체와 비어업인은 연리 4.0%(2005년 4.5% 내지 5.5%)로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재해복구용 융자금에 대해서도 연리 1.5% (2005년 4.0%)로 대폭 인하·적용하는 등 연간 약 44억원의 어업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게 되었다.

4.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적조, 가격폭락, 어·패류 질병 등 외부 충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어가 또는 어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인 수산업경영체(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중에서 각급 수협에 설치된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를 거쳐 회생이 가능한 경영체의 경영자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경영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어업인 457명에 대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재원 수협자금)을 연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9,93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제3절 수산 관련 세제 개선⁶⁰⁾

1. 수산세제 지원 연장

정부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지원 및 소득보전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비롯한 세제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업인은 연간 약 7,800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5년 말까지 일몰제가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을 어업인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2. 수산세제 지원대상 확대

2005년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총 639만 드럼으로서 어업인들의 면세 혜택금액은 6,564억원이며, 공급대상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등이다.

어업인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를 추진한 결과, 2005년 7월부터는 자가 어획물운반선,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대해서도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60)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표 99〉 2005년도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

(단위 : 천 드럼, %)

구 분	'03	'04	'05	'05/'04
합 계	7,316	7,006	6,391	91.2
경 유	6,024	5,753	5,204	90.5
B - A	362	357	325	91.0
B - B	34	31	29	93.5
B - C	151	148	119	80.4
회 발 유	710	679	682	100.4
운 활 유	35	38	32	84.2
면세액(억원)	6,395	6,325	6,564	103.8

제4절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⁶¹⁾

2005년 1월부터 농림부에서 운용하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3,694억원)이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용규모가 전년도 2,416억원에서 6,272억원으로 대폭 증가함은 물론,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04년 대비 집행률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기금의 운용방향은 농안기금의 이관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기금의 재원확충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자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경상사업은 최소 소요만 반영하였다.

사업비는 경상 및 용자사업을 포함하여 23개 사업에 5,507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실적이 5,114억원에 이르러 계획 대비 92.9% 집행률을 기록하였는데, 경상사업의 어업용 페스티로폼감용기 보급, 적조 제어장치 설치 및 비축 사업의 집행률이 낮았으며, 용자사업의 TAC참여 어업인경영개선자금, 양식어업기반시설, 우수수산물지원 등의 집행률이 낮았는데, 이는 어업 및 관련 산업의 경기악화에 따른 자금수요의 부족,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높은 용자금리로 정책자금으로서의 유인요건의 부족 등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금의 능동적·신축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금수요가 증가한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출하조절(6,822백만원), 어업질서확립자금(4,000백만원), 원료수매지원(8,675백만원), 우수업체운영자금(25,700백만원) 및 어업인후계자육성(4,000백만원) 등 총 49,197백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고,

6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집행실적이 부진한 비축사업, 원료구매지원, 수산물규격출하 및 노후 원양어선신조대체 등 총 49,197백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다.

〈표 100〉 2005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실적

(단위 : 백만 원)

항 목	당초계획 (A)	수정계획 (B)	실 적 (C)	증△감		
				C-A	%	
수 입	1. 정부출연금	40,000	40,000	40,000	-	-
	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8,128	18,128	19,374	1,246	6.9
	3. 감척어선매각대금	-	-	868	868	-
	4. 기타경상이전수입	-	-	5	5	-
	5. 위약금	-	-	27	27	-
	6. 국가어항토지매각대금	725	725	111	△614	△84.7
	7. 재고자산매각대	33,157	33,157	18,010	△15,147	△45.7
	8. 용자원금회수	387,729	387,729	392,824	5,095	1.3
	9. 여유자금회수	110,833	110,833	142,567	31,734	28.6
	10. 이자수입	20,462	20,462	12,543	△7,919	△38.7
	11. 전년도이월금	-	-	896	896	-
합 계	611,034	611,034	627,225	16,191	2.6	
지 출	1. 기금운영비	977	977	807	△170	△17.4
	○ 기금관리비	412	412	282	△130	△31.6
	○ 사업운영비	565	565	525	△40	△7.1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징수	515	515	475	△40	△7.8
	- 우수수산물대축제	50	50	50	-	-
	2. 사업비	550,693	550,693	511,420	△39,273	△7.1
	가. 경상사업	53,980	53,980	41,327	△12,653	△23.4
	○ 어업용페스티로폼감용기보급	1,280	1,280	1,120	△160	△12.5
	○ 산업부산물활용어장환경개선	1,000	1,000	1,389	388	38.8
	○ 적조제어장치설치	500	500	369	△131	△26.2
	○ 폐기물해양배출관리시스템구축	2,000	2,000	2,588	588	29.4
	○ 해사채취행위 친환경적관리	1,000	1,000	847	△152	△15.2
	○ 오염퇴적물정화·복원	500	500	635	135	27.0
	○ 비축사업	45,000	38,178	25,310	△19,690	△43.8
	○ 출하조절	2,700	9,522	9,069	6,369	235.9

구 분		당초계획 (A)	수정계획 (B)	실 적 (C)	증△감	
					C-A	%
지 출	나. 용자사업	496,713	496,713	470,093	△26,620	△5.4
	○ 자원관리형어업육성	25,400	29,400	26,444	1,044	4.1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16,000	16,000	14,094	△1,906	△11.9
	- 어업질서확립자금	2,000	6,000	6,000	4,000	200.0
	- 양식어업기반시설	7,400	7,400	6,350	△1,050	△14.2
	·해면양식시설	5,650	5,650	5,300	△350	△6.2
	·내수면양식시설	1,400	1,400	700	△700	△50.0
	·사료저장시설	350	350	350	-	-
	○ 민간가격안정및유통구조개선	394,417	392,417	385,574	△8,843	△2.2
	- 수산물수매지원	129,120	137,795	134,830	5,710	4.4
	·원료수매지원	121,120	129,795	127,598	6,478	5.3
	·가공업체운영자금	8,000	8,000	7,232	△768	△9.6
	- 우수수산물지원	129,700	129,700	128,560	△1,140	△0.9
	·원료구매지원	74,000	48,300	47,160	△26,840	△36.3
	·우수업체운영자금	55,700	81,400	81,400	25,700	46.1
	- 산지및소비지유통개선	135,597	124,922	122,184	△13,413	△9.9
	·수산물규격출하	18,000	16,500	16,220	△1,780	△9.9
	·공판장출하촉진	90,000	86,325	86,325	△3,675	△4.1
	·직거래매취	3,000	3,000	3,000	-	-
	·도매시장출하촉진	8,597	4,097	2,900	△5,697	△66.3
	·산지중도매인유통자금	16,000	15,000	13,739	△2,261	△14.1
	○ 유통시설개선	30,317	30,317	20,579	△9,738	△32.1
	- 수산물종합가공단지조성	19,200	19,200	9,913	△9,287	△48.4
	-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건설	7,757	7,757	7,757	-	-
	- 가공시설현대화	3,360	3,360	2,909	△451	△13.4
	○ 친환경어업기자재공급	12,496	10,496	10,008	△2,488	△19.9
	- 어망생산운영자금	3,000	1,000	920	△2,080	△69.3
- 양식기자재구입자금	3,000	3,000	2,592	△408	△13.6	
- 어선기관및장비개량	1,696	1,696	1,696	-	-	
- 수협사료시설운영지원	4,800	4,800	4,800	-	-	
○ 해외어장개척	19,733	15,733	9,138	△10,595	△53.7	
- 노후원양어선신조대체	19,733	15,733	9,138	△10,595	△53.7	
○ 어업경영체지원	14,350	18,350	18,350	4,000	27.9	
- 어업인후계자육성	14,350	18,350	18,350	4,000	27.9	
3. 여유자금 운용	59,364	59,364	114,998	55,634	93.7	

제5절 어업인정책보험 운영⁶²⁾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이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한 보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을 2003년 3월 19일 제정(법률 제6866호)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05년도에는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36,431명(2004년 대비 2.2% 증가)의 어선원과 어선보험에 가입한 4,925척의 어선에 대하여 14,95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101〉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단위 : 명, 척, 백만 원, %)

구 분	'02	'03	'04	'05	'05/'04
○ 어선원보험료					
- 인 원	33,017	27,694	35,658	36,431	102.2
- 보 조 액	5,838	7,268	6,546	7,958	121.6
○ 어선보험료					
- 척 수	2,863	2,767	2,753	4,925	178.9
- 보 조 액	1,743	1,989	2,058	1,491	72.4
○ 위탁운영사업비					
보 조 액	-	-	5,241	5,502	105.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62)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한편, 2005도에는 어업인정책보험사업 시행 2차년도로서 보험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2005.5.1 ~ 6.4까지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합동으로 정책보험 실태조사를 위한 어촌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보험제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였다.

또한, 보험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어선원·어선주 대표 및 공익대표 등 15인)와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의 재결을 위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어선원·어선주 대표 및 보험전문가 등 15인)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만화로 알아보는 정책보험설명서 5,00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보험제도 개선안내문 9,874매를 D/M(전산안내장)발송하였으며, 수산전문지를 통한 광고와 정책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경과 합동으로 특수지도(사고해역지도) 10,000부를 제작하여 어선주에게 배부하는 등 사고예방에 주력하였다.

제6절 해양수산재해 및 복구 지원⁶³⁾

2005년도에 태풍 및 풍랑, 대설 등 6차에 걸친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시설은 총 81,855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1차 피해는 2005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 기간중 대설, 풍랑으로 인하여 4,990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차 피해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수산생물 6,500천마리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3차 피해는 8월 2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108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4차 피해는 9월 6일부터 9월 8일, 9월 16일부터 9월 17일 기간중 제 14호 태풍 「나비」와 집중호우로 35,769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5차 피해는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 기간중 풍랑으로 인하여 4,788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6차 피해는 12월 3일부터 12월 24일 기간중 대설, 풍랑으로 36,200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복구를 위해 총 115,750백만 원의 피해복구비를 투입하였는데,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47,356백만 원, 지방비 22,358백만 원, 융자 32,296백만 원, 자담 9,798백만 원, 자체복구 3,942백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간접지원을 위해 30% 이상 피해어가에 대하여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간)과 중고등학생 수업료 면제(3~6개월분)를 실시하는 등 피해어민이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63)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

〈표 102〉 2005년도 해양수산시설 피해 및 복구상황(시기별)

(단위 : 백만 원)

차 수	발 생 일	피 해 원 인	해 양 수 산 시 설	
			피 해 액	복 구 액
	합 계		81,855	115,750
1차	3. 4 ~ 3. 6 3.11 ~ 3.13	대 설 풍 랑	4,990	9,083
2차	6.30 ~ 7.2	호우 및 강풍	-	3
3차	8.2 ~ 3 8.8 ~ 8.11	호우	108	917
4차	9.6 ~ 9.8 9.16 ~ 17	태풍 '나비' 호우	35,769	52,673
5차	10.21 ~ 24	풍랑	4,788	8,551
6차	12.3 ~ 24	대설, 풍랑	36,200	44,523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

〈표 103〉 2005년도 해양수산시설 피해 및 복구상황(내용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단 위	피 해		복 구 소 요 액						
		물 량	금 액	총 복 구	지 원 복 구					자 체 복 구
					소 계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담	
합 계			81,855	115,750	111,808	47,356	22,358	32,296	9,798	3,942
항 만	개 소	15	4,602	9,545	9,483	9,483				62
어 항	"	119	24,707	31,663	28,307	14,611	13,696			3,356
어 선	척	216	1,239	3,068	3,068	683	321	1,783	281	
증양식시설	개 소	3,693	26,698	28,845	28,845	8,154	2,959	13,608	4,124	
수산생물	식	141,546	-	19,622	19,622	6,667	2,081	8,068	2,806	
어망어구	통	15,379	10,819	13,872	13,864	2,107	873	8,469	2,415	8
생계지원	세 대	-	-	1,631	1,631	1,631				
기 타	개 소	145	13,790	7,504	6,988	4,020	2,428	368	172	516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

제 8 장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⁶⁴⁾

제1절 일선수협 구조조정

1.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94개 일선수협에 대하여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2개월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순자본비율 산출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여부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이행점검 등 전반적인 경영평가와 상호금융업감독 규정에 따라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경영상태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결과 44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요구)으로, 9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경영상태가 악화된 조합(42개 조합)에 대해서는 임직원 체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등 추가 적기시정조치를 시달하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2. 부실수협 구조조정

2005년 6월 2일 개최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합병 등 구조조정 결정유보조합으로 결정된 9개 조합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이 중 5개 조합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및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6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구조조정 대상조합결정 주지표인 순자본비율과 당기손익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3개 조합 및 순자본비율목표는 달성하였으나 MOU 필수 이행사항 이행률이 저조한 1개 조합 등 4개 조합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받아 합병명령을 하면서 조합장등 상임임원의 해임과 강력한 자구노력 수용할 경우에는 합병명령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선택권을 부여한 결과 이들 조합들이 상임임원의 해임과 강력한 구조조정 수용을 선택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으나 완도군수협은 부실정도가 심하여 관리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05년 10월 13일부터 관리인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조합들의 경영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 9명의 경영지도역을 파견하여 조합 총회에서 강력한 자구노력 이행의결, 적기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합병명령 철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그 동안 지급이 유보되어 있던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하반기 중 지급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다.

3.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2004년말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 부실조합 등 47개 조합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고, 6,709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 조합 중 4개 조합이 부실우려조합에서 정상조합으로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경영개선자금을 상환(163억원)하고 MOU를 해지함에 따라 2005년말 현재 43개 조합 6,546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되어 있다.

2005년도중 총 650억원의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지급하여 지속적 경영정상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구조조정 결정유보조합으로 결정되어 그 동안 경영개선자금 이자가 미지급상태로 있던 9개 조합에 대해서는

우선 경영지도역이 현지에 파견된 4개 조합을 제외한 5개 조합('05. 6. 14)에 대해 상반기중 107억원의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4개 조합은 총회(대의원회)에서 강력한 자구노력을 수용함에 따라 합병명령을 철회하고 미지급이자 총 127억원을 하반기중 지급하였다.

4. 부실책임조사 실시

일선수협이 부실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일선수협의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중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8개 조합을 대상으로 부실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임직원에게 대한 귀책사유를 규명하는 등 부실조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도에 구조조정이 완료된 3개 조합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2005. 3. 16)의 결을 거쳐 처분계획을 확정된 후 총37명, 243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는 등 일선수협의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였다.

제2절 신용사업의 『OK ACE 0506 운동』 전개

신용사업부문은 2001년 「New Start 180 운동」, 2002년 「Jump 2&2 운동」, 2003년 「DASH-3M 운동」 및 2004년 「NICE 2004 운동」의 성공적 결실을 바탕으로, 2005년~2006년에 걸쳐 적극적 해양금융 진출(Ocean Korea), 선진적 수산금융 구현(Advanced), 지속적 상업금융 강화(Consistent), 효율적 경영혁신 추진(Effient)을 경영목표로 일류해양 수산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OK ACE 0506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중 실시된 1차년도 OK ACE 0506 운동 결과 당기순이익 1,247억원, 예수금 8조 2,000억원, 일반대출금 6조 3,490억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성공적인 운동추진으로 인해 2005년 말 총자산은 전년 말 대비 무려 2조 79억원이 증가한 13조 5,66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재무비율도 BIS 자기자본비율 12.6%, 총자산이익률(ROA) 1.0%, 1인당 조정영업이익 2.7억원, 고정이하 여신비율 1.5%를 달성함으로써 재무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다.

제3절 수협 혁신방안 수립 추진

수협은 지난 2001년 공적자금 투입으로 자주적인 조직체로서의 위상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공적자금 상환 전까지는 수협의 역할 수행에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2005. 4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시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라는 수협의 원대한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비전달성과 수협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수협은 혁신방안 수립을 위해 2004. 7월부터 T/F팀을 본격 가동하고, 혁신방안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9월 (주)능률협회 컨설팅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했다.

2005. 5월 (주)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제출한 용역결과 보고서와 수협이 자체적으로 의견수렴한 제안내용 등을 토대로 수협정체성 정립 및 의식개혁, 지도사업 활성화 등 총 6개 부문 34건의 혁신과제로 이루어진 전사 차원의 수협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수협은 혁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혁신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2005년을 혁신도입기로서 단기과제 추진을 통한 혁신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수협 정체성 정립 및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하여 윤리경영 및 클린카드제를 도입하고, 회장 선거 후보 자격 및 당선인 결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수요포럼 개최를 정례화하였다.

또한 조직혁신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부문간 신입직원 동시채용 및 승진고시 관리를 일원화하고, 비전 및 전략과 연계한 성과관리시스템(BSC)를 도입하였으며, 전산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MRO)의

온라인 통합구매를 통한 경비절감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주력하였다.

일선수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지원역량 강화 등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19개 조합, 132명 참여)하고, 도시와 어촌간 이해증진 및 상생기반 구축을 위하여 어촌자매결연 사업(214개소 결연)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다마트 회센타를 전문활어 음식점(잠실점) 또는 임대전환(신내점, 희망로점, 원효점)하고 경쟁력 없는 회센타는 폐쇄(종암점, 김포점)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적자 바다마트 구조조정(답십리점 폐쇄, 김포점 규모 축소)으로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양식활어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별해별미 가맹사업을 추진하여 4개소(여의도, 서초, 평촌, 역삼)를 개설하였다.

일선수협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회 사업부문별로 독립하여 배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어가소득 증대와 연계한 클린 해양문화 중심의 사랑海 Summer Festival 등을 개최하였다.

제 Ⅲ 편
2006년도 수산시책 추진계획

제 1 장 기 본 방 향

제1절 수산업의 여건변화⁶⁵⁾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50년대에 수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 1970~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선진수산국으로 도약하면서, 국민 식량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96. 11)에 따른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체결('98. 11)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여건과 공해조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연근해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한·중 간에도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 되어 2001년 6월 발효되었고, 러시아가 자국의 EEZ 내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명태 등의 어획쿼터를 점차 줄여 나가는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본격적인 EEZ가 적용되는 신 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에는 수산물의 국내 수요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이 채택되고, 2004년 8월 1일

65)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 기본골격이 합의되어 2005년 12월 18일 홍콩에서 막을 내린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금년도 협상타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합의함에 따라, 향후 수산보조금 및 관세 철폐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을 예고했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그간 매립·간척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의 심화, 수산자원의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과 불법어업의 집중단속 등에 힘입어 2005년도의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097천톤으로 전년 1,077천톤 대비 약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가소득에서도 2005년 말 기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72%, 농가소득의 92% 수준으로 2004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아직 저소득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어촌의 정주환경 취약과 3D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어촌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수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고용기회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어업현실과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대처·극복하고 21세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장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제2절 중점 추진시책⁶⁶⁾

2006년도는 WTO/FTA 등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의 구조조정, 자율관리어업 정착 및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하여 시장개방 확대와 자원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정책 기본방향

-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
→ 살기 좋은 어촌, 꿈이 있는 수산, 가고 싶은 바다 구현



2006 중점시책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 어장환경의 개선 및 양식어업의 육성
- 살기 좋고 활력있는 어촌조성
-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 공급
- 수산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 확보
- 국제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 WTO/DDA, FTA 협상 대응

6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006년 수산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도에 정부·지자체·어업인 등이 공동으로 만든 「수산자원회복 세부 실천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마련하고,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 바다목장 조성 및 인공어초의 시설 등 수산자원을 적극 조성해 나가는 한편,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대상 어종과 자율관리어업의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양식어업은 양식어장·특별관리어장 정화·정비 및 어장관리기본계획 마련 등을 통해 어장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배합사료 사용 지원 확대 등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수산업 관측제 및 유통협약 확대 등을 통해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살기 좋고 활력 있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관광모델 개발 등을 통해 어촌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400사 400어촌 자매결연 체결 등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어촌관광 홍보 등을 통해 국내 관광 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어항의 안전수용률을 감안한 집중적 어항개발 및 관광·레저 등 다양한 어항 수요에 부응한 다기능어항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수산물 생산이력추적제, 양식장 HACCP 본격 도입 등 선진 위생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지원하고, 외국산 불량 수산물의 수입 차단과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국내양식장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싱싱회 보급을 확대하고 품질인증제,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및 고품질 수산가공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부산 감천항을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로 조성하고 가락동·노량진수산물시장의 현대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고 하고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유통제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수산물 기술 개발과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어자금, 수산물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의 지원,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업 및 선도경영인 지속 육성과 어업인이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양식재해보험」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협중앙회 및 일선조합(94개)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수산물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조업수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간 어업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원양조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WTO/DDA 수산물분야 협상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산물보조금은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 되고 유예기간 및 단계적 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는 한편, 수산물관세는 수산물이 무세화(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FTA는 협상의 전 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회도 적극 참여하여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등을 미리 발굴하고, 자료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협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WTO/DDA 및 FTA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 수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요 어종·업종별 경쟁력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어업인 전업방안과 수산물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국내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예산 및 자금지원⁶⁷⁾

2006년도 해양수산부의 세출예산은 순계개념으로 2005년 예산(3조 751억원) 대비 1,658억원 증가한 3조 2,409억원으로, 정부 총예산 167조 3,186억원 중 1.9%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예산 중 수산부문의 예산은 8,5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3%이며, 전년도 8,228억원 대비 3.6% 증가하였다.

* 예산순계 개념 : 예산총계에서 회계간 거래나 동일 회계내 계정간 거래금액 등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 순액

〈표 104〉 200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 회계 및 분야별

(단위 : 억원)

구 분		2005예산	2006예산	증△감	%
부 문 별	○ 항 만 분 야	17,599	17,932	333	1.9
	○ 수 산 분 야	8,228	8,526	298	3.6
	○ 해양·환경, 기타 분 야	2,444	3,279	835	34.2
	○ 행 정 경 비	2,480	2,672	192	7.7
합 계 (주요사업비)		30,751 (28,271)	32,409 (29,737)	1,658 (1,466)	5.4 (5.2)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7,972	8,614	642	8.1
	○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17,218	16,325	△893	△5.2
	○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1,673	1,903	231	13.8
	○ 재 정 용 자 특 별 회 계	1,004	859	△145	△14.4
	○ 국 유 재 산 관 리 특 별 회 계	107	170	63	58.9
	○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156	283	127	81.4
	○ 책 임 운 영 기 관 특 별 회 계	627	1,955	1,328	211.8
	○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1,994	2,299	305	15.3

자료 : 해양수산부 재정기획관실

67) 해양수산부 재정기획관실

□ 수산부문 예산

(단위 : 억원)

	'05년 예산	'06년 예산	증△감	
				%
합 계	8,228	8,526	298	3.6
◆ 부담경감·소득보전	2,711	3,248	537	19.8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345	534	189	54.8
○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	200	200	순증
○ 어촌관광 개발	314	639	325	103.5
○ 어업인정책보험 지원	209	180	△29	△13.9
○ 어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1,113	968	△145	△13.0
○ 부실조합 경영개선 등	730	727	△3	0.4
◆ 생산기반조성	4,800	4,424	△376	△7.8
○ 바다목장 조성	100	135	35	35.0
○ 국가 및 지방어항 건설	2,089	1,796	△293	△14.0
○ 수협경영 지원	260	261	1	0.4
○ 어업지도·단속	445	358	△87	△19.6
○ 정책자금 지원	929	789	△140	△15.1
○ 수산자원 관리	723	744	21	2.9
○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254	341	87	34.3
◆ 유통개선	362	449	87	24.0
○ 유통시설 지원	272	346	74	27.2
○ 위생안전, 수출지원 등	90	103	13	14.4
◆ 기술개발·인력양성	355	405	50	14.1
○ 수산기술개발	283	272	△11	△3.9
○ 기술관리	68	107	39	57.4
○ 어업인교육	4	26	22	550.0

자료 : 해양수산부 재정기획관실

제 2 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제1절 수산자원회복 계획⁶⁸⁾

수산자원회복계획은 해역별·어종별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명확한 회복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지자체·어업인·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개별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행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조치하는 체계적·종합적인 자원관리계획이다.

동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회복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수산자원회복팀”을 '05년 3월부터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정부·지자체·어업인·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자원회복을 위한 연차별 중장기 수산자원회복 세부 실천계획을 '05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연차별 중장기 수산자원회복 세부 실천계획” 마련의 일환으로 대상종별 회복목표, 실시시기, 생태, 어업실태, 자원조사·평가현황, 정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아우르는 “해역별·어종별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관리카드”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토록 동 계획을 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별 목표 설정 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차별 개선·발전 방안을 도출, 개별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각 정책별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

68) 해양수산부 수산자원회복팀

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다.

'06년에는 본격적인 수산자원회복의 추진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계획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꽃게(서해-연평), 도루묵(동해), 낙지(남해-무안), 오분자기(제주-성산) 등 4개어종을 시범어종으로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범실시 대상어종 특징

어종명	꽃게	도루묵	낙지	오분자기
해역	서해(연평)	동해	남해(무안)	제주(성산)
관리주체	해수부	해수부	지자체	지자체
어종	갑각류	어류	두족류	패류
업종	연안자망, 근해자망, 연안통발, 개량안강망	동해구기저, 연안자망, 동해구트롤 등	연안연승, 연안통발, 외끌이서남해기저	나잠어업
어종특성	회유성	국제적 관리	연안정착성	연안정착성
어업특징	어선어업	어선어업	어선어업	마을어업
추진방향	광역자율관리 제도권 수용을 통한 광역해역관리	산란장 주변 보호를 통한 일반어업 관리	자율어업관리 제도권 수용을 통한 소해역 특화관리	마을어장 생태계복원을 통한 회복
주요내용	금지채장 상향조정, 산란장 보호	산란장(해조장) 보호 및 복원, 광역자율관리 유도	산란장, 산란기보호	재생산관리

한편, 동 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간담회, 워크샵, 설명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연차별 중장기 수산자원회복계획”에 따라 '06년부터 실시 대상어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제2절 연근해 자원조성⁶⁹⁾

1. 인공어초 시설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197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은 어초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건설시공의 정착, 해역별·어종별·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의 개발과 시설, 어초어장의 시설보전과 기능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강화, 갯녹음(백화)현상이 발생한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중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105〉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단위 : ha)

구 분	기 시설(1971 ~ 2004)	2005년	누 계
합 계	181,035	5,263	186,298
부 산	2,220	104	2,324
인 천	5,789	522	6,311
울 산	1,034	68	1,102
경 기	5,487	178	5,665
강 원	21,710	354	22,064
충 남	14,853	772	15,625
전 북	10,310	176	10,486
전 남	37,904	1,310	39,214
경 북	22,184	140	22,324
경 남	34,958	424	35,382
제 주	24,586	1,215	25,801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69)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이를 위해 '06년에도 40,205백만 원의 사업비로 약 6,000ha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7,793백만 원의 사업비로 약 42,000ha의 어초어장에 대한 위치·상태 확인 및 폐그물 수거, 어초어장도 작성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며, 2,375백만 원의 사업비로 갯녹음(백화) 발생어장 60ha에 대해 해중림 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 종묘방류 및 종묘배양장 기능 조정

방류어류의 생존율 향상 등 종묘방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어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수산종묘를 방류토록하여 어업생산성을 제고하며, 가급적 야성화 훈련이 실시된 종묘를 매입·방류할 계획이며, 방류어종의 다양화를 기해 '05년 30종에서 '06년에는 34종으로 품종을 확대하여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대상 품종에 대한 질병유무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여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묘가 방류되어 생존율을 높일수 있도록 하고,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방류어종 검수 및 방류시 종묘생산자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도립수산종묘배양장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한·중·일의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해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바다목장 조성

199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06년까지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그동안 조성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이용체계 확립 및 단위사업별 종합매뉴얼 또는 사업지침서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해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추진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추진하여 바다목장사업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여수 다도해형 바다목장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2단계 최종년도 기반조성사업으로 34억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연구·조사와 더불어 인공어초, 해중립 등 구조물 설치와 감성돔, 볼락류 등 110만 미의 종묘를 방류하는 등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한편, 2005년에 1단계 최종사업이 마무리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3개소에 대해서도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다목장조성연구 및 시설물설치 등 2단계 1차년도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바다목장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총허용어획량제도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TAC) 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자원관리제도로서 어획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업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TAC제도 실시 대상 어종 및 어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2006년도 TAC 사업은 고등어·전갱이·정어리·붉은대게·개조개·키조개·제주소라·대게·꽃게 등 9개 어종을 대상으로 214천톤의 TAC를 정하여 7개업종에 598척(통), 100개 어촌계가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다.

어종별 TAC 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였으며, 할당량의 배분에 있어서도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배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TAC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06년에는 판매장소를 97개소로 확대하고 TAC 관리대상자원의 할당량을 배정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상어종 어획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표 106〉 2006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단위 : 톤)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	비 고
합 계		214,150	
대 형 선 망	고 등 어	155,000	'06. 1. 1 ~ '06. 12. 31
	전 갱 이	19,000	"
	정 어 리	5,000	"
근 해 통 발	붉은대게	21,000	"
근해통발 및 자망	대 계	1,000	'05. 11. 1 ~ '06. 5. 31
잠 수 기 어 업	개 조 개	5,100	'06. 1. 1 ~ '06. 12. 31
	키 조 개	2,440	"
마 을 어 업	제주도소라	1,610	'05. 10. 1 ~ '06. 6. 30.
연근해자망 및 통발	꽃 게	4,000	'06. 1. 1 ~ '06. 12. 31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제3절 자율관리어업⁷⁰⁾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및 질서유지에 참여토록 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새어촌 운동이자 어촌의식개혁 운동으로서, 자율관리 공동체 운영 및 참여확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6년도에는 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2005년말 현재 308개소에서 410개소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실적에 근거한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60개소, 96억원)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율관리어업을 성실히 이행한 공동체에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간 우수추진사례와 지도사례를 교환하기 위한 제4회 자율관리어업전국대회(10월), 동·서·남해로 구분한 권역별 워크숍(3회), 지방해양수산청 중심의 지역단위 워크숍(24회)로 공동체지도자의 리더쉽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자양성교육(1회), 민간전문가를 자율관리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공동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우수공동체에 대한 현장견학 및 선진수산국 해외연수 실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어업인·대국민 홍보활동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70)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별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체제를 변경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4개등급(풍요, 모범, 협동, 참여)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포상 및 육성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공동체간 승급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자율관리어업 5년 실시에 대한 평가와 효과적인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관리어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참여공동체가 늘어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정부와 어업인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수산회에 자율관리어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 기능의 활성화, 공동체별 등급결정을 위한 자율평가위원회 운영,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지원기구(자문위원회, 시·도별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에 대한 활동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4절 내수면어업 개발⁷¹⁾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적인 양식시설의 환경친화형 현대화시설 전환으로 환경보전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한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식품종 다양화 및 관상용 양식 등으로 고부가 내수면어업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4~2007년까지 내수면잠재력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내수면생태계의 회복·보존 관리방안 마련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토산어종 및 연어치어방류 사업과 아울러, 내수면수산자원을 국민에게 친숙한 유어공간으로 제공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71)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제5절 연근해어선 감척⁷²⁾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노력 투입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선 노후화, 어업인력 부족 및 어선원 승선기피로 인한 임금상승 등으로 어업경영 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로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하여 온 결과, 근해어선 생산량은 톤당 약 36%가 증가하였으나, 연안어선 감척실적은 전체의 약 1%로서 그 효과가 미흡하여, '04년부터 '08년까지 연안어선 6,300척을 감척한다는 목표로 '06년에는 연안어선 1,000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표 107〉 2006년도 시·도별 연안어선 감척계획

(단위 : 척)

시·도별	척 수	시·도별	척 수
부 산	29	전 북	20
인 천	19	전 남	270
울 산	9	경 북	64
경 기	12	경 남	279
강 원	114	제 주	114
충 남	60	합 계	1,00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72)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제6절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 추방

우리나라 어업환경은 배타적경제수역체제로의 해양질서 재편 및 관할 수역내의 어업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경쟁력이 날로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성 유지와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어선감척, 인공어초 투하 및 종묘방류 등 자원관리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정책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어업자원 남획 및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하여 2006년도 어업질서확립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근절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허가어선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어업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민간주도형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을 현 400척에서 500척으로 확대·운영하고 불법어업이 근절된 어업질서 선도마을 10개소를 선정하여 어촌사회에 준법의식 확산을 촉진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과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소형기선저인망어선 2,500척을 8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매입·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어업으로 재 진입 방지를 위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외국어선의 우리수역 조업위반 방지를 위하여 남·서해상 중국어선 주조업수역에 국가어업지도선 및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즉각 나포하는 등 조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장 어장환경 개선과 양식어업 육성⁷³⁾

제1절 어장환경개선

2006년도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장기간 양식 등으로 어장이 노후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양식·마을어장을 중심으로 73억원을 투입하여, 8,991ha에 대해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해적생물 구제 등 정화·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동식물의 서식·산란장 등에 침체된 폐어망 등의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35억원을 투입하여 1,182여 톤의 침체어망 인양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장정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어장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장환경개선 사업비 총 184억원을 투입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및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주체를 시·군으로 일원화 및 어장정화·정비업체 등록기준조정 등 어장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의 대상지역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전환·확대하여 광역화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균특회계로 편성된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적정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3)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제2절 양식어업의 재편 및 지원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편익을 위하여 생산과잉과 어업재해 등이 우려되는 품목은 신규면허금지 및 시설면적을 지속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가면서, 어장구역의 제한 및 어장사이의 거리 제한, 양식어장의 시설기준 등 현행 제도인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예측가능한 생산관리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류, 김, 전복 양식어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예고하여 자진철거유도 등 불법시설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목은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예측정보도 넓치 5개 품목에서 농어 등 3개 품목을 추가하여 제공하고, 수급예보제 실시, 종묘 입식량 조절, 출하지도 등을 위해 업계·수산전문가·정부 공동으로 자문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어류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생사료에 의한 연안어장 환경오염 및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는 한편, WTO/DDA 및 FTA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직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전국 양식어장의 약 25.4%인 357ha(해상가두리 304ha, 육상수조식 53ha)를 대상으로 101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배합사료 공급지원을 확대하여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가중되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제 4 장 살기 좋고 활력 있는 어촌조성⁷⁴⁾

제1절 어촌·어항 기초조사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4조에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수립과 향후 어촌·어항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의 87개 연안·시·군·구에 소재한 국가어항105개항, 지방어항 308개항, 어촌정주어항 461개항, 소규모포구 1,361개항과 1951개 어촌계에 소재한 자연마을 3,871 마을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어촌의 분포현황, 인구변동추이, 어촌의 생활여건, 어항시설 등 기초조사, 기상 및 해양조사, 해안선 및 연안관리계획·토지이용현황·자원현황 등 현지 어촌어항개발여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동 조사는 총사업비 20억원으로 1년차('06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년차('07년도)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 조사용역 결과 조사자료를 D/B화하여 관리하면 향후 어촌어항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74)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제2절 어촌관광 활성화 추진

1. 어촌종합개발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우선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대상사업은 어선계류시설·어업지원 등 생산기반시설과 어촌환경시설 및 어촌소득기반시설 중에서 권역내 어업인이 선택하게 된다.

권역당 2~3개년간 평균사업비 35억원을 지원하며, 지원율은 '04년 이전사업은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로, '04년 이후 신규사업은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로 2006년도에는 30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7개 권역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권역내 어촌계간의 협의에 의해 세부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실시계획을 거쳐 착공토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참여의식과 자활의지를 크게 북돋울 계획이다.

〈표 108〉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 원)

사 업 별			'04까지	'05	'06	'07 이후
어촌종합 개발사업	사업량	완 료	130	5	-	-
		계 속	25	18	17	73
	사 업 비		455,068	32,817	30,917	360,698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2.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및 붐 조성

가. 인프라 구축

1) 어촌관광모델

국민들의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와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항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 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촌·어항복합공간, 다기능어항, 어촌관광단지 등 3종의 어촌·어항개발 통합모델을 개발한데 이어,

2005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6년에는 기본설계 8개 소와 실시설계 9개소를 실시하고 전남 강진 마량 외 6개소에 대한 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 어촌체험마을 조성

2006년은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원 속초시 장사동 사진마을 등 17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상반기에 어촌체험마을에 대하여 우리부 자체평가 및 외부용역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10개마을을 선정 그룹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향후로는 소프트웨어 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쟁을 통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나. 어촌관광홍보 및 도시/어촌교류

2006년은 5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예년에 추진한 홍보와 더불어 자매결연사업1주년 기념행사 및 아름다운어촌 100선 홍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2006년은 어촌사랑 자매결연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400사 400촌 자매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협에 어촌지원 TF팀을 설치 본격적으로 운영, 자매결연 홈페이지 구축, 우수 추진사례 발굴,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자매결연 업·단체를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아파트 부녀회, 학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06년 말 추진예정인 제2회 도시/어촌 교류상 시상식 규모를 더욱 확대, 도시/어촌교류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기업, 단체, 개인 등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도시/어촌교류에 기여한 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어촌교류에 대한 관심증대 및 동기유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제3절 어항시설 확충

1. 국가어항

2006년도 국가어항투입 방향은 완공위주의 집중투입로 완공시기를 단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긴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지보수사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투입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1,403억원을 투입하여 전남 여호항 등 4개항을 완공하고 강원 아야진항 등을 관광어항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시범개발중인 대변항 등 5개 다기능어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한편, 위도항 등 3개항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국가어항 105개항을 완공해도 어선안전수용률이 77%에 불과한 서·남해안 지역의 지방어항 중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어항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신규 국가어항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지방어항은 완공 위주의 집중투입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규지정 억제를 통하여 완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균형개발특별세 재원으로 57개항에 535억원(국비 428억원, 지방비 107억원)을 투입하여 7개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307개항 중 122개항을 완공(완공률 40% 달성)할 계획이다.

어촌정주어항은 지방어항의 완공률이 부진함에 따라 완공위주의 집중투입을 위하여 어촌정주어항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역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하여, 어촌정주어항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제 5 장 안전하고 품질좋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제1절 수산물 유통개선⁷⁵⁾

대형 할인매장의 증가 및 전자상거래 확산 등 급변하는 소비지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과거의 생산위주 수산정책을 소비위주로 재편하여 생산어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유통구조개혁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어 실질경매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분산을 전담할 수 있는 중도매인을 대폭 증원하여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조성하며,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으로 선어실질경매제에 따른 산지출하자의 도매시장법인 직수탁 물량에 대하여는 어상자 비용을 예산지원하며, 소비지 중도매인에 대한 유통자금을 신설하고, 기존 출하촉진자금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매시장 시설의 노후로 인한 환경개선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통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노량진시장의 현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한편,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수산물 하역기계화 추진에 필요한 하역 장비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2004년 1월부터 수도권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자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수산물로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지 등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수산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3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패류 실질경매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하며 출하주명, 연락처, 품명, 생산지 등을 기재한 표준스티커를 부착하여 출하하는 어상자에 대하여는 스티커 제작비용(장당 5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현실에 적합한 수산물 유통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며, 농수산물안정기금의 운영권한이 우리 부에 없는 관계로 기금의 자율적·탄력적 운영이 곤란하였으나,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여 수산부문의 기금은 2005년 1월 1일부로 우리 부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을 완료했다.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수산관측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 10월부터 월 1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양식시설 면적을 파악하여 불법시설은 철거하는 등 양식산업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등 각종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수산물 수급동향예보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규제 등을 유도하기 위한 ‘유통협약제도’를 도입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적정가격에 출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적정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절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⁷⁶⁾

수산부분의 기금이 2005년 1월 1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수산물발전기금」으로 전환 되었는데,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4,261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39억원을 정부비축사업에, 2,562억원을 민간가격안정사업에, 1,222억원을 유통개선사업으로 각각 운용될 계획이다.

1. 가격안정사업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발기금 300억원을 지원하여 김·냉동오징어 등 5개 품목 12,290톤을 정부에서 직접 비축·방출함으로써 원활한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민간 및 생산자단체에도 2,824억원을 지원하여, 비축수매·방출 및 출하조절을 도모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109〉 2006년도 정부비축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 원)

구 분	수매물량	기금지원	수매시기
합 계	10,935	30,000	
김	135	2,034	1 ~ 3월
냉 동 오 징 어	2,400	6,979	8 ~ 12월
냉 동 고 등 어	1,400	4,176	9 ~ 12월
냉 동 명 태	7,000	15,311	1 ~ 12월
긴급가격안정		1,500	1 ~ 12월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주 : 수매물량 및 사업시기는 생산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76)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2.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연근해 및 해외어장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주요품목에 대하여는 어황 및 가격동향에 따라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며, 국내생산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비축사업으로 수입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과의 공동·합작사업으로 어획물 국내반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중으로 물가관리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관리를 점검해 나가면서, 특히 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특별히 관리하는 한편, 설날·추석 등 성수기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성수품의 수급 원활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안전한 수산물 공급⁷⁷⁾

1. 수산물검사 강화

세계 각국에서는 수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조건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간 협상체제로 전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웰빙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수산물이 건강·장수식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수산물의 소비증가에 따른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수산물에서 금속주입 및 말라카이트그린 등과 같은 불량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들의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욕구 증대와 수산물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검사강화와 함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0년에 발생한 중국산 납꽃게 사건과 같은 금속주입은 근절된 반면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후란 등과 같은 새로운 위해물질로 인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05년 10월에 시행한 「한·중 활수생동물검사·검역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활수생동물을 포함한 중국 및 베트남, 인도네시아 수산물의 수입 전 위해요소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해당국가에 사전 검사체제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며, 불량수산물 수입 근절을 위하여 위생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태국, 러시아 등과 수산물위생약정체결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77)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한, 수입수산물검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검사와 더불어 말라카이트 그린 등과 같은 위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보따리상 반입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규격 미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설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위해정보에 의한 신종 위해물질 및 사용 가능 항생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식약청, 관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외국의 수산식품 위해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대처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인체유해물질 발생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체 위해물질이 함유된 불량 수산물의 수입을 사전에 근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입수산물 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검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청과 검사기관 수입신고단일창구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검사기관을 방문을 최소화 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식용 수산물중 낚시터방류대상 품종과 같이 성어로 수입되어 곧 바로 식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종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인체 위해물질(중금속,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기준을 신설,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외국과 위생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수출수산물 생산·가공등록시설에 대한 조사·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수입국 요구에 부합된 우량 제품의 생산유도를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생산·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로 불량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중성 어종과 오염 우려가 높은 양식어종 및 연안성 어패류 36종 4,300점에 대하여 생산단계의 식중독균·항생물질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검사기능 강화

수산물 수입의 완전 자유화로 국가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초래되는 저질·위해수산물로부터 국민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검사기능의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어 2006년도에는

첫째, 자동염기서열분석장치 등 51종 96대의 최신 정밀분석장비를 확보하고,

둘째 국제수준과 동등한 검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전자, 어병 및 수산가공 전공자 41명을 특별 채용하여 전문인력을 보강 하는 한편,

셋째 기존 검사원에 대해서도 유기독성·항생물질·어병 등 8개 분야 22명을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4절 수산물 수출·입 대책⁷⁸⁾

1. 수출 활성화

2006년도의 수산물 수출은 환율하락 및 유가급등으로 인해 수출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WTO/DDA 협상 진행 등으로 수산물 교역여건이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도 수산물 수출목표를 13억 \$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및 적극적인 통상외교 추진 등으로 국가별 교역현안을 해소하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도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첫째, 성장잠재력을 가진 업체를 수출주력업체로 확대·지정하여 ‘수출용 원료수매자금 및 우수업체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둘째 일본·중국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수출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셋째,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중국 등에 파견하는 한편,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과 상품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김 수입할당(IQ)의 증대에 따른 김 품질 개선 등을 통하여 수출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통상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78)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출원료 구매자금 및 우수업체 운영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수입 관리

수산물의 수입급증에 따른 생산어업인의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수산물 수입관리를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첫째, 수산물 수입증가율, 외국과의 어업 및 통상여건, 국내외 가격차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판단과 업계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조정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수산물 수입 급증품목에 대하여 동향정보를 수입관련자 및 정책고객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수입동향예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동향 예보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돔, 농어 등 수산물의 표준품명 및 필수규격을 제정하여 세액심사의 철저를 기하고, 세관수입신고 시 실거래 가격을 유도하여 수입수산물의 저가신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자유무역협정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정비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신규 수산물 수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다섯째, 이식용 및 식용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5절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⁷⁹⁾

수산물소비가 웰빙추세에 따라 '04년 3,922천톤에서 '05년 4,169천톤으로 247천톤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도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생산량은 153만톤 수준에서 소폭증가(3만톤) 추세이며,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품질기준이 일부 강화되었으나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품질인증제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에 있고 가공산업 활성화 및 고품질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활어회 중심의 회문화 개선을 위한 싱싱회 생산·유통·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품질인증제 확대를 통해 수산식품의 기준강화 및 품질 향상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음식문화의 국제화 추세 등으로 가공품에 대한 소비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수산물가공품 생산에 있어서도 소비자 요구 및 소비추세를 반영하여 편리화·다양화·고급화 전략과 함께 국민보건 위생에 적합한 가공품 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도는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여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감천항 가공단지 지원 및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특히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품 중심으로 산지가공시설 선별 지원(17개소 69억원) 및 굴 패각제거업 시설 현대화(21개소, 13억원)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싱싱회 가공시설 활성화 및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판매장 15개소를 개설, 지원(9억원)하여 싱싱회 가공공장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싱싱회 공급체제를 구축하여 싱싱회 가공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9)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또한, 우수수산물 확대보급을 위한 수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품목에 건제품, 냉동품, 핏감용 등에서 활어 등을 추가하고 인증품목 수를 112개에서 130개품목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명성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 만족과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최초로 연내에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표 110〉

제품별 가공공장 현황

(’05년말 기준)

구 분	계	해조류	절임식품	조미가공	건포류	기 타
공장수 (개소)	2,937	580	524	299	265	1,269

〈표 111〉

가공공장 및 가공품 생산량

구 분	’00	’01	’02	’03	’04	’05
공 장 수(개소)	4,984	3,484	3,388	3,008	3,87	2,937
생 산 량(천톤)	1,465	1,547	1,444	1358	1,529	1,559
평균생산량(톤)	293	444	426	451	495	530

※ 가공공장의 대형화 현대화 추세로 공장은 감소하는 반면 공장당 평균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수산벤처기업과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수산특정 연구 개발사업과 해양수산 벤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신지식인(95명)과 영어조합법인(986개소) 등을 대상으로 벤처 지정 및 창업 관심을 유도하고 각종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수산 벤처 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 6 장 수산기술개발 및 성장동력의 확보

제1절 어업인력 육성 등

1. 어업인후계자 육성⁸⁰⁾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6년도에 154억원(437명)을 5년거치 10년균분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분기1회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후계자의 단계적 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도경영인지원제도를 부활하여 수산업경영체의 발전모델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생산, 유통, 가공, 저장시설·장비 등에 1억원의 한도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112〉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합 계		'81 ~ '05		'06(p)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16,992	394,400	16,555	379,050	437	15,350
일반후계자	14,539	265,063	14,210	255,613	329	9,450
전업경영인	2,401	124,912	2,303	120,012	98	4,900
선도경영인	52	4,425	42	3,425	10	1,00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80)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2. 해기사 양성 및 수산기술 훈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2006년도에 112회에 걸쳐서 총 3,955명의 어선원을 교육훈련 시킬 계획이다.

주요 교육과정을 보면 “해기사교육과정(항해 및 기관)”에서는 2회에 걸쳐서 140명의 간부급 선원을 양성할 계획이며, “기초안전 교육과정”의 경우는 70회 2,070명을 교육함으로써 어선의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면허취득교육에 대해서도 40회에 1,335명을 교육시켜 지정교육기관 미 이수자나 필기시험 면제자 등에 대한 면허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며, 기타 연안·원양선 직무교육, 해양오염방지교육, 레이드교육, 승무원직무교육, 수탁승선실습 등 제반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GMDSS, 냉동 Plant, Engine Simulation 등 고가 첨단 훈련장비의 활용을 통한 실기교육의 활성화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산기술교육 및 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 어촌 정보화를 선도하고자 하는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업경영관리 전문지식·기술·정보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어업인교육은 10과정 51회 4,35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업인의 현장애로기술 능력배양과 상호 유익한 정보교환을 통한 현장애로 타개를 목적으로 8과정 12회 520명에 대하여 전업어가과정, 산업기능요원과정, 어촌관광가이드과정, 어업인현지방문교육과정 등이 운영되며

또한, 어촌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기술향상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원격수산기술교육/상담 33회 3,445명과 정보화 생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원격정보화과정 6회 390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2절 수산기술의 보급⁸¹⁾

1. 수산기술 보급 및 선진어업 경영체계 구축 지원

가. 수산기술 개발 보급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된 252명의 어촌지도·수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 현장에서 어업인이 필요로하는 현장중심의 수산기술을 적극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먼저 어업인 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해역 특성에 적합한 신소득원 개발을 위해 총 25개 과제(5억원)를 연구·교습어장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동시에 어업인 현장 견학·실습장 등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시기별로 굴·피조개·가리비·새고막 유생조사(108개 지점)를 실시, 적기 채묘예보를 통해 우량종묘의 안정적 생산과 원활한 종묘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요 양식단지에 대해 어장환경, 품종별 작황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과학적인 어장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4~11월 사이 적조 발생 우려해역 135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순회예찰을 실시하여 적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전국 31개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해양수산사무소에 「어병예찰진단반」을 설치·운영하여 증상별 원인·치료대책 강구 등을 강화하여 어병 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81)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나. 어업인 교육 및 홍보

해역별 주요 어업시기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기술교육, 연찬회(16회)등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기술보급과 어장관리요령, 해양수산시책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메스컴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양식기술의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선진어업경영 체제구축

국내 주요 주양식종인 넙치·전복·김·대하 등 4개 품종에 대해 360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표준소득을 조사·분석하여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분석자료집」을 발간 지방해양수산청(수산관리과) 및 해양수산사무소, 수산과학원 및 시·도 등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어업경영 진단·설계 및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수산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산청 보령해양수산사무소 청사 신축과 여수청 고흥해양수산사무소 기술지도선 신조(FRP 25톤급)로 수산기술보급의 기반을 확충하고, 어류질병·적조 예방·수질분석 등에 필요한 지도장비(26종 / 160백만원)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지도력을 겸비한 지역사회 지도급 인사 250명을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산기술보급사업에 자진 참여토록 함으로써 민·관 유대강화와 대 어업인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제3절 수산기술의 개발⁸²⁾

1. 해양 및 어장환경조사

가. 해양변동 예측

한국 연근해의 시기별, 해역별 해양변동을 지구 관측위성과 해양탐사선을 이용하여 조사·예측하고 해양변동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효율적 관리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예정이다.

나. 어장환경오염조사

우리나라 전국 연근해 해역을 중심으로 환경변화추이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연안해역관리 및 보전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건전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유해오염물질인 미량금속, 독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조사 및 이들의 오염경로를 구명하고, 종합적인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UNEP, IOC, IMO 등의 국제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해양환경 오염실태조사를 전국 연안의 107개 해역 346개 정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다. 적조예보 네트워크 운영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적조상황 파악을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연안 77개 정점에 대해 적조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청의 예찰반 활동 및 적조발생 통보를 종합하여 전국 적조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82) 국립수산과학원

라. 대형해파리의 대량발생 및 이용방안 연구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발생지를 일본, 중국과 공동 조사 중이며 이동 및 확산 경로 파악을 위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을 망라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가장 빠른 출현이 예상되는 이어도 기지에 해파리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처음 발견부터 이동·확산에 대한 예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2. 어업자원 조사 연구

가.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연근해 해역의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주요 어업자원에 대한 생물학적 조사와 자원동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서·남해 연안어업의 어업조정과, 수산시책 지원을 위하여 독도 주변 자원조사, 대게류 등에 대한 자원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 연근해 어업의 안정적 생산을 유지하고 어업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어업별 어장 정보와 어황 전망을 분석 및 어황변동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나. 원양 어업자원 조사

원양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국제적 어업 관리의 기초를 위해 원양 주요 어업 (트롤 등 6개 어업) 및 주요 어종 (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자원변동 및 생물특성 조사, 자원평가 및 자원관리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어업별 해역별 어종별 자원분포, 풍도변동 및 생태학적 특성 파악, 자원상태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등 18개의 국제기구 회의에 국별 자료로 제공하여 원양어장의 지속적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양어업 국내외 정책자료 및 조업선의 조업능률 향상 지원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3. 수산공학기술 개발

가.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UN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시행에 따라 국제적으로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 강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어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어구·어법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연근해 어장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 유효이용을 위해서 해양에 투기 또는 유실된 어구가 해양 중의 미생물에 의하여 완전 분해되는 환경친화적인 생분해성 어구·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개발된 생분해성 자망·통발 어구·자재의 강도 및 유연성 등의 물리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생분해성 복합섬유의 개선을 위하여 방사 및 연신 공정과정과 착색기술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나.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자원관리형 통발어구의 개발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실시한 수조실험에서 제시된 낙지 및 붕장어 어획용 통발에 대한 해상시험을 통해 어획성능과 혼획 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다 개선된 혼획저감용 통발을 개발할 계획이다.

트롤어구의 미성어 탈출장치의 개발은 산업화를 위해 어업인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을 위해 해상시험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서해의 꽃게 삼중자망은 홑자망, 삼중자망, 혼획저감용 자망의 어획효율 비교시험 뿐만 아니라 혼획률, 망목선택성 시험도 실시하여 서해 꽃게 자원의 지속 적어 용을 위한 자원 관리형 자망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개발

2006년도의 한국형 외해가두리 개발은 산업화를 위한 시작품을 설계하여 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태계 제어형 수중구조물 설계 기술 개발은 소규모 어항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기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수중구조물 설계에 중점을 두고, 수리실험에서는 축소 어항모형을 이용하여 파랑에 의한 월파량 및 방파제의 내구성 실험 실시하여, 방파제 형태 및 구조에 따른 피해 정도, 다양한 안벽구조물을 적용하였을 때 파랑에 대한 소파효과 및 방파제의 영향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라.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연안 해역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역 특성에 적합한 어초단체의 개발 및 각 어초단체를 이용하여 어떻게 단위어초를 구성할 것이며, 또한 이들 단위어초들은 어떤 형태로 어초군으로 만들어 어초어장의 기능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어초어장의 제반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연안역을 동해안, 서해안, 남해동부, 남해서부로 나누어 각 해역별 특성에 따라 연구항목을 차별화하여 수행하고 있다.

4. 양식기술개발 연구

가. 양식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양식산업 표준화 연구에서 조피볼락과 전복을 대상으로 양식규모별 양식경영 실태, 표준원가 계산 및 표준소득과 수익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 양식산업 안정화를 위해, 남해안 피조개의 인공종패 생산, 중간육성 및 추계살포 시험과 저해생물 제어기술 개발, 동해안 참가리비의 대량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생존율 향상시험 그리고 서해안 비단가리비의 자연종묘 생산기지 기반조성과 대량생산 양식기술 개발 및 양식단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백합과 바지락 치패 발생어장의 특성을 조사하여 이들을 대량 자연채묘 방법 연구와 함께 축제식 양식기술도 연구할 계획이다.

나.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지역 특산품종의 브랜드화와 특화 양식기술 개발을 위해, 동해안에서는 민들조개의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수하식 및 바닥식 복합양식 기술개발, 서해안에서는 양식 황복의 품질 고급화, 중간종묘를 대형 상품화하는 기술개발 및 독성조사, 꽃게 조기종묘를 이용한 축제식 양식기술 개발 그리고 남해안에서는 황점볼락의 대량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전 암컷 생산시험, 고등어의 성숙유도 시험 및 인공종묘 생산 기초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양식품종의 산업화를 위하여 강도다리와 대구의 대량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동갈돔돔의 종묘생산 기초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패류양식에서는 참굴의 품종개량을 추진

하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키조개의 성숙유도와 유생 사육조건 등 종묘 생산 기술개발과 패류 양식장의 미세조류 종 탐색 및 패류 유용 먹이 생물의 배양기술과 실용배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대하의 바이러스 무병(SPF) 어미새우 계열 구축, 무병 종묘생산 및 양성시험, 면역증강 유도시험, 흰다리새우의 중간육성 및 해삼과의 복합양성 시험, 꽃게의 조기종묘 생산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해조류 양식에서는 고생산성 및 내병성 strain 개발, 김 우량품종 탐색 및 붉은갯병 내성 strain을 탐색, 모자반 양식기술개발, 가공용도별 미역 선발육종 시험 및 다년생 해조류(감태) 종묘생산 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라.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난치성 질병의 조기진단 그리고 질병발생과 확산을 차단코자 양식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 모니터링과 주요 피해 질병에 대한 감염유무 조사, 질병 진단을 위한 표준화 기법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효능 질병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천연물질에 대한 약리효능 탐색과 식품위생상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다양한 약물간의 첨가제 또는 항생제의 병용 등 복합제제의 개발로 상용 화학요법제의 치료효과를 상승시킬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계획적인 예방백신 프로그램 개발, 실용화 유도 및 항원성이 높은 어병세균 항원 발견으로 숙주세포와 상호작용을 하는 새로운 타겟을 규명하여 혼합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며, 어업인에게 양질의 어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마.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해양생물 유용 발현유전자의 확보 및 유전자발현체계를 이용한 우량 품종개발시스템 확립과 양식생물 폐사원인 구명을 목표로 유전체 연구를 통한 주요 양식생물의 발현유전자를 대량 염기서열 분석하여 D/B화 하고, 해양생물 유래의 다양한 신기능 유전자에 대해 기능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유용 수산생물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어류, 패류 및 갑각류(도루묵, 전갱이, 고등어, 키조개, 대하 등)에 대한 유전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총 85종 500여 계통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확보 D/B화 함과 동시에 국내 고유 유전자원의 관리를 위한 유전자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바.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국제 경쟁력이 유지되는 뱀장어와 무지개송어의 친환경적 고밀도 양식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한국형 순환여과 시스템의 개발 연구를 계속하고 수정란의 부화율을 높일 실내 고밀도 인공부화기 개발과 인위적인 무지개송어 성숙시기 조절로 년중 생산 시스템화, 전암컷 무지개송어 대량생산 보급 기틀마련, 정자보존 기술개발로 산천어의 종묘생산 문제점 개선 등 담수어 양식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5.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가.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수산식품에 대한 국민보건 위생안전 확보 및 외국과 체결한 『수출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위생협정』 이행을 위하여 기 설정된 “수출용패류 생산지정해역” 7개 해역에서 지속적인 위생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경남 통영시 용남·광도해역 및 충남 서천군 비인만 해역에 대한 지정해역 타당성 확인을 위한 위생조사를 실시하고, 충남 태안군해역에 대하여는 지정해역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패류위생관리운영실태”에 대한 한·미 합동 평가를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미국 FDA 등록 패류가공공장·패류위생관리 업무수행 실험실·패류위생관리행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나. 수산식품 위생안전위해관리 연구

연안 패류 양식장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 및 설사성 바이러스의 모니터링으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보건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자연해수와 전기분해 해수를 이용한 패류 정화특성을 구명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산용 항생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 항생제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암피실린 및 아목시실린에 대한 적정 휴약기간 설정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에 함유된 해양생물독소에 대한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안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 대한 패류독소(마비성·설사성·기역상실성 패류독소) 및 연안산 고등류 독소(테트라민) 조사를 실시하고, 설사성패류독소의 허용기준 및 규격 설정을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LC-MS 분석법을 확립하고자 한다.

6. 어선건조 및 장비·설비 현대화

가. 친환경 어선 건조

2006년도 친환경어선 대체사업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 등을 위해 8억원을 투입하여 33.34톤의 노후어선을 친환경 재질의 알루미늄 어선으로 대체 건조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알루미늄 어선 건조에 한하여 지원되며,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2006년까지 추진되고 2007년 이후부터는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나. VHF(DSC) 무선설비 지원

2006년도 VHF(DSC) 무선설비 지원사업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조업 도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선박안전법상 무선설비 설치대상인 5톤 이상 어선 중 VHF(DSC) 무선설비가 미비된 어선으로서,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5톤 미만 어선에 신규로 설치코자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척당 1백만원에 지원된다.

다. 어선 기관대체,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등 지원

연료 소모가 많고 고장이 잦은 저효율 노후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2006년도에 수산발전기금에서 7억원을 투입하여 6천 마력을 대체할 계획이다.

노후된 항해·어로장비, 냉동·냉장설비 및 거주설비 등을 개량하여

조업능률 향상과 어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2006년도에 3억원을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어업인의 어선용 기계구입 부담을 줄여 조업능률 향상과 안전조업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에는 어선용기계 총 50대를 기계 1대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표 113〉 2006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보조	용자	소계	자담
합 계			2,945	400	1,836	2,236	709
소 계			1,400	400	600	1,000	400
농특	○친환경어선건조	33.34톤	1,000	200	600	800	200
	○VHF무선설비	400대	400	200	-	200	200
소계			1,545		1,236	1,236	309
기금	○어선 기관대체	5,594마력	895	-	716	716	179
	○장비·설비개량	8척	400	-	320	320	80
	○어선용기계공급	50대	250	-	200	200	5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

제4절 수산특정연구개발⁸³⁾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WTO체제 출범, 국가간자유무역 협정(FTA) 및 한·중·일 EEZ선포 등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수산업을 21세기 첨단해양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 국·공립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2006년도에는 학계·연구기관·산업계·행정기관 등에서 수요 조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서 평가·선정한 기획과제와 함께 자유공모과제를 모집하여, 실용성이 있고 산업화가 가능하며 수산기술개발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도에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비 6,150백만원을 확보하여 수산기술개발(현장애로 및 첨단기술개발)과제로 “어선연료비절감을 위한 저급유 사용시스템 표준화 등에 관한연구” 등 총 76개 과제(신규사업 22과제, 계속사업 54과제)에 사업비 5,76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114〉

2006년도 과제수 및 예산현황

(단위 : 천/백만원)

합계 (A+B+C)		계속과제 (A)		신규과제						비고 (운영비) (C)
				소계 (B)		기획과제		자유과제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76	5,765	54	3,989	22	1,550	7	670	15	880	226

※ 전년도 과제중단 및 협약변경에 따른 예산잔액 115백만원 금년 예산에 포함

83)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제5절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⁸⁴⁾

1. 일선수협⁸⁴⁾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가. 일선수협 경영평가

일선수협의 순자본비율 및 경영상태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대해 지정·해제 및 강력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선수협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분기마다 적기시정조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미이행시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체결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일선수협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MOU 이행사항을 점검, 미이행시 기지원된 자금에 대한 회수는 물론 임직원⁸⁴⁾에 대한 신분상 제재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경영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경영개선자금 추가지원 및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갱신

2002년 9월말 일선수협 경영진단시 매각대상 고정자산이 아니었으나, 이후 MOU 약정체결에서 매각대상 고정자산에 추가되어 매각손실이 예상되는 18개 조합에 대하여 총 194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이자(연간 14억원씩 5년간 총7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자금지원과 동시에 체결된 MOU에 대해 협동조합 경영주체로서 각 조합의 사업기반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특히 MOU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과 그렇지 못한 조합에 대해 차별화를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강력 추진하고자 '06년 및 '07년 MOU 목표를 조합과 갱신 체결할 계획이다.

8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다. 부실조사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자금지원을 받은 조합에 대한 철저한 부실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부실에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조합 경영진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조합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라. 현장 중심 경영지도 및 경영지도역 인력 Pool 구성

경영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이 하락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및 MOU 목표를 미이행한 조합 및 신임 조합장이 취임한 조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경영현황을 파악하여 부실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여 현장중심 경영지도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실조사 및 회계지도와 연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조합의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합 자체적으로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금 사정 악화 등 업무통제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지도역 POOL을 구성, 부서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적시에 경영지도역을 현지에 파견하여 부실을 조기 차단할 것이다.

2. 신용사업의 「OK ACE 0506」 2차년도 운동 전개

「OK ACE 0506」은 「Ocean Korea 21」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해양금융 진출로 2010년 동북아 해양금융의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기로 삼고자 임직원의 혁신 Mind 구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는 중장기 경영혁신운동으로

첫째, 정부의 해양부문정책에 대한 민간금융파트너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해양·항만 관련 정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둘째, 수산업·어업인을 위한 수산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생산자 중심 수산금융에서 가공·유통·소매업 등으로 가치 확대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수산금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셋째, 자금운용 성과 극대화과 비이자이익 증대, 자산건전성 강화 및 위험관리 선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경영관리 시스템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3. 수협 혁신방안 추진

수협은 2006년도를 혁신추진 2년차로서 지난해에 조성된 혁신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혁신의 내실을 다질 계획인데, 2006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2005년도에 도입된 성과관리시스템(BSC)의 평가결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적극 도모하고, 어업인의 원만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신신용평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무자격 조합원 과다보유 조합 및 민원 과다발생 조합 위주로 정비를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선급금 등 경제사업 채권에 대한 상시감시 업무를 전산화하고, 전국 상호금융 점포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여 일선수협 상호금융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부실 일선수협에 대한 책임컨설팅을 위한 경영지도역(관리역) Pool을 구성 운영하고, 경영성과가 탁월한 조합에 대한 포상 및 우수사례 전파 등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 7 장 국제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제1절 국제수산기구 및 양국간 협력 강화

1. 국제수산기구 협력⁸⁵⁾

2006년도에는 『유엔해양법협약(1996년 11월 발효)』,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2001년 12월 채택)』, 『책임 있는 수산업규범(1995년 10월 채택)』, 『편의국적선금지협정(1993년 11월 채택)』 등 국제어업질서의 근간이 되는 국제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지속적인 원양어장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국제수산기구는 물론, 우리와 관련된 지역수산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그 동안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0년 5월 7일부터 실시중인 “어획증명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왔으며, 향후 남극수역에서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우리 어선들의 시험조업을 계속 권장할 예정이다.

CCAMLR가 세계 수산선진국이 대거 참여하여 남극에서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기구임을 중시하여, 동 위원회의 각종 실무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히 2005년~2006년 기간은 한국이 CCAMLR의 의장국인 만큼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85)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또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에서도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각종 과학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최근 조업실적 부진으로 우리나라에 할당된 어획쿼터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쿼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004년 6월19일 설립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수립 논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핵심국과 양자간 회담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가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가국들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수산기구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수역인 대서양의 연승어선에 의한 참치조업은 199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동 수역에서는 어획실적 위주로 국별쿼터(INQ)를 할당받고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어획쿼터의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조업이라도 이루어지도록 원양업계에 조업참여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에 터키정부와의 수산협력을 통해 터키 선망어선 2척을 용선하여 축양용 참다랑어 700톤을 어획한 바 있으며, 2005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참다랑어 1,000톤을 어획하였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회의에서는, 동 협약수역내 대만 등 비회원국들의 조업활동 강화로 우리어선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되는 점을 감안, 일본 등 입장을 같이 하는 조업국과 함께 비회원국들의 조업규제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수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자원감소에 따른 채산성 있는 쿼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

원 회복 시 적정 쿼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주시할 예정이며, OECD, APEC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보존협약(CBSPC)』 수역에서도 최근 명태자원의 수준이 조업재개에 필요한 167만 톤에 크게 미달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본·중국 등 조업국과 연계하여 현행 자원량 수준에서 국별쿼터(INQ)를 정해 우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 국별 2척으로 되어 있는 시험조업척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연안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NPAFC)에 2003년 5월 가입한 후, 연어모천국 지위를 확보하고 방류연어 회유경로 파악 등 과학조사에 여타 회원국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어양식 등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최근 우리 다랑어연승어선이 조업 중인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에서 그 동안 규제를 취해 오지 않았던 연승어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눈다랑어에 대한 2004~2006년간 어획량이 2001년에 어획한 양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바,

기존 14개 회원국들의 사전 가입 동의를 확보하여 2005년 12월 가입을 완료하였다. 특히 금번 제74차 연례회의를 6월중 부산에서 개최되는 바, 유익한 회의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⁸⁶⁾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근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조업수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 확대를 경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일, 한·중, 한·러 어업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적정한 어획쿼터를 확보함과 아울러 조업수역 등 조업조건 개선에 적극 추진하고, 한·중·일 3국간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원양어선의 주요 입어국인 러시아, 중서부태평양 제도서국,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 등에 대해서는 고위급 수산당국자의 초청, 수산과학·기술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어업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킴과 아울러,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해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도에 약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안개도국의 미개발·저이용 수산자원을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연안국에 대해 2억 5천만원 상당의 물자를 공여할 계획이다.

86)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표 115〉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현황

구 분	체 결 일	발 효 일	비 고
중 국	'00. 8. 3.	'01. 6. 30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일 본	'98. 11. 28.	'99. 1. 22	6개월전 통보로 종료
파푸아뉴기니	'92. 1. 25.	'92. 4. 15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러 시 아	'91. 9. 16.	'91. 10. 22	6개월전 폐기통보 없을 시 매 1년씩 연장
에쿠아도르	'84. 5. 22.	'84. 9. 19	6개월전 통보시 종료
모리타니아	'84. 1. 7.	'84. 1. 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호 주	'83. 11. 23.	'83. 11. 24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프 랑 스	'80. 9. 19.	'80. 12. 19	3개월전 통보시 종료
키리바시	'80. 12. 18.	'80. 12. 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솔 로 몬	'80. 12. 12.	'80. 12. 12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쿡아일랜드	'80. 8. 25.	'80. 8. 25	3개월전 통보시 종료
투 발 루	'80. 6. 18.	'80. 6. 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이 란	'77. 5. 11.	'78. 4. 1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가. 한·일 어업협정⁸⁷⁾

한·일 양국은 2005년 12월 24일 서울에서 「제8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양국 EEZ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1,050척, 63,5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2006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양국이 각각 지난 해 보다 3,500톤씩 감소하였으나 우리의 주력업종인 연승, 중형기선저인망, 선망, 오징어채낚기, 꽁치붕수망어업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시켜 우리의 실익을 도모하였다.

87)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한편, 일본은 조업금지기간 및 조업금지수역 확대와 어구부설규제 도입 등 조업규제를 대폭 제안하였으나 양국 어업협력 측면을 설명하여 조업금지기간 최소화, 선망의 1어종 어획상한제 폐지, 어장입역시간 단축 등 조업조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어선간 안전 조업질서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어선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자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7년도 어업교섭 대책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어획할당 대상어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하고, 어업별 조업실태 조사결과와 관련 어업인·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력어종(어종) 위주의 어업교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표 116〉 2006년 한·일 양국 EEZ 입어동향

(단위 : 척, 톤, %, 2006년 5월 9일 기준)

구 분	합 의 사 항		어 획 실 적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국어선	1,050	63,500	679	7,809	12.3
일본어선	1,050	63,500	101	1,715	2.7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나. 한·중 어업협정⁸⁸⁾

한중 양국은 2006년도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하여 2005년 12월 7일 중국에서 제5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담에서 우리어선의 중국EEZ 입어규모는 1,600척 68,000톤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였고, 중국어선은 금년보다 125척 4,600톤이 감축된 1,975척 72,900톤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감축된(125척) 중국어선중 어획강도가 높은 타망어선(100척)을 주로 감축 시키는 한편 우리측은 우리 어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자망 및 낚시류 어선 36척을 추가 확보했다.

그리고 양국간 입어규모의 균형달성을 위해 2009년까지 중국어선의 입어척수를 1,800척, 어획할당량 70,000톤 수준으로 감축시키기로 하였으며, 2010년 이후의 입어규모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5년부터 2,000척 수준에서 대체적 균형을 이룬다는 2001년도 합의의 틀을 깨고 향후 실질적 균형을 위한 진전을 이뤘다.

특히 어종별 어획할당제 도입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우선 내년에는 동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 전문가 교환 방문 하는 등 관련실태를 파악키로 하였다.

또한, 한중 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2006년부터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조사 방법을 교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동 수역에 대한자원관리의 보호 및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공동자원관리를 위한 첫 걸음을 딛게 되었다.

88)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특히, 우리측은 중국측에게 서해특정금지구역을 비롯한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하게 촉구하여 서해특정금지구역 주변 해역을 감시하는 중국 어정선의 활동내역을 수시로 통보받고 공조 단속체제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우리해역에 대한 입어를 배제키로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양국 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상호방문 및 교차승선과 어업지도선의 상호교류를 '06년 상반기부터 추진하여 하는 등 양국간 어업협력 및 우호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표 117〉 2006년 한·중 양국 EEZ 입어동향

(단위 : 척, 톤, %, 2006년 4월 말 기준)

구분	합 의 사 항		어 획 실 적		
	척 수	할당량	척 수	할당량	소진율
한국어선	1,600	68,000	193	1,872	2.6
중국어선	1,975	72,900	629	2,309	3.2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다. 한·러 어업협정⁸⁹⁾

한·러 양국은 2006년도 어획쿼터 할당 및 입어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제15차 한·러 어업 위원회를 개최하여, 명태 20,500톤, 오징어 6,000톤, 대구 2,650톤, 꽁치 2,500톤, 가오리 600톤, 청어 250톤, 복어 200톤 등 총 32,700톤의 쿼터를 확보하였다.

89)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러시아 측은 자국 EEZ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총허용어획량을 감축하고, 외국정부에 할당해온 정부쿼터를 축소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명태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04년도 양국 정상간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어선의 안정적인 쿼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오호츠크명태 자원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조업규제소위원회 및 수산물교역정보교환회의 등 어업협력회의시 우리어선의 조업과 연계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 4/4분기 중 모스크바에서 개최예정인 제16차 한·러 어업 위원회에서 내년도 어획쿼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며, 민간차원의 어업협력사업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118〉 2006년 러시아 EEZ 조업 계획

(단위 : 톤, 척)

어종별	조업수역	쿼터	조업기간	조업척수	어구
합계		32,700톤		166척	
명태	북서베링해	20,500톤	1. 1 ~ 2. 28, 5. 16 ~ 12. 31	12척	중층트롤
대구		75톤			
청어		250톤			
대구	북서베링해	2,575톤	4. 10 ~ 11. 30	4척	저연승
가오리		600톤			
꽂치	남쿠릴	2,500톤	7. 15 ~ 10. 20	18척	봉수망
오징어	연해주	6,000톤	5. 1 ~ 10. 31	132척	채낚기
복어		200톤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3. 남북수산협력⁹⁰⁾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6.6.3~6)에서 수산분야 「남북은 수산협력 실무협의회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제8항)」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2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개최되면 동해 공동어로 실시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등을 통해 남북수산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공동어로수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인공위성 감시시스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06.6월~12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남북수산협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06년 하반기에도 3회에 걸쳐 남북수산협력포럼을 개최하고 북한전문가 및 우리 어민들과의 정보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다 일관된 남북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수산협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남북수산협력의 미래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90)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제2절 원양어업 육성⁹¹⁾

1.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가. 참치어업

우리나라 참치어업은 선망어업의 경우 주로 남태평양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승어업은 남태평양 이외에도 서부인도양, 중부대서양(지중해포함)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양 남부(남위40°~45°)에서는 남부참다랑어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를 비롯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등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 강화 등으로 참치어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을 강화하고 남부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등 국제수산기구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치어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나. 오징어어업

우리나라 원양오징어어업은 남서대서양, 뉴질랜드, 페루수역을 주 어장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남서대서양의 포클랜드 위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빨강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북태평양 유자망어선이 UN결의에 따라 1993년 1월 1일부터 조업이 중지됨에 따라 페루 등 수역을 대체어장으로 개발하였으나, 최근 어획부진 및 조미가공용 오징어의 수요감소 등으로 출어를 기피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 시장의 확대, 미개척 어장 개발 등 어업경영 안정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1)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다. 트롤어업

(1) 북양트롤어업

북양트롤어업은 명태를 주 포획대상으로 러시아 EEZ에서 조업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명태자원의 감소와 자국어업인 보호를 이유로 전체 TAC와 외국쿼터배정량을 축소하고 있고, 위성자동위치발신기 부착·치어보호망 부착·오퍼 승선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러시아 측은 2001년부터 민간간 협의에 의해 확보해 오던 민간 쿼터를 자국민에게 우선 입찰을 실시하고,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에게 입찰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입찰제”로 제도를 변경하여, 민간쿼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04년부터 쿼터배정방식을 “국제입찰방식”에서 자국 업체별로 과거 조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5년간 고정된 “산업쿼터”를 배정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이 러시아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정부간 협정에 의한 조업쿼터 확보가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금후 명태 트롤어업의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한 수산외교를 강화하여 어업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2006년 12월 제16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하여 우리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에 필요한 정부쿼터를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와 외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쿼터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할 계획이다.

또한 합작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러시아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러시아의 일방적 조업규제에 대한 우리 조업선 보호를 위해 조업규제 소위원회에서 조업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간협력사업 및 수산과학

기술 분야 교류확대 등 양국의 어업협력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해외트롤어업

뉴질랜드수역과 인도네시아수역을 중심으로 조업중인 태평양 트롤어업은 최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정책에 따라 어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기존어장의 지속적 유지확보와 병행하여 남태평양 동부 공해 “전쟁이” 어장 개발 등 새로운 어장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부아프리카 및 앙골라수역, 남서대서양공해 및 포클랜드수역에 조업중인 대서양 트롤어업은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업협정 체결 등을 통한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2. 원양업체 경영 지원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양어업의 경영안정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74년부터 원양 출어경비 일부를 영어자금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연근해어업과 달리 원양어업에서만 특별히 소요되는 입어료, 항만 제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용자금인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2004년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명칭 변경)’을 신설하였으며,

원양어업 출어자금 운용규모는 2004년도에 3,220억원(원양어업경영자금 2,070, 영어자금 1,150), 2005년도에는 590억원 감소한 2,630억원(원양어업경영자금 1,480, 영어자금 1,150)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350억원 감소한 2,280억원(원양어업경영자금 1,480, 영어자금 800)을 원양어업출어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3.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 410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이 240척으로 노후선 비중이 58%에 이르고 있고, 선박 노후화는 경영비 상승은 물론 냉동능력 저하에 따른 어획물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제품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양어업중 참치연승어업은 주로 횡감용 참치를 태평양 중서부, 인도양에서 연간 5만여 톤을 생산하여, 4만여 톤을 수출함으로써 원양어획물 수출액의 약 53%를 점하고 있는 수출주력업종이며, 또한 참치류의 자원은 대체로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등 조업여건이 타 업종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

위와 같이 원양어업 중 경쟁력이 있고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참치어업을 주력업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수산발전기금에서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사업비를 반영하여 2004년도에 선망어선 1척의 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 및 폐지 이전에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6년도에는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유가급등 등에 따라 원양업계의 재산성 악화로 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대체사업의 발굴 등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4. 해외 신어장 개발

최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정책과 공해 조업규제 등 국제 어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들어 공해 수산자원 관리는 공해자유

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역 수산기구의 분할 관리시대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에서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유지하고, 공해어장에 대한 장기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외어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제질서에 부합된 환경친화적인 어구·어법개발, 첨단 장비를 통한 정확한 자원량 파악 등 종합적인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한 해외어장 자원조사 예비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원양트롤어선 1척을 투입하여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수역의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연근해 어장의 축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 통발어선의 해외어장개발을 위하여 마샬수역의 자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자원조사 수역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향후 자원조사 예상수역에 대한 예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04년도에 수립한 “해외어장개발에 관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2005~2007년간 7억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해외어장 정보관리 및 조사를 위한 해외어장종합정보시스템을 국립수산과학원내에 구축하여 원양업체들에게 종합적인 해외어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연안국과 입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전 어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어장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 8 장 WTO/DDA, FTA 협상 대응

제1절 WTO/DDA, FTA 협상 추진⁹²⁾

1. WTO/DD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가. 협상동향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쿤)가 결렬된 이후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2004년 3월 들어 재개되었고, 2004년 7월에 DDA 협상 전반에 대한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협상기본골격(framework)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합의되었다.

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홍콩)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협상세부원칙(modality) 타결에는 실패, 2006년 4월 세부원칙 마련과 2006년 7월 국가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2006년말 협상을 타결한다는 일정에 합의하였으나, 각 진영간 이견차가 지속되어 결국 라미 WTO 사무총장은 2006년 7월 DDA 협상중단을 선언하였다.

(1) 수산보조금

협상 중단 이전에는 2006년 7월 의장의 협정문안 도출을 목표로 문안에 근거한 협상(text-based negotiation)이 가속화 되어 왔으며, 금지/허용보조금의 범위, 개도국 특별대우(S&D), 소규모 어업, 금지보조금의 유예기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수산보조금 금지범위와 관

92) 해양수산부 자유무역대책팀

련하여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수산물 수출국(FFG ; Fish Friends Group)들이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은 보조금의 성격, 어업관리 및 자원상태 등 관련 요소를 감안하여 개발보조금의 자원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지할 것을 주장하여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우리측의 적극적 협상대응으로 2006년 6월 회의를 기점으로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는 잠정적으로 저지된 것으로 평가되나, 수산보조금 금지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수산물 시장접근

2003년 9월 제5차 각료회의(칸쿰) 합의 실패 이후 소강상태였던 본협상은 2004년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으며, 협상의 기본틀(framework)은 제5차 각료회의시 작성된 데베즈 안(Derbezh Text)를 기초로 논의되었다.

동 데베즈 안(Derbezh Text)은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민감한 균형을 갖추고 있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문안을 추가하여 2004년 8월 1일 협상 기본틀(framework)로서 합의되었으며, 구체적인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협의 및 분야별 무세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현재 공식계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으로 협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나, 각국의 정치적 합의에 따른 극적인 회생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WTO 수산물 시장접근에서 관세인하는 비선형(non-linear) 방식으로 하되, 이중계수 구조의 스위스 공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분야별 무세화는 자발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수렴되

고 있으며, 향후 협상 재개시 대상분야 선정과 절차 등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WTO/DDA 협상은 농업, 비농산물, 규범 등 7개 그룹의 협상이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산물이 포함된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분야의 협상진전 여부는 여타분야의 협상진전, 특히 농업협상의 진전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나. 협상대응방안

향후 우리나라는 WTO/DDA 수산분야 협상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수산부문 협상대응을 위한 공무원, 연구기관, 학계, 어업인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된 「WTO/DDA 협상대책단」을 지난 1999년부터 운영하면서 협상전략의 투명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

대외협상과 관련,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특별규제가 불가피하므로, 규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 되고 유예기간 및 단계적 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는 것 외에도 공조세력을 다변화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뉴질랜드 등 입장이 반대되는 국가는 개별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이 WTO/DDA 협상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수산보조금 지원의 틀을 WTO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우리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협상타결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수산물관세의 경우는 협상재개시 수산물이 무세화(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수산물 무세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전체 입장과 보조를 같이하여 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 방식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수산분야가 포함되어 무세화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우리 수산업의 영세성 등 국내적인 어려움 이외에 수산물 무세화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은 식량자원과 관련된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항이며, WTO를 발족시킨 마라케쉬협정 전문 및 WTO/DD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한 도하각료선언문에 명시된 관세철폐는 그로 인한 초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도한 어업을 유도하여 천연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많아 인류에게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에서도 일부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추진은 오히려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즉, 직업전환이 어려운 개도국 어민들은 무관세로 인한 어가하락을 어획량으로 보충하기 위해 어획노력을 증대시킬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자원고갈을 촉진시키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한편, 대부분의 최빈 개도국들은 직접 어획하여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3국에 입어를 허용하여 자국 수산자원만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측면에 있어서도 수산물에 대한 완전 무세화가 소비자의 일시

적인 후생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장기적 소비자 후생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세인하 공식 적용시에도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신축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러한 신축성의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축률 적용 및 관세인하 기간의 연장 등을 들 수 있으나, WTO 체제 내에서 이러한 신축성은 기본적으로 개도국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어 향후 협상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2. FTA 추진전망 및 대응방안

가. FTA 추진 전망

WTO 도하라운드 협상이 합의 도출 없이 결렬됨에 따라, WTO 다자 합의 과정의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추진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2006년 현재 약 197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통보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WTO 출범('95) 이후 체결되었으며, 세계 총 무역 중 지역협정 내 무역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 동남아와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삼각구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확대, 경제적 효율성 증대 및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무역협정 역외국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FTA에서 소외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국민소득 2만\$ 경제, 동아시아 핵심국가 도약의 정책도구로 활용하고자 전략적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2002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협정이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협정이 발효되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FTA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FTA 협상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 협상이 시작되었고 중국·EU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이 논의중에 있어 향후 FTA체결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 FTA 추진동향

정부는 전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비하여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 로드맵을 정하여, 단기적으로는 일본·싱가포르·아세안·EFTA(유럽자유무역연합)·멕시코 등과의 FTA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한편, FTA 추진체제 구축 및 대응강화를 위해 FTA 추진위원회 및 FTA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협상에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한·일 FTA 및 한·싱가포르 FTA를 추진하였다. 한·싱가포르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2004년 초에 시작되었고 2005년 8월 협정이 체결되어 2006년 3월 발효되었으며, 일본과의 FTA는 2003년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정상이 2005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한·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말 까지 6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

나 상품개방의 수준, 특히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계획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현재 협상이 중지된 상태이다.

한편,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는 2005년 협상이 체결되어 2006년 9월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아세안, 인도, 멕시코 등 5개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협의중에 있다.

다. FTA 대응방안

FTA 수산분야의 협상대응을 위하여 어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최적의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수산분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상에 대응하고 있으며, FTA 협상의 전 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들을 예측하고 자료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협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업인들이 협상결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설명회, 어업인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대책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협상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FTA 체결에 따른 무역자유화로 인해 취약산업에 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이익계층과 피해계층간의 이해조정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에 따라 농·어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의 제·개정과 소요재원의 확보 등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Ⅳ편 수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 1 장 수산업 중장기 비전⁹³⁾

2016년 미래국가해양전략에 따른 OCEAN G5 비전을 기초로 수산업을 종래의 사양산업에서 재성장산업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수산의 G5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 회복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자원회복 정책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 어선 자동화 기술개발을 통한 인력수요 저감 및 외국인 노동력 활용 방안 등 어선어업의 비용절감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어소비패턴 개발, 해외 판로개척 및 어가에 대한 생산량 및 수요량 예측 정보제공기능 강화를 통해 어류 양식업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이와 병행하여 대중국수출 확대 및 비용절감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수산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의 브랜딩 및 산지가공 육성, 원산지표시제 강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산 수산가공품 소비촉진, 품질인증 규제강화를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민복지수준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조를 통해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 어민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어촌관광사업 지원을 통한 어업의 소득 발굴 지원 및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촌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3)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표 119〉 수산의 G5 전략목표

	As-Is (2005)	To-Be (2016)
위 상	사양산업	재정산업으로 Repositioning
가공산업구조 (업체당 생산량)	415톤	710톤*
어가소득**	70%	100%
어가인구	210	150***
경제적 부가가치 (조원)	4.4	5.5

*일본 수산물 가공업체의 2106년 업체당 생산량 전망치
 **도시근로자 대비 어가소득 수준
 ***어가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향후 10년간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될 시의 인구규모, KMI추산

〈표 120〉 수산분야 OCEAN G5 로드맵

	2006 ~ 2007 (실행준비기)	2008 ~ 2012 (도약기)	2013 ~ 2016 (완성기)
어선어업	·자원회복정책 효과성 검증 ·비용절감정책 검토	·효과적인 자원회복 정책 추진 ·산지가공 및 브랜딩 강화	·지속가능한 고부가 가치 어선어업 실현
양식어업	·어류 양식업 수급 조절기능 강화 ·비용절감정책 검토	·대중국 수출강화 ·맞춤형 양식 생산 체제 확립	·수출중심의 고소득 양식어업 실현
가공업 경쟁력강화	·민간중심의 구조조정 유도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방안 수립	·마케팅/R&D 역량 개선 유도 ·수산가공품 소비촉진 지속 시행	·세계적 수준의 수산물 가공업 실현
어민 복지개선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 ·부처별 어민복지지원 정책 현황분석 및 중점 지원영역 설정	·어촌관광 운영지원 ·부처간 협조강화로 효과적 어민복지정책 시행	·체험형 어촌관광 정착 ·쾌적하고 안락한 어촌 공동체 실현

제 2 장 WTO/DDA,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강화

제1절 WTO/DDA,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⁹⁴⁾

1. 추진방향

WTO/DDA 협상이 잠정 중단('06. 7월 말) 된 것에 비해, 한·미 FTA는 '06년 5차례 협상이 예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WTO/DDA 및 FTA 국내대책은 주로 한·미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방향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 수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국내대책을 마련, 수산정책의 기초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 이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현장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전략과 국내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협상 및 대책수립 과정을 널리 홍보하여 시장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아갈 방침이다.

2. 세부추진계획

가. 주요 어종·업종별 경쟁력 실태분석 및 지원대책

협상 타결 전·후의 어종별 경쟁력을 산출(무역특화지수, 수익성 지표, 생산성 지표 등) 하고 이를 업종별로 전환하여 업종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로 지원대책을 차별화 할 계획이다.

94) 해양수산부 통상협력팀

원양어업은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확대·발전시키고, 해외어장 및 어획쿼터의 안정적 확보, 어선의 현대화 및 유류비 등 어업경비 절감 등을 추진하고, 연근해어업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회복, 구조개선, 자율관리 및 친환경 어업의 확산 등을 추진하며, 양식어업은 고품질·고수익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종묘생산 기술 및 사료 개발, 질병·재해 예방과 구조개편 등의 추진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다.

나. 기술개발을 통한 수산물 수출 증대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참치통조림(35%) 등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유통구조 개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에 대한 개발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수산벤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6년 5월중 「기술보증기금」과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체계적 수산자원관리 추진

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확대('01: 63개소→'06: 442→'09: 2,000)하고, 10년 후 자원량 1,000만톤('05년 790만톤), 어획량 150만톤('05년 110만톤) 달성을 목표로 자원회복계획('01: 4종→'07~'10: 29→'11~'15: 40)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라. 기타 어업 외 소득창출 방안 등 다양한 지원대책 강구

어촌이 수산물 생산은 물론, 유통·소비의 중심적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지원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어촌 정주환경을 도시민 관광수요와 연계하는 『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WTO 체제에서 허용 가능한 보조금을 FTA에 영향 받는 어업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어장정화, 친환경사료 공급 등) 할 계획으로 있고,

수산부문 직불제는 농업 직불제와 외국(EU : 재해보상, 실업지원, 휴어보상 직불제, 일본 : 이도어업재생교부금)의 직불제 관련 사례를 검토한 후, 공청회 및 도상연습 등을 통해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1~2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지역, 어업인, 업종을 특정하여 우선 실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마. 어업인 전업방안 및 수산물 브랜드화

어업인력의 고령화와 지역적 고착성 등으로 전업방안 추진이 쉽지 않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업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하고, 또한 지역 수산물 중 상품화 및 브랜드화가 가능한 수산물을 엄선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 수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및 운용 개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특별법」의 제정('04. 3)으로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피해지원이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하나 '06년 현재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WTO/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수산발전기금의 적정 재원규모를 산출, 지원사업의 내용과 연계하여 신규 재원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책임강화, 금리구조 변경, 지원대상자의 확대 등의 수산발전기금 운용 개선방안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법령 제·개정 등

WTO/FTA 협상에 따른 체계적 피해지원과 수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일관된 노력 집결을 위하여 가칭 「수산업 등의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할 계획인 바, 동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업 구조조정의 범위와 이를 위한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수산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한편, 지난 '04년에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수산부문의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확대를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중 지원대책 관련 투·융자계획 수정

WTO 및 FTA 협상체결에 대비하여 '04년 1월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업자원관리, 생산구조개편 등 7대 과제에 10년간 ('04~'13) 총 12.4조 원에 달하는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향후 협상 추이와 이에 따른 어업인 지원확대 필요성을 검토하여 종합대책상의 주요 정책과제와 투·융자 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인 바,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으로 있다.

〈표 121〉

수산업·어촌투·융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연도 2004	2005~2009						'10~'13	'04~'13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9,656	55,822	10,176	10,586	10,981	11,612	12,467	58,963	124,441
생산기반 조성	4,426	23,494	4,394	4,681	4,684	4,721	5,014	24,716	52,636
유통개선	1,153	7,537	1,307	1,575	1,538	1,670	1,447	6,825	15,515
기술개발및 인력양성	369	2,180	433	444	418	438	447	2,429	4,978
부담경감 및소득보전	3,066	18,308	3,340	3,223	3,539	3,848	4,358	19,382	40,756
해양환경	617	3,199	655	603	623	650	668	3,864	7,680
수급안정 기타	25	1,104	47	60	179	285	533	1,747	2,876

5. 의견수렴 및 홍보체계 정비

WTO/DDA 및 FTA 협상 타결 이후 예상되는 수산업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국내대책 연구용역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 민관합동 협상대책단이 WTO 등 국제협상의 동향에 따라 현안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으로 WTO/DDA 및 FTA 협상에 적기 대응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대 국민 홍보는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전개하고자 하는데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홍보체제를 가동하며, 이와 함께 어업인, 수협, 업·단체 관계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오프라인 홍보 외에도 최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부처 최초로 통합 전용홈페이지를 구축('06. 7, <http://wtofta.momaf.go.kr>) 하여 인터넷홍보체제를 갖출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책고객 확보를 통하여 PCRM, 뉴스브리핑 등의 홍보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2절 수산자금 공급 확대⁹⁵⁾

1. 영어자금

2006년 영어자금 공급규모는 지난해 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총 1조 5,0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확대에 따른 재원은 수협 예수금 등 금융자금으로 조달토록 하고 이에 따라 소요액 대비 공급율은 37%로 지난해 보다 1%P 높아지게 된다.

한편, 영어자금 운용의 건전화와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연체감축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어촌계 또는 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장에 대한 입어 또는 행사 계약자에 대해 계약의 진위여부 등을 당해 어촌계 또는 수협장의 자필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대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1년 미만의 단기 입어·행사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2006년도 운용지침에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표 122〉

영어자금 공급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증(△)감
소 요 액		38,920	41,199	2,279
공 급 액		14,050	15,050	-
(공 급 율)		(36%)	(37%)	(1%P)
조달	재 정 자 금	5,636	5,636	-
	수협자체자금	3,933	4,433	-
	상 호 금 융	4,481	4,981	-
운용	연 근 해 어 업	13,400	14,250	850
	원 양 어 업	650	800	150

95)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사업 지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2006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용자금은 2005년도 22억 원보다 16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으로 친환경·경제성 연안 어선건조사업만 남아 보조금을 수반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업이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지원하게 된다.

제3절 어업인 부채경감 추진 및 수산관련 세제 개선⁹⁶⁾

1. 각종 이차보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각종 수산정책자금의 저리 공급과 금리인하, 상환연장 및 이자면제를 위해 2006년에 총 816억원의 이차보전을 통해 어가의 금융비용과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2. 어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추진

2005년 12월 29일 개정·시행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6년 어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1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Ⅱ)」의 상환기간 연장을 금년에 어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당시 대출받은 금액의 10% 이상 상환한 자」는 앞으로 연리 3.0%,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해 주게 되지만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10% 이상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자」도 신청을 받아 연리 5.0%,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는 별도로 2006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에 의거 3~5년간 분할 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일에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자에 대해서는 납부한 이자의 40%를 되돌려 준다.

9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3.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WTO-DDA협상 진전 및 FTA 체결 확산 등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어업 경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업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산정책 자금을 대해 2005년까지 사업별로 다양하게 적용되어 오던 대출금리에 대해 어업인(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은 포함. 원양어업은 제외)과 비어업인으로 대별하여 연리 3.0%를 초과하는 자금은 어업인은 연리 3.0%로, 비어업인 연리 4.0%로 이원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4.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재해, 적조, 수산물 가격 폭락, 어패류 질병 등에 의거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경영체(어업을 영위하는 영어조합법인 포함)에 대해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 결과, 회생가능 또는 인수 희망자에게 연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006년에 200 억원을 지원하여 건실한 어업경영체 육성을 도모한다.

5. 수산 관련 세제 개선

2006년 이후에도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하여 일몰제 적용을 받고 있는 수산부문 세제감면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과 신규 감면제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2007년도 중에 적용시한이 종료 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 적용시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대상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도 현행 12개 품목에서 추가 확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

제4절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⁹⁷⁾

2006년도 수산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6,009억원으로서 전년도 수정계획 6,110억원 대비 1.7% 감소하였다.

조달계획을 보면 비축사업 및 여유자금 운용규모 감소로 수산물판매 수입 및 이자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공유수면점사용료 이관 및 용자사업 확대에 따른 용자원금 회수액 등의 증가로 자체수입이 확대 편성되었고, 정부내부수입(정부출연금)은 자체수입의 증가를 감안하여 200억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운용계획은 크게 기금운영비, 사업비, 여유자금 운용으로 분류되며 가장 비중이 큰 사업비의 규모는 전년도 수정계획 5,507억원과 비슷한 5,511억원이다.

기금의 사업비는 해양환경개선추진, 해양환경개선기반조성, 정부가격안정, 자원관리형어업육성, 민간가격안정, 산지및소비지유통개선, 유통가공시설개선 및 어업경영지원 등의 분야에 지원될 계획이다.

97)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제5절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및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⁹⁸⁾

1.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2006년도에는 정책보험 도입 3차년도로서 보험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는 보험가입의 필요성, 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여 보험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보험가입 자진신고 및 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설정 운용하는 등 보험가입방안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보상 후 어업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미지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험금 지급심사의 신속성,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업인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10톤미만 어선에 대한 보조율과 위탁운영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05년도보다 10%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어업인들의 부담액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3〉 어선규모별 보험료 지원율

(단위 : %)

구 분	어선원 보험료					어선 보험료		
	1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10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2005	52.0	52.0	28.0	20.0	12.0	52.0	52.0	12.0
2006	62.0	54.0	30.0	22.0	12.0	62.0	54.0	14.0
증(△)감	10.0	2.0	2.0	2.0	2.0	10.0	2.0	2.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98)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2.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양식수산물은 1990년대 이후 양식기술의 안정화 및 양식어가의 대형화·기업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는 태풍과 적조 등의 어업재해 발생시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수산생물에 대한 복구비는 치어입식대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양식수산물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시장경제하에서의 보험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가 관여하는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개년에 걸쳐 「양식재해보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6도에는 양식재해보험의 위험률 검증 및 도입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고, 어업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후 「(가칭)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을 2007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는 일부 어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제 3 장 수산정책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⁹⁹⁾

제1절 검토 배경

현재 수산업은 자원감소, 고유가, WTO/FTA 체결 등 국내 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수산업 전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부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수산분야의 다양한 민원을 발굴, 정리하게 되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어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원사항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어민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산현안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였다. 기존 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함으로써 또 다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수산업이 나아갈 바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99) 남북수산협력팀

제2절 추진 경위

본 수산업 정책개선과제는 현장 어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근간으로 하여 수산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제와 어업인의 민원사항 중 과제의 중요성,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별된 것이다.

이러한 선별작업과 함께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관계 기관 협의, 어민의견 수렴 및 조정, 수산대학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학계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로 진행된 수산정책발전기획단 보고서('01년),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보고서('02.12)를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수협중앙회 등 각 기관이 제출한 정책개선과제(6.13 ~ 6.30)와 지방해양수산청(6.13) 및 각 지자체 수산과장회의(6.14)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렇게 발굴된 50여 건의 과제들에 대해 각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단기과제 및 중장기과제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수산정책개선과제로 최종 확정하기 위해 '06.9월 내부검토 중에 있다.

제3절 향후 추진계획

본 과제가 일회성 계획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함께 조직, 예산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 대상인 어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2006년 10월 중으로 「수산정책혁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신설하여 과제추진과 점검상황 등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기획단에서는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분류하고,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소관부서는 해당 과제에 대해 2006. 10월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월, 분기, 반기 단위로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각 소관부서의 과제 추진과 함께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각 소관부서는 매월 25일까지 각 과제의 월별 추진상황 및 실적을 「수산3국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보고하게 된다.

또한 기획단이 주관하는 「수산정책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과제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협조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 V 편

제도와 체제의 정비 · 개선

제 1 장 제도의 정비

제1절 행정규제 개선¹⁰⁰⁾

2005년도 수산분야 규제개혁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규제, 경제적 자율을 방해하는 규제 등 총 20건의 규제를 폐지, 완화하였다.

첫째, 어촌계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어촌계의 합병 분할 시 총회 의결 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여 어촌계에 관한 기본적인 외의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자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였다.

둘째,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금액을 완화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즉, 어선재해보험은 임의보험에 해당되나 국고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20톤 미만 어선은 보험금액의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20톤 이상 어선은 80%에서 20%로 완화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율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어업의 면허, 허가를 취득한자는 2년 이상의 휴업은 할 수 없었으나, 천재, 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확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006년도 수산분야의 규제개혁은 시장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의 일제 정비를 통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식정보화·전자정부화·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중, 규제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는 폐지하고 준치가 필요한 규제도 규제 내용, 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100)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으로 불필요한 관련서류를 요구하는 규제를 일제 정비하는 한편,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관할청이 아닌 곳에서도 민원을 처리토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둘째, 전체 규제개혁위원 개편 및 규제총량제 도입을 통해 규제 심사 방식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규제의 지속적 증가를 억제하여 변화에 부응하는 규제개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의 이원화체제로 운영된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본 위원회 및 분과위 위원 등 총 36인)의 분과위를 폐지하고 인원을 17명으로 축소 개편하여 본위원회 중심의 대면회의를 통해 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규제총량제의 도입으로 신설·강화규제와 질적·양적으로 상응하는 기존규제 정비계획 제출을 요청하여 규제의 지속적 증가를 억제하고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규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금년도 수산분야 규제정비 추진계획은 총 25건으로서 주요 규제정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어장정화·정비의 수익자 부담금 부과를 폐지하고, 2톤미만 선박의 경우 선박의 입출항 신고서 제출을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어업허가등의 변경 신고서 제출시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앞으로는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확인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여 그간 수산물의 규격화, 선진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각종 기준 및 검사 사항을 폐지하고, 일부어망의 그물코규격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완화하여 어민의 소득증대 도모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제2절 수산통계 조사 활용¹⁰¹⁾

수산통계(어업생산통계, 어류양식현황조사) 조사방법 및 문제점 개선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한편, 수산정책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신규 수산통계를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통계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일반해면어업의 표본수를 현행 2,000개에서 2008년까지 2,500~3,000개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양식어업의 주요품종을 매년 확대발굴하여 전수·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어류양식어업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2004년도에 정부승인통계로 승인 받은 어류양식 현황조사결과를 2005년도에 처음으로 양식방법별·시설면적(수면적), 입식·폐사·출하량, 현사육량, 사료투입량 등을 조사 공표할 계획이며, 일반 국민들이 쉽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또는 어업생산통계시스템(<http://fs.fips.go.kr>)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확하고 다양한 수산통계 제공으로 실효성 있는 수산정책을 수립하고자, 향후 어류 양식어가(사업체)에서 양식에 필요한 「어류양식생산비통계조사」와 수산물가공업, 유통업, 어획물운반업 등을 포함한 수산인통계조사를 개발한 후 정부승인통계로 확대 지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101)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제3절 수산관계 법령 제·개정¹⁰²⁾

1. 어촌·어항법 제정 (2005. 5. 31, 법률 제7571호)

다양한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고령화, 탈어촌 현상 및 수산업의 여건악화에 대비하고,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시키고자 어촌어항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주요 골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에는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2005. 12월에는 어촌어항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102)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

2. 개정법률

2005년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내수면어업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9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38호]

중전의 규정에 의하면 이상조류 또는 적조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태풍·해일 등 다른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도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내수면 어업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77호]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도(魚道)를 설치하여 회유성(回遊性) 어류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낚시 등 유어행위(遊漁行爲)에 대한 제한 등 유어질서 확립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였다.

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5호]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

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라. 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005. 5. 31 법률 제7570호]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때 승인해제 등 산림법의 의제조항이 개정되었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5.7.21 법률 7611호]

수산업협동조합 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구별수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39호]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 등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사용료를 이 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 낚시어선업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2호]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4호]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5호]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3.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3.8 대통령령 18735호]

다른 어업의 관리선에 비하여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을 어선원보험의 임의가입대상에서 당연가입대상으로 변경하고, 어선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완화하여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나. 어업면허 등의 관리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3.31 해양수산부령 291호]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편익을 위하여 패류가두리식양식의 어장구역 제한 및 어장사이의 거리의 제한을 완화하고, 새로운 복합양식어업의 양식방법으로 어류·해삼 또는 갑각류·해삼을 양식할 수 있는 축제식양식어업을 신설하며,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어업실태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해조류양식어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면허 등의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

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5.6.30 해양수산부령 297호]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제 체제확립과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확립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7311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대상조합 기준을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규모 500억원으로 하는 등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업인이 조합에 가입하는 때에 가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면허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마.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7.1 해양수산부령 298호]

「수산업법」의 개정(법률 제731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획물운반업자가 어획물을 운반할 수 있는 대상 어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바.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7.1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수산업법」의 개정(법률 제731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어업의 허가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의 제한 기준과 연근해어업의 어구사용량 제한 및 어구의 표지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사.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8 해양수산부령 300호]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313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인증의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을 추가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식용수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위해물질 검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9.30 대통령령 19078호]

「내수면어업법」의 개정(법률 제7477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공익을 위한 어업제한의 세부적인 절차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업제한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높아지는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행위는 허용하되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7호]

수산물과 농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함께 냉동·냉장하는 경우에도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해조류가공업 중 우뚝가사리의 열수추출액의 응고물을 열려 말린 한천 제조업과 톳가공업에 대하여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해조류가공업 전체

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이 영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차.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 시행령 [제정 2005.4.27 대통령령 18813호]

「수산업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행하는 어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연근해어장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312호, 2004. 12. 31. 공포, 2005. 4.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카.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6.23 대통령령 18881호]

수산업법의 개정(법률 제731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합양식어업을 확대하는 한편,

하나의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규모를 완화하여 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어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4. 2006년도 입법계획

가. 제정법률

(1)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안

수산동물의 질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일 법률이 미비하여, 국가정책적 접근에 의한 수산동물의 질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질병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긴급방역·약품공급·살처분시 보상 등 정부의 방역서비스 제공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나. 개정법률

(1) 수산업법

우리나라 주변국 EEZ에서 우리어선이 상대방 국가의 입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로 조업할 경우 처벌 규정이 과징금을 징수함에 따라 이를 강화하여 우리어선의 인접국 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 어장관리법

어장의 관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하고, 어장정화·정비 등에 따른 어업권자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현행 법령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3) 기르는어업 육성법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대상에 업종별 수협을 포함하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휴업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현행 법령 운용상 미

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기르는 어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4) 내수면어업법 개정

사유수면에서 육상양식어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내수면 양식어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표 124〉 2006년도 수산분야 입법계획

구 분	법안명	담당부서	비 고
제 정 (1건)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안	양식개발과	
개 정 (4건)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지도과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개발과	'05년 이월법안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개발과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관리과	
중장기 입법 계획 (5건)	수산물 산지유통의 정비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제정)	유통정책과	
	수산물양식재해 보험법안(제정)	수산경영과	
	수산자원관리법안(제정)	수산자원 회복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어업정책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과	

※ 중장기입법계획은 '04.1월 국가정책의 중·장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추진과정이 2~3년 소요되는 법안임

제 2 장 해양수산부 조직개편 및 정비¹⁰³⁾

제1절 배 경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수립된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전략 3대과제 및 33개의 세부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관련 행정수요가 관련법 제정에 따라 급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력 및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해상안전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수요 증대,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조직을 슬림화하고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팀제 운영, 소속기관의 책임운영기관화, 본부와 지방청 간 기능의 효율적 재배분 등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2007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와 더불어 조직의 탄력적 운영,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의 극대화, 증원위주의 조직개편을 지양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조직분 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03) 해양수산부 혁신기획팀

제2절 주요 내용

1. 2005년 개편내용

2005년 4월 15일 종전의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폐지하고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하였으며, 정책홍보관리실내의 과를 모두 팀으로 변경하여 팀원-팀장의 직접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각 팀원의 업무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였고,

성과관리 분야 등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과관리팀, 홍보협력팀, 해양환경발전팀, 품질위생팀, 수산자원회복팀, 통상협력팀 및 국제해사기구평가대응팀을 신설하였다.

2005년 7월 22일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본부제’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으로 인천항의 갑문관리 등 일부기능이 인천항만공사로 위탁됨에 따라 정원 81인을 감축하는 한편,

서해안의 중심항만으로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평택항의 운영인력 35인을 보장하고,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요인력 2인을 보장하였다.

2. 2006년 개편계획

선진 통상국가 도약의 일환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추진, WTO/DDA 협상추진에 따라 국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협력팀”을 신설하였고, “수산자원회복팀”의 정식 직제반영 추진 등 해양수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수산과학 연구기능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본부제를 전면 도입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수산관련 연구성과를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물류 허브화의 3대과제 및 세부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임시적 성격의 T/F인 동북아물류기획단을 상설 조직화하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연내에 제정될 것임에 따라 새로 늘어나는 해양환경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과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며,

세계 5대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미래 국가해양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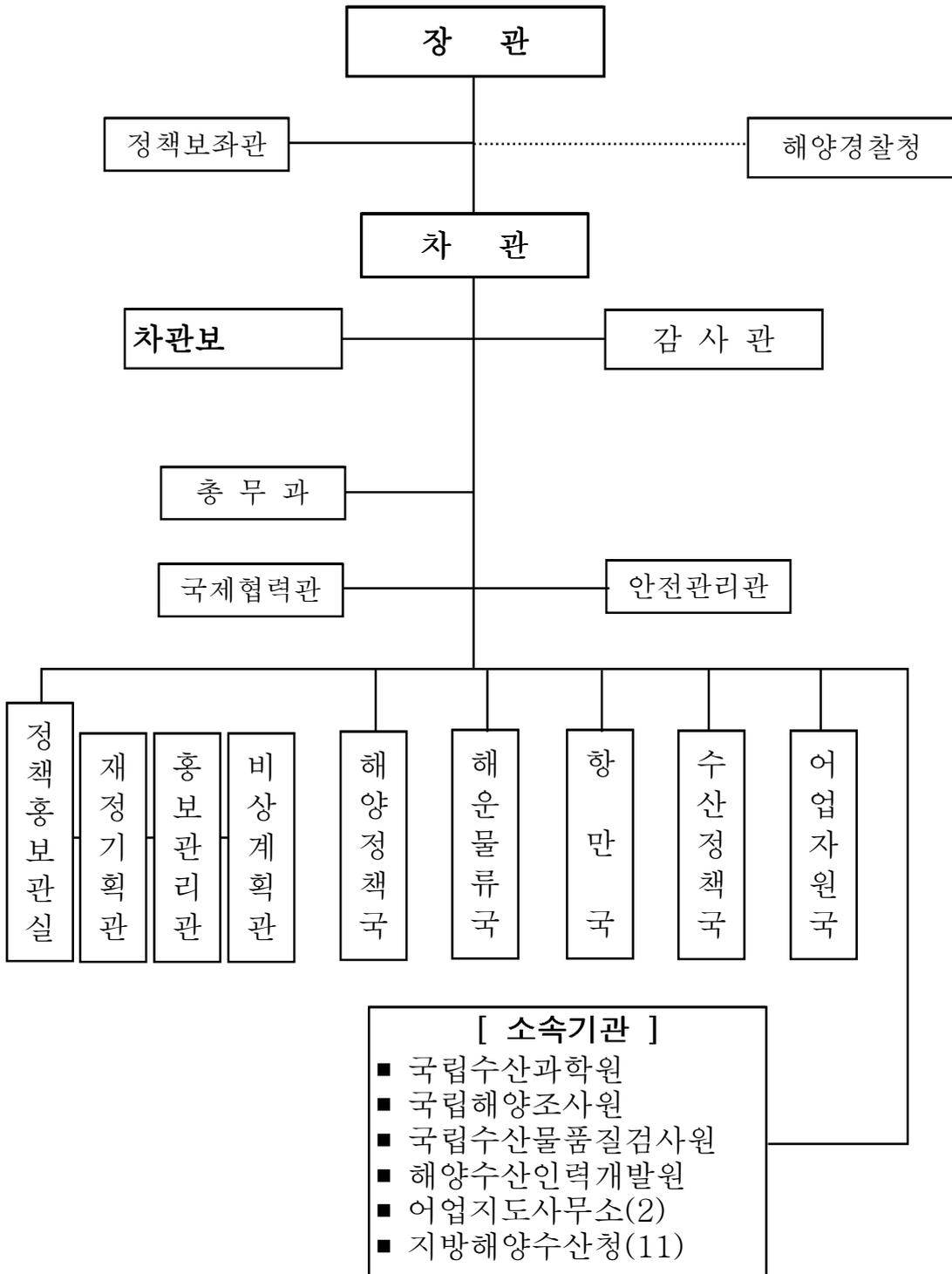
이와 아울러, 인력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팀제를 활성화하고, 팀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과정의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력증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항만관리체계의 개편에 따라 기존 지방청의 환경·안전 및 수산자원관리 업무 등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본부-지방간 기능배분을 재검토하여 본부는 정책기능을, 지방은 집행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6년 8월 현재, 해양수산부의조직은 ‘1실 1차관보 5국 6관 46과·팀’으로서 총 정원은 4,189명이며, 이중 본부는 510명, 소속기관은 3,679명 이다.

[해양수산부 조직도]

(2006년 6월 말 기준)



통계로 본 수산업 동향

1. 국 민 경 제 주 요 지 표
2. 경 제 활 동 별 성 장 륜
3. 생 산 구 조
4. 총 인 구 와 어 가 인 구
5. 어 선 세 력
6. 수 산 물 생 산
7. 수 산 물 수 급
8. 수 산 물 수 출
9. 어 가 소 득
10. 어 업 총 수 입 및 경 영 비

1. 국민경제 주요지표

연도별	국민총소득 (GNI)		1인당GNI		디플레이터		성장기여율 ('00불변 %)	
	경상 (10억원)	경상 (억 \$)	경상 (만원)	경상 (\$)	GDP ('00=100)	농림어업 ('00=100)	농림 어업	광공업
1975	10,277.6	212	29	602	10.5	14.7	12.9	31.4
1980	38,117.7	627	100	1,645	27.9	36.0	177.8	16.1
1985	82,033.2	942	201	2,309	41.5	48.6	7.0	19.6
1990	186,559.8	2,635	435	6,147	58.2	71.3	△5.4	20.7
1991	225,659.7	3,076	521	7,105	64.4	75.7	1.4	20.5
1992	257,107.7	3,293	588	7,527	69.3	76.7	9.7	13.2
1993	290,087.7	3,614	656	8,177	73.7	82.7	△6.2	17.0
1994	339,343.1	4,223	760	9,459	79.5	93.3	0.3	28.1
1995	397,458.7	5,155	881	11,432	85.4	97.9	3.0	27.1
1996	446,856.4	5,553	982	12,197	89.8	100.5	1.6	20.2
1997	488,457.4	5,136	1,063	11,176	93.9	95.8	4.7	22.9
1998	476,245.4	3,404	1,029	7,355	99.4	95.7	4.4	26.3
1999	523,355.3	4,400	1,123	9,438	99.3	100.3	3.0	50.2
2000	576,160.0	5,096	1,226	10,841	100.0	100.0	0.7	48.6
2001	621,027.9	4,811	1,312	10,160	103.5	98.0	1.3	14.7
2002	685,069.0	5,475	1,438	11,493	106.5	101.0	△2.1	27.7
2003	725,420.3	6,086	1,516	12,720	109.4	104.4	△6.4	46.2
2004	779,380.5	6,809	1,625	14,193	112.3	103.0	5.6	65.1
2005p	806,621.0	7,815	1,669	16,291	111.8	95.3	0.3	49.5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2000년 기준

2. 경제활동별 성장률

연도별	국내총생산 (GDP) ('00불변%)	농 립 어 업				광공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업	서비 스업
		(%)	농업	임업	어업				
1975	5.9	4.3	6.8	△3.2	△5.2	13.4	15.2	6.5	4.6
1980	△1.5	△19.4	△26.2	18.4	4.0	△1.3	23.2	△3.6	3.4
1985	6.8	4.5	6.2	△6.9	5.1	6.4	11.1	4.3	7.9
1990	9.2	△6.5	△7.3	△7.8	0.1	8.3	17.0	25.5	7.8
1991	9.4	2.0	2.7	△16.2	9.9	8.5	10.1	14.0	8.6
1992	5.9	9.3	10.2	5.5	6.1	3.5	8.6	△0.1	7.1
1993	6.1	△6.0	△5.3	△14.8	△6.1	4.8	12.4	9.5	6.8
1994	8.5	0.4	△0.1	6.0	0.7	11.1	13.2	5.7	7.7
1995	9.2	5.3	8.2	△6.7	△8.1	11.2	6.1	7.7	8.1
1996	7.0	2.3	3.3	1.4	△4.8	6.2	10.3	8.9	6.2
1997	4.7	4.6	3.5	4.1	13.9	4.7	10.0	2.8	5.1
1998	△6.9	△6.4	△6.4	1.0	△10.1	△8.0	△0.3	△10.0	△3.9
1999	9.5	5.9	7.7	1.6	△6.1	21.5	9.0	△7.9	6.6
2000	8.5	1.2	3.0	△12.2	△7.0	16.7	12.8	△3.4	6.1
2001	3.8	1.1	1.3	△0.8	0.4	2.1	7.2	5.5	4.8
2002	7.0	△3.5	△3.2	△1.8	△7.6	7.4	7.7	2.8	7.8
2003	3.1	△5.3	△5.7	△6.5	0.3	5.5	4.7	8.6	1.6
2004	4.6	7.4	8.5	4.1	△2.0	11.3	6.2	1.7	1.3
2005p	4.0	△0.1				6.9	8.0	0.1	3.0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2000년 기준

3. 생산구조

연도별	국내총생산 (GDP) (경상10억원)	농림어업 (%)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 업	서비스업
			농업	임업	어업				
1975	10,386.1	27.1	24.0	1.5	1.7	23.5	1.1	4.6	43.6
1980	38,774.9	16.2	13.8	1.1	1.2	26.4	2.2	8.0	47.3
1985	84,061.0	13.5	11.6	0.8	1.1	28.7	3.0	7.3	47.4
1990	186,690.9	8.9	7.8	0.4	0.8	28.1	2.1	11.3	49.5
1991	226,007.6	7.9	6.8	0.3	0.8	28.2	2.0	12.4	49.4
1992	257,525.4	7.7	6.7	0.3	0.7	27.2	2.1	12.0	51.0
1993	290,675.6	6.9	5.9	0.3	0.7	27.3	2.2	12.2	51.4
1994	340,208.3	6.7	5.7	0.3	0.7	27.8	2.2	11.6	51.7
1995	398,837.7	6.3	5.5	0.2	0.6	28.2	2.0	11.6	51.8
1996	448,596.4	6.0	5.2	0.2	0.5	27.2	2.0	12.1	52.8
1997	491,134.8	5.4	4.7	0.2	0.5	26.8	2.0	12.3	53.4
1998	484,102.8	5.1	4.3	0.3	0.5	27.8	2.3	10.6	54.2
1999	529,499.7	5.2	4.5	0.3	0.4	28.5	2.5	9.2	54.5
2000	578,664.5	4.9	4.2	0.2	0.4	29.8	2.6	8.4	54.4
2001	622,122.6	4.5	3.9	0.2	0.4	28.0	2.7	8.6	56.3
2002	684,263.5	4.1	3.6	0.2	0.3	27.2	2.6	8.6	57.5
2003	724,675.0	3.8	3.3	0.2	0.3	26.8	2.7	9.6	57.2
2004	779,380.5	3.7	3.2	0.2	0.3	29.1	2.4	9.3	55.5
2005p	806,621.9	3.0	2.6	0.2	0.2	28.8	2.4	9.2	56.3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2000년 기준

4. 총인구와 어가인구

연도별	총 인 구		어 가 인 구			어 업 가 구	
	인 원 (천명)	증가율 (%)	인 원 (천명)	구성비 (%)	증가율 (%)	인 원 (천명)	가구당 인구(명)
1975	35,281	1.70	751	2.1	△2.0	128	5.88
1980	38,124	1.57	725	1.9	9.4	134	5.41
1985	40,806	0.99	602	1.5	△3.8	127	4.75
1990	42,869	0.99	496	1.2	0.0	122	4.08
1991	43,296	0.99	470	1.1	△5.2	120	3.92
1992	43,748	1.04	425	1.0	△9.6	116	3.66
1993	44,195	1.02	405	0.9	△4.5	114	3.56
1994	44,642	1.01	382	0.9	△5.7	110	3.46
1995	45,093	1.01	347	0.8	△9.2	104	3.32
1996	45,525	0.96	330	0.7	△4.9	102	3.25
1997	45,954	0.94	323	0.7	△2.1	100	3.24
1998	46,287	0.72	322	0.7	△0.3	99	3.26
1999	46,617	0.71	315	0.7	△2.2	98	3.22
2000	47,008	0.84	251	0.5	△20.3	82	3.08
2001	47,353	0.73	234	0.5	△6.7	78	3.00
2002	47,615	0.55	215	0.5	△8.2	73	2.95
2003	47,849	0.49	212	0.4	△1.4	73	2.92
2004	47,925	0.49	210	0.4	△1.4	73	2.89
2005p	47,041		221	0.5	5.2	-	-

자료 :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5 농림어업총조사잠정집계결과(통계청)

주 : 총인구 및 어가인구는 추계치이며, 어업가구는 '06. 11월 발표예정

5. 어선세력

연도별	합 계			동 력 선			무동력선	
	척수 (천척)	톤 수 (천톤)	척 당 평균톤수 (톤)	척수 (천척)	톤 수 (천톤)	마 력 (천HP)	척수 (천척)	톤 수 (천톤)
1975	67.7	648	9.57	19.7	581	1,587	48.0	67
1980	77.6	771	9.94	51.1	740	2,462	26.5	30
1985	90.9	858	9.43	71.8	836	3,353	19.1	22
1990	99.7	977	9.80	79.4	955	5,449	20.3	22
1991	103.8	983	9.46	84.0	962	6,198	19.8	21
1992	94.1	959	10.19	76.8	940	6,910	17.3	19
1993	87.5	920	10.52	72.9	904	7,279	14.6	16
1994	77.4	940	12.15	70.1	930	8,135	7.3	10
1995	76.8	959	12.48	71.0	951	8,842	5.8	8.0
1996	75.2	972	12.92	69.2	965	9,192	6.0	7.0
1997	81.0	965	11.91	73.8	958	12,700	7.2	6.3
1998	91.0	978	10.75	82.8	972	13,067	8.2	6.6
1999	94.9	992	10.46	87.5	986	11,796	7.4	5.6
2000	95.9	923	9.63	89.3	918	13,597	6.6	5.1
2001	94.9	885	9.32	89.3	880	14,766	5.6	4.0
2002	94.4	817	8.65	89.3	813	17,274	5.1	4.0
2003	93.3	754	8.09	88.5	751	17,094	4.7	3.7
2004	91.6	729	7.96	87.2	725	16,743	4.4	3.6
2005	90.7	701	7.72	87.5	698	12,949	3.2	2.9

자료 :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6. 수산물 생산

(단위 : 천톤)

연도별	계	연근해	원 양	양 식	내수면
1965	637	554	9	74	-
1970	935	726	90	119	-
1975	2,135	1,208	566	351	9
1980	2,410	1,372	458	541	39
1985	3,103	1,495	767	788	53
1990	3,275	1,542	925	773	35
1991	2,983	1,304	874	775	30
1992	3,289	1,296	1,024	936	34
1993	3,336	1,526	741	1,038	31
1994	3,477	1,487	887	1,072	31
1995	3,347	1,425	897	997	29
1996	3,244	1,624	715	875	30
1997	3,244	1,367	830	1,015	32
1998	2,834	1,308	723	777	27
1999	2,910	1,336	791	765	18
2000	2,514	1,189	651	653	21
2001	2,665	1,252	739	656	18
2002	2,476	1,096	580	782	19
2003	2,487	1,096	545	826	20
2004	2,519	1,077	499	918	25
2005	2,714	1,097	552	1,041	24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7. 수산물 수급

(단위 : 천톤)

연도별	공 급			합 계	수 요			1인당 소비량 (kg)
	생 산	수 입	재 고		국내소비	수 출	이 월	
1980	2,410	41	68	2,519	1,746	696	77	27.0
1985	3,103	91	85	3,279	2,318	867	94	37.2
1990	3,275	380	276	3,931	2,583	1,058	290	36.2
1991	2,983	554	290	3,827	2,235	1,284	308	35.9
1992	3,289	410	308	4,007	2,327	1,300	380	40.0
1993	3,336	488	380	4,204	2,842	1,002	360	43.3
1994	3,477	792	360	4,629	3,104	1,065	460	44.9
1995	3,348	948	395	4,691	3,150	1,170	371	45.1
1996	3,244	1,205	371	4,820	3,202	1,191	427	43.3
1997	3,244	1,189	427	4,860	3,187	1,193	480	43.6
1998	2,834	753	480	4,067	2,394	1,354	319	34.7
1999	2,911	1,332	319	4,562	2,748	1,232	582	38.3
2000	2,514	1,420	582	4,516	2,668	1,338	510	35.6
2001	2,665	1,806	510	4,981	3,260	1,080	641	42.9
2002	2,476	2,226	641	5,343	3,433	1,140	770	44.5
2003	2,486	2,268	769	5,523	3,578	1,202	743	44.7
2004	2,519	2,477	573	5,569	3,922	1,116	531	48.7
2005	2,714	2,557	531	5,802	4,169	1,121	512	-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주 : 1인당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자료이며 순식품 기준임

8. 수산물 수출

(단위 : 백만\$)

연도별	합 계	활선어	냉동품	해조 염신품	통조림	원양어류	기타 수산물	어망류
1970	90	11	6	17	-	38	11	7
1975	429	62	58	32	10	183	54	30
1980	871	128	103	27	28	352	63	112
1981	1,051	153	115	56	38	428	66	119
1982	947	151	131	122	51	329	78	85
1983	908	145	134	83	55	315	95	81
1984	956	155	124	83	61	351	104	78
1985	970	155	124	97	55	328	132	79
1986	1,384	253	165	108	72	465	219	102
1987	1,731	369	234	128	95	571	223	111
1988	2,047	476	260	150	137	618	270	136
1989	1,821	391	252	167	114	540	226	131
1990	1,637	328	202	156	85	475	267	124
1991	1,634	349	272	156	95	513	258	-
1992	1,518	356	160	156	99	504	243	-
1993	1,497	343	144	154	123	454	279	-
1994	1,647	376	214	171	117	477	292	-
1995	1,722	395	237	157	127	489	316	-
1996	1,635	328	253	128	107	468	351	-
1997	1,493	299	167	119	100	495	313	-
1998	1,369	307	148	127	82	458	247	-

연도별	합계	활어	신선 냉장	냉동	훈제	건조	염장	조제	밀폐 용기	기타
1999	1,521	91	266	679	1	86	32	203	57	106
2000	1,505	85	270	670	1	80	28	193	46	132
2001	1,274	73	230	544	1	81	21	183	48	92
2002	1,160	68	153	549	1	79	20	156	43	91
2003	1,129	79	142	532	1	77	22	137	42	97
2004	1,279	92	144	655	5	80	24	147	40	92
2005	1,193	90	137	595	1	64	23	135	30	118

자료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9. 어가소득

(단위 : 천원)

연도별	어가 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
		순수익	어업 총수입	어업 경영비	소계	겸업 소득	사업외 소득		
1980	2,596	1,752	3,090	1,338	844	392	452	-	-
1985	4,869	2,815	6,047	3,232	1,553	1,045	508	501	-
1990	10,023	5,216	10,367	5,151	3,192	2,200	992	1,615	-
1991	11,309	5,285	10,255	4,970	3,776	2,431	1,345	2,248	-
1992	12,371	6,036	11,021	4,985	4,217	2,441	1,776	2,118	-
1993	14,432	6,222	12,276	6,054	4,685	2,583	2,102	3,525	-
1994	17,110	8,665	15,214	6,549	5,719	4,007	1,712	2,726	-
1995	18,780	9,437	17,152	7,715	6,075	3,975	2,100	3,268	-
1996	19,039	10,526	18,015	7,489	5,410	3,394	2,016	3,103	-
1997	20,331	11,768	19,389	7,621	5,820	3,822	1,998	2,743	-
1998	16,794	9,254	15,604	6,350	5,201	3,495	1,706	2,339	-
1998	16,794	9,254	15,604	6,350	5,201	3,495	1,706	2,339	-
1999	18,401	8,475	16,745	8,270	6,243	4,415	1,828	3,683	-
2000	19,618	8,428	17,011	8,583	7,431	5,175	2,252	3,756	-
2001	21,463	8,556	18,980	10,424	8,425	5,586	2,838	4,482	-
2002	21,590	9,060	17,846	8,786	7,944	4,724	3,220	4,586	-
2003	23,916	10,741	23,114	12,373	8,619	4,176	4,443	861	3,695
2004	26,159	11,959	25,144	13,185	9,168	4,350	4,817	1,477	3,555
2005	28,028	11,950	26,576	14,626	9,399	4,559	4,840	2,245	4,434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주 : ① 어가소득=경상소득(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② 2004년 조사에서 비경상소득 중 직계혈연 타 가구에서 받은 일회성 보조금은 이전소득으로 분리

10. 어업총수입 및 경영비

□ 어업총수입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어 업 수 입				재고증감
		소 계	어 로	양 식	기 타 (수산가공)	
1977	1,797	1,798	1,574	224	-	△1
1980	3,090	3,092	2,133	848	111	△2
1985	6,047	6,035	4,588	1,211	236	12
1990	10,367	10,003	6,008	3,043	952	364
1991	10,255	10,241	5,613	3,517	1,111	14
1992	11,021	11,031	6,746	2,747	1,538	△10
1993	12,276	12,285	8,075	2,627	1,583	△9
1994	15,214	15,202	10,651	3,287	1,264	12
1995	17,152	17,180	11,740	3,896	1,544	△27
1996	18,015	18,014	12,683	3,750	1,581	1
1997	19,389	19,392	13,217	4,641	1,534	△3
1998	15,604	15,602	10,383	3,747	1,472	2
1999	16,745	16,745	8,784	6,690	1,271	-
2000	17,011	17,011	8,868	7,068	1,075	-
2001	18,980	18,980	9,579	7,424	1,977	-
2002	17,846	17,846	9,515	7,375	956	-
2003	23,114	23,114	14,421	8,012	681	-
2004	25,144	25,144	16,116	8,419	609	-
2005	26,576	26,576	15,942	10,090	544	-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주 : 수산물 가공수입 '02년까지 어업수입의 기타로 분류, '03년부터 겸업수입으로 분류 변경
('99 이전) 어업조수입 → ('99 이후) 어업총수입으로 변경

□ 어업경영비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어업지출				감가 상각비	재고생산 자재증감
		소계	어로	양식	기타		
1977	907	855	830	25	-	52	-
1980	1,338	1,225	985	221	19	114	△1
1985	3,232	3,031	2,592	362	77	198	3
1990	5,151	4,792	2,779	1,609	404	365	△6
1991	1,9700	4,557	2,550	1,569	438	369	44
1992	4,985	4,502	2,702	1,233	567	487	△4
1993	6,054	5,573	3,745	1,306	522	477	4
1994	6,549	5,979	3,954	1,737	288	546	24
1995	7,715	7,212	4,525	2,330	357	510	△7
1996	7,489	6,801	4,649	1,739	413	648	40
1997	7,621	6,930	4,829	1,654	447	697	△5
1998	6,350	5,567	3,678	1,346	543	673	111
1999	8,270	8,270	3,318	3,661	1,291	-	-
2000	8,583	8,583	3,292	4,083	1,208	-	-
2001	10,424	10,424	4,092	4,670	1,662	-	-
2002	8,786	8,786	3,579	3,924	1,283	-	-
2003	12,373	12,373	7,732	4,641	-	-	-
2004	13,185	13,185	8,534	4,651	-	-	-
2005	14,626	14,626	9,007	5,619	-	-	-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주 : 수산물 가공지출 '02년까지 어업지출의 기타로 분류, '03년부터 겸업지출로 분류 변경

2006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년 9월 일 인쇄

2006년 9월 일 발행

편집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발행 : 해양수산부(☎(대) 02-3674-6811)

인쇄 : (주) 문원사(☎ 739-3911 ~ 5)

〈비매품〉